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A Direction of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Suwon Special Case City

한연주·정보라

연구진

연구책임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정보라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22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김선희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2년 9월 30일

발행 2022년 9월 30일

ISBN 979-11-6819-069-6(9330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한연주. 2022.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주요내용 및 정책제안

■ 주요내용

- 2022년 본예산 기준, 수원시 사회복지예산의 93%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의무성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은 주로 영유아,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급여에 집중
- 수원시비로만 운영되는 자체사업은 예산에 비해 사업 수만 많은 문어발식의 구조이고, 주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운영비에 집중
- 수원시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는 영유아, 노인, 장애인과 같이 대상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최근에는 중복적 욕구(장애+고령, 다문화+장애)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사각지대가 계속적으로 발생

■ 정책제안

- ① 현금성 급여에 대한 재정분담 구조 및 세입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
 - 현금성 급여에 대한 재정분담구조 개편
 - 세입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
- ② 사각지대 및 다변화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확대
 - 중복대상자 및 사각지대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 확대
- ③ 정책의 효과성 및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 및 역량 강화
 - 중복욕구 대상자의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적전달체계 개편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정책의 효과성 및 위탁시설의 성과분석을 위한 제도 마련

국문요약

■ 서론

○ 연구의 배경

- 다변화되는 복지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광역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 상위정부(중앙정부 및 광역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수직적으로 다층화되어 있는 정부간 관계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기초지자체에게 보조금을 매칭시켜 상위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는 수원시의 복지재정을 동반적으로 증가
- 수원시는 상위정부가 하달한 보조사업과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세입자율성의 구조로 인하여 자체사업은 축소
- 수원시는 재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수원시의 성장과 변화를 위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수원시가 특례시로서의 성장과 변화하기 위해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대상, 욕구, 급여 유형,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 제시

■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다차원적 분석

○ 수원시 사회복지예산 분석

- 2022년 수원시의 사회복지예산 중 93%는 상위정부에 의한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예산은 적는데 사업 수만 비효율적으로 많음
- 수원시비로만 운영되는 자체사업은 주로 시설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집중되기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체감도 낮음

○ 수원시 사회복지정책과 욕구와의 분석

- 수원시의 인구집단 중 영유아와 노인은 타 인구집단에 비해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
- 복지욕구를 28개로 구분한 결과, 보조사업의 수는 일자리(노동),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안전이 타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수가 많으며, 자체사업은 문화 및 여가, 안전, 환경조성, 일자리(노동)와 관련된 사업이 많음
- 예산의 경우, 보조사업은 소득보장, 영유아와 관련된 돌봄시설(예: 어린이집 등), 출산 및 가정돌봄과 관련된 예산이 많았고, 자체사업에서는 돌봄(지역사회), 환경조성, 장례, 영유아와 관련된 돌봄(이용)시설과 관련된 욕구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음

○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유형 분석

- 복지대상자(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급여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으로 분석한 결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모두 시설 및 단체지원의 사업 수가 가장 많음
- 반면 보조사업은 현금성 급여에 집중되어 있고 지자체는 권력이나 기회에 집중

○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분석

- 정책이 대상자(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달체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정책은 22개의 부서에서 담당
- 복지정책이 복지대상자(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수원시(담당부서)에서 다른 주체(복지시설 등)를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2단계가 가장 많음. 이는 결과적으로 중간 전달체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유형의 매트릭스 분석

- 수원시 복지정책과 대상에게 제공되는 급여유형을 비교한 결과, 자체사업은 사업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분야를 제외한 대다수의 정책대상자(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등록장애인, 여성,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훈대상자, 노동자 등)의 급여유형은 시설 및 단체지원에 집중. 즉, 수원시의 자체사업은 대부분 시설 및 단체지원을 통해 지원

- 보조사업에서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현금성 급여, 등록장애인, 노숙인 및 행려자, 여성은 시설 및 단체지원에 집중
- 자체사업은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여성,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노동자,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시설 및 단체지원의 예산액이 많았고, 저소득층은 보조사업과 동일하게 현금성급여에 집중

○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욕구의 매트릭스 분석

- 사회복지정책 대상자와 욕구의 집중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과 욕구를 매트릭스 분석한 결과, 보조사업의 수는 영유아는 이용시설, 아동청소년은 안전, 청년은 자립 및 자활에 집중되어 있고, 수원시 자체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은 안전, 청년 및 노인은 문화 및 여가, 중장년은 일자리(노동), 저소득은 일자리 및 주거, 노숙인 및 행려자는 장례, 여성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환경조성에 집중
- 정부의 주된 현금성 급여(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기초연금, 생계급여) 편성예산액은 대상에 상관없이 높았으며, 시 자체사업에서는 대상별로 시설(어린이집, 수원시청 소년재단,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등)과 관련된 운영비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제언

○ 외부적 정책제언

- 정부 간 관계에서 예산규모가 큰 현금성 급여에 대한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개편 필요
- 특례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세입자율성 보장

○ 내부적 정책제언

- 중복적 어려움을 겪거나 신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 확대
- 새롭게 등장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확대(욕구와 정책의 일치성 높이기)
-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안 마련(정책의 성과분석)
- 중복욕구 대상자의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적전달체계 개편
-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위탁시설의 성과분석 등)

주제어: 사회복지정책, 보조사업, 자체사업, 대상, 욕구, 급여유형, 전달체계, 특례시, 다차원 분석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1
1. 정책 대상자 및 욕구	11
2. 급여유형 및 전달체계	33
제2절 특례시의 사회복지정책	37
1. 특례시의 개념	37
2. 특례시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38
 제3장 사회복지정책 관련된 수원시의 여건 분석	 43
제1절 인구	45
1.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	45
2. 비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	49
제2절 전달체계	54
1. 시(市)	54
2. 구(區)	58
3. 행정동(洞)	59
제3절 예산	60
1. 세입예산	60
2. 세출예산	62

제4장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다차원 분석	67
제1절 사회복지정책 분석	69
1. 재원을 통한 분석	69
2. 할당을 통한 분석	71
3. 욕구를 통한 분석	76
4. 급여유형을 통한 분석	80
5. 전달체계를 통한 분석	82
제2절 매트릭스 분석	89
1. 대상 및 급여유형의 매트릭스 분석	89
2. 대상 및 욕구의 매트릭스 분석	100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25
제1절 요약	127
1. 연구결과	127
2. 연구의 한계	129
제2절 정책제언	129
1. 외부적 정책제언	129
2. 내부적 정책제언	130
참고문헌	133

표 차례

〈표 1-1〉 연구의 범위	6
〈표 2-1〉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구분	13
〈표 2-2〉 본 연구에서 정의한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대상자의 연령 기준	13
〈표 2-3〉 수원시에서 제안된 영유아와 관련된 욕구(질적인인터뷰)	14
〈표 2-4〉 수원시에서 제안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욕구(질적인인터뷰)	15
〈표 2-5〉 수원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주된 어려움 및 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16
〈표 2-6〉 수원시에서 제안된 청년과 관련된 욕구(질적인인터뷰)	16
〈표 2-7〉 수원시 청년가구의 영역별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17
〈표 2-8〉 수원시 중장년가구의 영역별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18
〈표 2-9〉 수원시 노인의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20
〈표 2-10〉 수원시 노인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20
〈표 2-11〉 수원시에서 제안된 노인과 관련된 욕구(질적인인터뷰)	21
〈표 2-12〉 수원시에서 제안된 저소득층과 관련된 욕구(질적인인터뷰)	23
〈표 2-13〉 수원시민의 기초생활유지 관련 지원·서비스(양적조사)	23
〈표 2-14〉 수원시민이 인식하는 장애인돌봄 관련 어려움 및 지원·서비스(양적조사)	24
〈표 2-15〉 수원시 장애인 관련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25
〈표 2-16〉 수원시에서 제안된 장애인과 관련된 욕구(질적인인터뷰)	26
〈표 2-17〉 수원시에서 제안된 이주민과 관련된 욕구(질적인인터뷰)	27
〈표 2-18〉 수원시 다문화가구 관련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28
〈표 2-19〉 수원시에서 제안된 여성과 관련된 욕구(질적조사)	30
〈표 2-20〉 수원시 1인가구 관련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32
〈표 2-2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비교	34
〈표 2-22〉 행전안전부 및 4개 특례시 제안 특례사무	38
〈표 3-1〉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인구(2017년~2021년)	45
〈표 3-2〉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영유아 인구(2017년~2021년)	46
〈표 3-3〉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아동·청소년 인구(2017년~2021년)	46
〈표 3-4〉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청년 인구(2017년~2021년)	47
〈표 3-5〉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중·장년 인구(2017년~2021년)	47
〈표 3-6〉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노인 인구(2017년~2021년)	48

〈표 3-7〉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노인집단별 인구(2017년~2021년)	48
〈표 3-8〉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구(2017년~2021년)	50
〈표 3-9〉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차상위계층 인구(2017년~2021년)	50
〈표 3-10〉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등록장애인 인구(2017년~2021년)	51
〈표 3-11〉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고령장애인 인구(2017년~2021년)	51
〈표 3-12〉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등록외국인 인구 비중(2017년~2021년)	52
〈표 3-13〉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여성 인구(2017년~2021년)	52
〈표 3-14〉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한부모 인구(2017년~2021년)	53
〈표 3-15〉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1인 가구 비율(2017년~2021년)	53
〈표 3-16〉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보훈대상자 인구(2017년~2021년)	54
〈표 3-17〉 수원시 복지여성국 부서별 인력 현황	55
〈표 3-18〉 용인시 복지여성국 부서별 인력 현황	56
〈표 3-19〉 고양시 복지여성국 부서별 인력 현황	57
〈표 3-20〉 수원시 4개 구 사회복지업무 관련 인력 현황	58
〈표 3-21〉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인력 현황	59
〈표 3-22〉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재정자립도(2017년~2020년)	61
〈표 3-23〉 수원시 세입예산 현황(2017년~2021년)	61
〈표 3-24〉 수원시 기능별 예산 현황(2017년~2021년)	62
〈표 3-25〉 용인시 기능별 예산 현황(2017년~2021년)	63
〈표 3-26〉 고양시 기능별 예산 현황(2017년~2021년)	64
〈표 3-27〉 수원시 사회복지예산의 부문별 예산현황(2021년 최종예산)	65
〈표 4-1〉 수원시 2022년 사회복지부문의 사업 수 및 예산	69
〈표 4-2〉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예산(상위 15개)	70
〈표 4-3〉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별 예시	71
〈표 4-4〉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별 사업 수	72
〈표 4-5〉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별 예산	75
〈표 4-6〉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욕구별 예시	76
〈표 4-7〉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욕구별 사업 수	77
〈표 4-8〉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욕구별 예산	79
〈표 4-9〉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유형에 따른 사업 수	80
〈표 4-10〉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유형별 예산	81
〈표 4-11〉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사업 수	83
〈표 4-12〉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예시	83
〈표 4-13〉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별 사업 수	84
〈표 4-14〉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부서별 예산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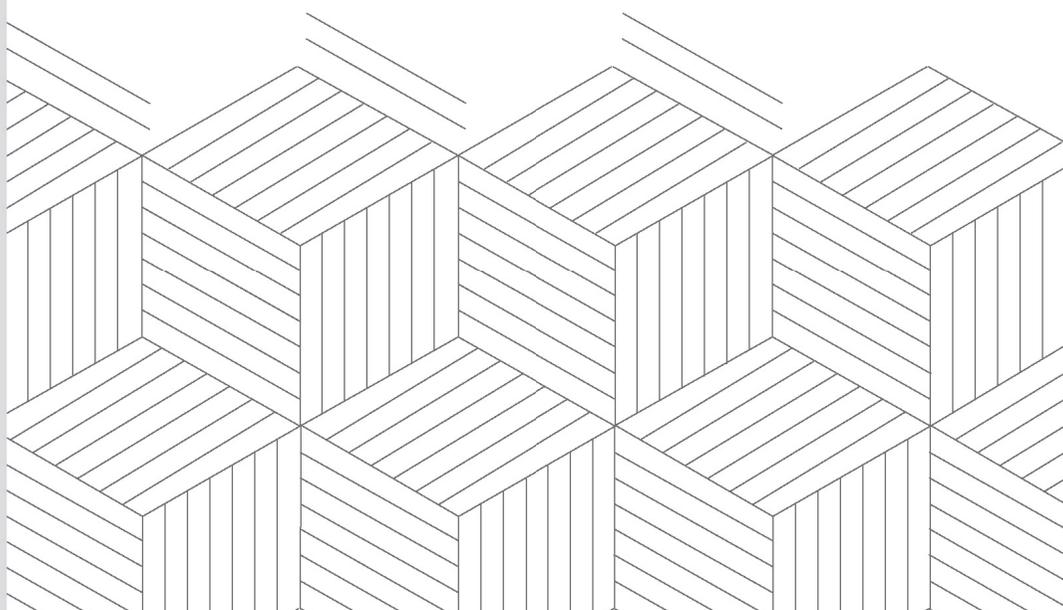
〈표 4-15〉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따른 예산	87
〈표 4-16〉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급여유형 분석(전체)_사업 수	89
〈표 4-17〉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급여유형 분석(보조)_사업 수	91
〈표 4-18〉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급여유형 분석(자체)_사업 수	92
〈표 4-19〉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급여유형 분석(전체)_예산	94
〈표 4-20〉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급여유형 분석(보조)_예산	96
〈표 4-21〉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급여유형 분석(자체)_예산	98
〈표 4-22〉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사업 예시(보조)	100
〈표 4-23〉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사업 예시(자체)	101
〈표 4-24〉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 분석(전체)_사업 수	102
〈표 4-25〉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 분석(보조)_사업 수	105
〈표 4-26〉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 분석(자체)_사업 수	108
〈표 4-27〉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욕구 분석(전체)_예산(생애주기)	112
〈표 4-28〉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욕구 분석(전체)_예산(비생애주기)	113
〈표 4-29〉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 분석 예시(보조)	116
〈표 4-30〉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욕구 분석(보조)_예산(생애주기)	116
〈표 4-31〉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욕구 분석(보조)_예산(비생애주기)	118
〈표 4-32〉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 분석 예시(자체)	120
〈표 4-33〉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욕구 분석(자체)_예산(생애주기)	122
〈표 4-34〉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욕구 분석(자체)_예산(비생애주기)	123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7
〈그림 3-1〉 수원시 복지여성국 조직도	55
〈그림 3-2〉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조직도	59
〈그림 3-3〉 수원시 사회복지예산 및 비중 현황(2017년~2021년)	62
〈그림 3-4〉 용인시 사회복지예산 및 비중 현황(2017년~2020년)	63
〈그림 3-5〉 고양시 사회복지예산 및 비중 현황(2017년~2020년)	64
〈그림 4-1〉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별 사업 비중(보조 및 자체)	72
〈그림 4-2〉 수원시의 노인정책별 노인의 세부집단 연령 기준	73
〈그림 4-3〉 수원시 소득기준별 사회복지정책(보조사업)	74
〈그림 4-4〉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별 예산액의 보조 및 자체사업 비중)	75
〈그림 4-5〉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유형에 따른 보조 및 자체사업 수 비중	80
〈그림 4-6〉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유형에 따른 보조 및 자체사업 비중	81
〈그림 4-7〉 수원시 사회복지예산의 전달체계 현황	82
〈그림 4-8〉 수원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담당부서 예산(상위 5개 부서)	85
〈그림 4-9〉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보조)	8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복지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능식, 구찬동, 2012). 그리고 2012년 정치적 이슈로 등장한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국가의 복지정책은 급격히 확대되었다(신진욱, 서준상, 2016; 장대홍, 2015).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또한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사회문제에 시의적절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하여 도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강영주, 최지민, 2019).

우리나라와 같이 수직적으로 다층화되어 있는 정부 간 관계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는 기초정부의 복지정책과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이선화, 2021). 예컨대 중앙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실행한 복지정책은 정책 대상자 및 서비스, 자원조달 계획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에게 시행을 하달하면서 대응지방비(matching grants)까지 매칭시키고 있다(김우림, 2021; 이선화, 2021; 한승희, 2019). 이에 수원시의 사회복지예산은 보조금과 대응지방비까지 포함되어 2008년 228,924,321천원에서 2022년 본예산 기준 1,164,488,718천원(세출예산의 45.3%)까지 증가하였다(수원시 내부자료). 그리고 상위정부의 보조사업은 기초지자체에게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전달)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정부의 복지정책이 양·질적으로 확대되면 기초지자체의 복지정책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다.

수원시는 지역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자체복지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현재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하달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수원시민의 입장에서는 상위정부로 위임된 복지가 확대되면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와 서비스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양·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체감할 수 있다. 즉,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구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위정부의

이양된 보조사업의 확대가 자체복지사업을 감소시키는 것이 체감되지 않고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보조사업의 지속적 확대는 기초지자체의 세입자율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컨대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50.79%에서 2020년 36.52%로 4년동안 -28.1%p(지방재정 365)가 감소하였는데 반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이 자체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즉,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재정구조 속에서 상위정부의 보조사업은 확대는 기초지자체의 자체복지사업을 축소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상위정부의 복지확대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이거나 또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있고 상위정부에서 위임한 복지정책은 복지대상자의 기준을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들 간의 사각지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복지욕구와 복지대상자는 다변화되고 지역마다 복지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법률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매칭비로 인하여 지자체의 예산이 축소되면 계속하여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자체의 복지분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김승연, 2019; 남찬섭, 2016). 즉, 상위정부로부터 이양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필연적으로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2022년 1월 특례시로 출범하였다. 이에 수원시민들은 행정, 재정,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특례시로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율성과 관련된 권한은 결정된 것이 없는데 반해 보조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원시의 자체복지사업은 축소되고 있다. 이에 특례시로서 복지정책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정부 간 관계에서 재정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합의하는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에 우선적으로는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적으로 자체사업을 위한 복지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하는 수원시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다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한정된 재정 속에서 특례시로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2022년에 수립되는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민선8기의 새

로운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수원시가 특례시로서의 성장과 변화를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특성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구조(틀)는 무엇인가?

둘째, 특례시로 출범하였을 때 기대하는 수원시의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셋째, 수원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여건은 어떠한가?

넷째,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다섯째,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한 내·외부적 대안은 무엇인가?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다차원이라 함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분석틀(대상, 욕구,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대상, 정책적 욕구, 전달체계, 재정부담(보조 및 자체사업) 등으로 분석한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이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대상자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대상자(할당)를 분류하였는데, 복지대상자는 현재 법률 등에서 생애를 기준으로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생애주기와 비생애주기로 구분하였다.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이 제공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복지욕구를 크게 일자리(노동), 돌봄(지역사회), 출산 및 돌봄(가족 및 가정), 환경조성, 문화 및 여가, 자립 및 자활, 건강(정신·신체), 안전, 주거 등과 같이 28개로 구분하였다. 복지대상자(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급여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달체계는 수원시에서 당사자(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본예산(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하고, 이때 사회복지정책은 행전안전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분류체계에서 사회복지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수원시 복지정책과 관련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같이 특례시로 출범한 고양시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복지정책과 관련된 여건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의한 위임된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자체사업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분류하였고, 전액 수원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였다.

〈표 1-1〉 연구의 범위

구분	내용	
대상 (할당)	생애주기	영유아(만0~5세), 아동청소년(만6~18세), 청년(만19~34세), 중장년(만35~64세), 노인(만65세 이상)
	비생애주기	저소득, 등록장애인, 노숙인 및 행려자, 여성,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훈대상자, 복합적대상자(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적기업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원시민, 기타
욕구	건강, 교육, 돌봄, 문화 및 여가, 발달(성장) 및 재활, 사회참여, 소득보장, 안전, 주거 등	
급여유형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	
전달체계	1단계 : 시 → 당사자 2단계 : 시 → 구 및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 당사자 3단계 : 시 → 구(사회복지시설) 등 → 단체 및 위탁체, 시설 등 → 당사자	
재원	보조사업, 자체사업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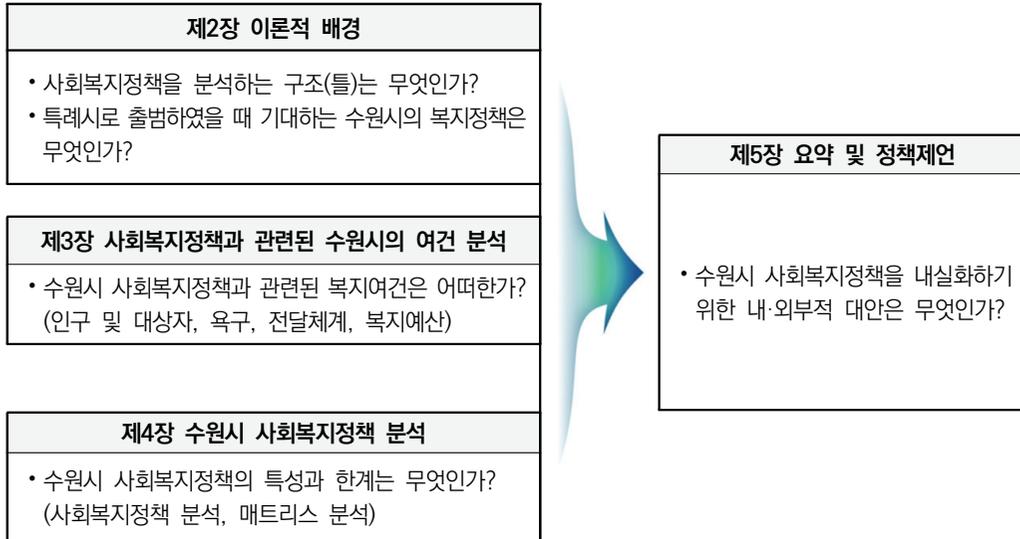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구조(틀)는 무엇인가?’와 ‘특례시가 되었을 때 기대하는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해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분석하였고, 정부 간 관계를 통해 특례시로서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수원시의 복지여건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원시와 인구규모가 유사하고 경기도에서 같은 특례시로 출범한 고양시와 용인시와의 여건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때 복지여건이라 함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고려되는 복지대상자 및 욕구, 전달체계, 재정을 의미한다.

제4장에서는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서 2장에서 분석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분야, 대상, 생애주기, 욕구, 급여, 전달체제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복지욕구와 여건 등을 매칭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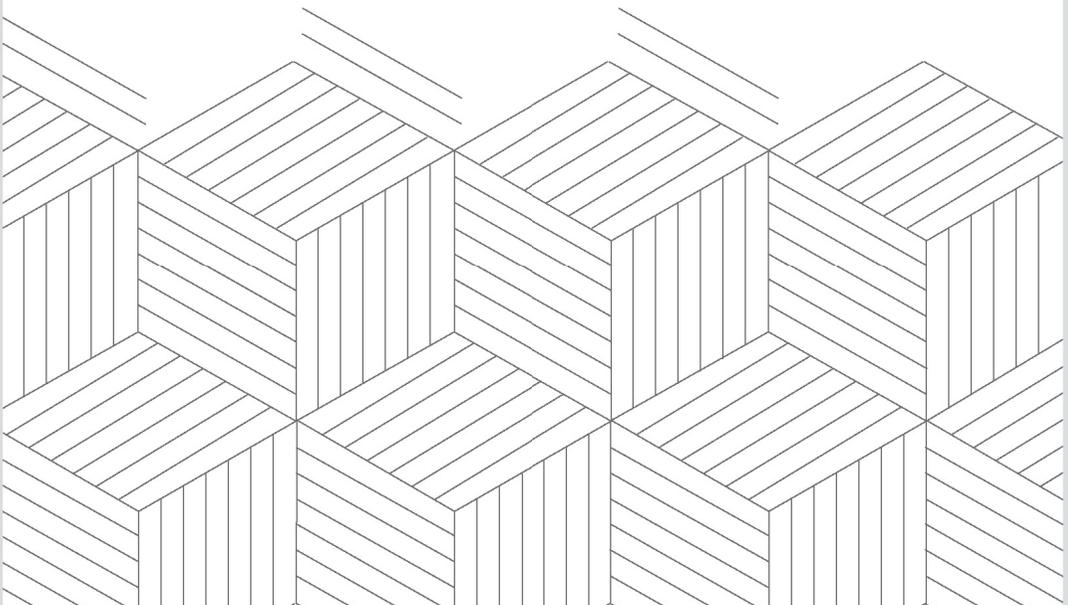
정책의 양적인 수와 정책에 편성된 예산의 집중성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사업 수와 편성된 예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분석하였던 복지정책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적인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제2절 특례시의 사회복지정책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정책 대상자 및 욕구

사회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로 갖는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설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고 정책 집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기준을 활용하고 있다(이윤경,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생애주기와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정책에서 생애주기의 의미

생애주기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람의 생애를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단계로 구분한 과정이다(두산백과, 2022). 인간의 삶은 발달과 변화를 겪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과정의 독특성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인간의 생애주기(life cycle)라고 한다(김영미, 2021).

생애주기는 연구의 목적이나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생애주기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종인 외(2007)은 생애주기는 개인이 태어나서 성장·발달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변화과정을 의미하며 나이가 들어가는 일정한 순서의 진행에 의해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로 향하는 단계적 변화과정이라고 하였다. 윤소영(2010)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경험되는 모든 변화는 나이를 먹는 과정의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고 모든 사람의 일생 가운데 반복되면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데, 이 전체를 생애주기라 정의하였다. 박시내 외(2013)는 생애주기는 한 인간이 생명체로 시작하는 임신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의 기간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정준수 외(2017)는 생애주기는 인간의 발달상에서 어떤 과제의 성취와 특정한 측면발달이 강조되는 삶의 기간으로 정의하였다.

인간의 행동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애주기를 통한 발달단계별 특징과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연령별·시기별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발달과정 중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대다수의 인간은 문제에 봉착하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를 통하여 인간의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 위험에 대한 사전·후대책을 강구하여, 외부의 도움을 체계화·제도화한 것이 사회복지정책이다(김영미, 2021).

생애주기는 구분 목적에 따라 단계의 수와 기준을 달리한다(이윤경, 2021). 인간의 보편적 삶의 과정으로는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거나, 입학, 진학, 취직, 결혼, 직업전환, 은퇴 등의 과정으로 분류되어 표시하기도 하며(윤혜경, 2007), 가족형태에 따라 가족의 형성(formation), 확장(extension), 수축(cintraction), 소멸(dissoiution)의 과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Murphy, 1987). 생애주기는 이러한 일정한 지표에 의해 표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지표는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에 따라 상이하지만 순서는 연령과 관련되는 것이 공통적이다(윤소영, 2010).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자 선정의 연령은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2010)는 생애주기를 핵심 복지지표 도출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분류하였으며, 박시내 외(2013)는 연령기준을 대분류 3단계로 구분하여 아동·청소년기(0-19세), 성인기(2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분류한 후 영·유아기(출생 후-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9세), 청년기(20-29세), 장년기(30-49세), 중년기(50-64세), 노년기(65-84세), 초고령기(85세 이상)로 세분화하여 8단계로 분류하였다. 새로운 복지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연구한 안상미 외(2010)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를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노년기(65세 이상)의 3단계로 구분하였고, 유럽연합(EU)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정책 분석 틀에서는 연령기준을 0~17세, 18~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2010)'에서는 태아기, 영유아기(0~6세), 아동기(7~12세), 청소년기(13~19세), 성인기(20~39세), 중·장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였다(송미영, 2010)(〈표 2-1〉 참조).

〈표 2-1〉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구분

구분	신복지체계	유럽연합(EU) 사회정책 핵심지표	생애주기 이론	
생애주기	아동·청소년기 (0~24세)	0~17세	태아기	
			영·유아기(0~6세)	
			아동기(7~12세)	
	성인기 (25~64세)	18~44세	청소년기(13~19세)	
			성인기(20~39세)	
			중·장년기(40~64세)	
				45~54세
				55~64세 (55~59세/ 60~64세)
	노년기(65세 이상)	65세 이상	노년기(65세 이상)	

자료: 박시내, 박준오, 류광현 (2013), 인구센서스 생애주기분석(1) 가족 및 개인의 생애주기 특성 분석, 통계청.

연령의 기준과 범위는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다. 이는 연구에서 대상을 정의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법령에 의한 나이를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원시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은 법률을 근거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 2-2〉와 같이 법률에서 정의한 연령기준을 중심으로 대상을 구분하였다.

〈표 2-2〉 본 연구에서 정의한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대상자의 연령 기준

구분	근거 법률	법률 근거 연령기준	본 연구에서의 연령 기준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만 5세 이하	만 5세 이하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법	만 18세 미만	만 6세 ~ 만 18세 미만
청년	청년기본법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중·장년	-	만 35세 이상 ~ 만 64세 이하	만 35세 이상 ~ 만 64세 이하
노인	노인복지법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2) 복지 욕구¹⁾

생애주기는 모든 세대 혹은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와 과제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생애주기에 접하는 과업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년배 집단의 문제일 수 있다(양희택 외, 2012). 따라서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를 단계별로 이해하고, 욕구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다른 대상자의 특징과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사회복지보장영역으로 조사된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욕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영·유아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이하를 영유아로 정의하였다. 영·유아기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 시기의 신체발달, 감각운동,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은 성인기가 된 이후에도 영향을 줄 만큼 영·유아기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기는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률의 감소로 영유아의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수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 그 중 특히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장애(위험)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동 조사에서 실시한 질적인인터뷰에서도 돌봄과 관련된 욕구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특히 장애위험이나 외국인가정과 같이 중복위험성을 겪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상별로 제기되었다. 즉, 중복적 위험을 갖고 있는 돌봄대상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2-3〉 수원시에서 제안된 영유아와 관련된 욕구(질적인인터뷰)

구분	욕구
돌봄	하모니교사 사업(이주민 자녀)의 개편을 통한 확대
	장애위험 영유아(장애의심 +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개입 정책의 확대
	외국인가정 자녀(외국인 + 영유아, 아동청소년)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안전	장애진단 및 개입(바우처 등) 관련 지원
	감염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1) 복지대상자의 욕구는 수원시에서 최근에 연구된 자료에서 대상별로 발췌한 내용이다.

(2) 아동·청소년

만6세에서 만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은 학교교육을 통해 인지능력이 발달하고 성인기로 전화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발달이 급등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도 감정변화가 큰 질풍노도를 겪는 시기이기도 해서 해당연령에서는 안전이나 돌봄, 신체·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하게 논의된다.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질적 인터뷰에서 도출된 아동·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주된 욕구는 영유아와 동일하게 돌봄과 관련된 이슈가 많았다(〈표 2-4〉 참조). 특히 한부모가정이나 제도권 밖에 아이들 그리고 장애아동처럼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에 대한 돌봄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안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 현상으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제약되다보니 디지털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최근 아동·청소년도 코로나블루와 학습스트레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표 2-4〉 수원시에서 제안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욕구(질적인터뷰)

구분	욕구
돌봄	한부모 가정에 아이돌봄 및 가사지원 서비스 지원
	제도권(학교) 밖 아이들의 보호체계 확대
	아동돌봄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돌봄대상자 확대(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개입 및 학교사회복지의 확대
	중복적 욕구를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돌봄 (장애+아동청소년/중도입국 청소년+아동청소년/장애의심 아동+이주민 자녀 등)
안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보호체계 마련
건강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개입(상담 등)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질적인터뷰에서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것처럼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조사에서도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 및 정책적 욕구가 표출되었다(〈표 2-5〉 참조). 질적조사에서는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아동과 관련된 욕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양적조사에서는 아동돌봄과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주를 이

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²⁾과 관련된 주된 어려움은 경기도 평균의 경우 ‘양육비 부담’이 가장 높는데 반해 수원시에서는 ‘양육관련 정보와 양육기술 부족’이 2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양육비 부담’, ‘양육지원시설 및 서비스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원시민이 인식하는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서도 ‘양육비 지원’과 더불어 ‘양육관련 정보와 양육기술’과 ‘양육지원시설 및 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다.

〈표 2-5〉 수원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주된 어려움 및 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단위: 점)

문항	어려움을 겪는 수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경기도 평균	수원시 평균	경기도 평균	수원시 평균
양육비 부담	34.9	28.6	45.1	36.3
양육지원시설 및 서비스 부족	33.7	28.5	44.7	35.8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34.6	28.8	43.2	34.7
양육관련 정보와 양육기술 부족	32.7	29.4	41.3	35.8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22.1	18.1	29.7	23.9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3) 청년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인생전체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인생의 전환기로 본격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결혼 등을 통해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진로, 학업, 직장생활, 연애, 결혼, 주거, 출산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다(곽금주, 2010).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수원지역에서는 〈표 2-6〉과 같이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일자리와 주거와 같은 자립정책의 필요성이 인터뷰에서 제기되었다.

〈표 2-6〉 수원시에서 제안된 청년과 관련된 욕구(질적인터뷰)

구분	욕구
교육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일자리	재직자와 청년 취업준비생의 연계(네트웍) 사업
주거	청년주거상담소 설치
	주거정책 확대(대학생 기숙사 사업 등)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2)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는 영유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으로만 분류하고 있음

청년과 관련된 양적조사를 영역별로 분석하면 다음의 <표 2-7>과 같다. 먼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청년가구와 청년 독거가구 모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신체건강에서는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 관련 지원·서비스’가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원하는 일자리 관련 지원·서비스’, 기초생활유지에서 청년이 있는 가구는 ‘생계비 관련 지원·서비스’이 가장 높는데 반해 청년 독거가구는 ‘가계 재정 관리 관련 지원·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7> 수원시 청년가구의 영역별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단위: 점)

구분		수원시 평균	청년 가구 평균	청년 독거 가구 평균	
정신 건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26.5	24.8	22.8	
	중증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9.9	18.6	16.5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9.6	18.5	16.4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7.5	16.7	16.1	
	트라우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8.9	18.7	19.4	
신체 건강	신체적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28.2	25.4	22.0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 관련 지원·서비스	28.4	25.6	23.4	
고용	원하는 일자리 관련 지원·서비스	40.2	42.2	43.4	
	취업·창업 정보 관련 지원·서비스	36.4	38.1	42.3	
	(재)취업준비 비용관련 지원·서비스	30.9	32.8	33.1	
	창업자금 관련 지원·서비스	29.6	31.1	31.0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취업 지원·서비스	37.9	37.9	39.2	
기초 생활 유지	기초생활 해결	생계비 관련 지원·서비스	28.4	25.0	22.1
		주거비 관련 지원·서비스	25.6	23.6	21.7
		의료비 관련 지원·서비스	29.1	24.8	22.2
		냉난방비 관련 지원·서비스	23.5	21.6	20.8
	가계 재정 관리 관련 지원·서비스	23.5	22.3	23.6	
보호· 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 관련 지원·서비스	22.0	22.3	21.7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관련 지원·서비스	23.4	23.5	23.5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4) 중·장년

중·장년층(만 35~64세)은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지만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모어(Marmor)는 장년기의 위기를 첫째, 신체적 노화, 둘째, 사회적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 셋째, 경제적 스트레스 증가, 넷째, 이별과 상실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로 정의하면서 중장년층이 느끼는 위기와 불안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고지희 외, 2013).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질적인인터뷰에서는 중장년 독거가구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다(수원시,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 그리고 양적조사에서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로는 정신건강에서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트라우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수원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2-8〉 참조). 그리고 신체건강과 관련된 욕구도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 관련 지원·서비스’가 중장년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수원시민과 중장년이 있는 가구는 ‘원하는 일자리 관련 지원·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중장년 독거가구는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취업 지원·서비스’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생활유지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의료비 관련 지원·서비스’가 가장 높았고, 보호·안전도 가족외부로부터의 안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2-8〉 수원시 중장년가구의 영역별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단위: 점)

구분		수원시 평균	중장년 가구 평균	중장년 독거 가구 평균	
정신 건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26.5	26.5	28.5	
	중증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9.9	19.9	22.3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9.6	20.0	22.3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7.5	17.7	17.9	
	트라우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8.9	19.0	18.6	
신체 건강	신체적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28.2	27.3	30.5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 관련 지원·서비스	28.4	27.6	31.4	
고용	원하는 일자리 관련 지원·서비스	40.2	39.9	36.1	
	취업·창업 정보 관련 지원·서비스	36.4	36.0	33.0	
	(재)취업준비 비용관련 지원·서비스	30.9	30.9	28.1	
	창업자금 관련 지원·서비스	29.6	29.4	27.3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취업 지원·서비스	37.9	37.8	37.5	
기초 생활 유지	기초생활 해결	생계비 관련 지원·서비스	28.4	27.5	28.4
		주거비 관련 지원·서비스	25.6	24.8	24.3
		의료비 관련 지원·서비스	29.1	28.1	31.8
		냉난방비 관련 지원·서비스	23.5	23.1	23.6
	가계 재정 관리 관련 지원·서비스	23.5	23.1	23.9	
보호·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 관련 지원·서비스	22.0	22.1	21.8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관련 지원·서비스	23.4	23.5	23.2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5) 노인

노인을 구분하는 개념이나 노령선은 학자마다 지역과 문화에 따라 노인개념이나 노령선이 상이하다. Havighurst는 노년을 후기 성숙기인 만65세 이후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시기로 보고 있으며, Erikson은 자아의 8단계 발달과정 중 통합과 절망의 양극 감정이 대립하는 성인 후기인 만65세 이상을 노인기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히 현행법으로 노인을 몇 세로 정의한 것인지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지만 「노인복지법」 제3장 제26조에 만65세 이상에게는 우대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연령이 만 65세이다 보니 통상적으로 노인은 만 65세로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경제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계에서는 노인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2015년 UN에서도 새로운 연령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가족구조의 가치적 변화는 지금까지 노인 부양을 가족 내에서 감당해 온 것과 달리 더 이상 노인문제를 가족에게만 남겨 놓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보호망과 관계망이 요구되고 있다(여성신문, 2011). 이러한 의미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적절한 서비스 마련과 제도 등의 정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지만, 노인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의 세부연령 구분의 경우, Brody는 만55~64세까지를 연소노인, 만65~74세까지를 중·고령노인, 만75세 이상을 고령노인으로 구분하였고, B. Neugarten은 만55~74세를 연소노인, 만75~84세는 고령노인, 만85세 이상을 초고령노인으로 구분하였다. Atchley는 만60~74세를 연소노인, 만75~84세를 중·고령노인, 만 85세를 고령노인으로 구분하였다(최해경,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구분하되 65~74세를 연소노인, 75~84세를 중고령노인, 85세 이상을 초고령노인으로 구분하여 복지여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수원지역의 노인과 관련된 어려움 및 표출된 양적 욕구를 분석한 결과(〈표 2-9〉 참조), 노인돌봄과 관련된 주된 어려움은 가사활동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재난 관련 대처와 가사활동과 관련된 욕구가 타 서비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수원시민이 인식하는 것보다 노인이 있는 가구와 노인단독가구에서 인식하는 어려움과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9〉 수원시 노인의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단위 : 점)

구분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가사 활동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부담	돌봄비용 부담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어려움을 겪는 수준	경기도 평균	29.5	30.5	29.9	29.4	24.7	23.2	25.0	27.0
	수원시 평균	28.5	30.5	27.5	30.1	23.9	21.4	24.5	24.4
	노인 가구	28.2	44.0	16.0	9.5	2.3	72.1	27.9	24.4
	노인 단독	23.3	35.5	21.6	14.0	5.6	58.9	41.1	-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경기도 평균	37.8	39.0	38.0	37.0	38.0	34.9	32.7	32.4
	수원시 평균	35.2	36.4	34.7	36.7	35.6	32.4	28.8	28.4
	노인 가구	35.2	36.4	34.7	36.7	35.6	32.4	28.8	28.4
	노인 단독	42.5	44.8	40.9	40.6	40.1	-	-	-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이밖에도 노인과 관련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노인가구와 독거노인 가구에서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 그리고 신체건강에서도 일반 수원 시민은 일상적인 신체건강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노인가구와 독거노인가구는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생활유지에서는 모두 의료비 지원, 그리고 보호·안전에서는 가족외부로부터의 안전과 관련된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표 2-10〉 수원시 노인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단위 : 점)

구분		수원시 평균	노인가구 평균	독거노인 가구 평균	
정신건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26.5	30.5	29.3	
	중증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9.9	23.8	23.9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9.6	21.2	19.8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7.5	19.3	16.9	
	트라우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8.9	19.7	17.8	
신체건강	신체적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28.2	42.1	41.1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 관련 지원·서비스	28.4	39.6	38.9	
기초 생활 유지	기초생활 해결	생계비 관련 지원·서비스	28.4	39.6	36.2
		주거비 관련 지원·서비스	25.6	33.2	27.5
		의료비 관련 지원·서비스	29.1	43.0	41.0
		냉난방비 관련 지원·서비스	23.5	29.2	26.1
	가계 재정 관리 관련 지원·서비스	23.5	27.4	25.3	

구분		수원시 평균	노인가구 평균	독거노인 가구 평균
보호·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 관련 지원·서비스	22.0	23.0	22.8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관련 지원·서비스	23.4	23.8	24.0
고용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40.2	42.0	100.0
	취업·창업정보 부족	36.4	38.7	50.0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30.9	32.4	0.0
	창업자금 부족	29.6	30.4	0.0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취업 지원·서비스	37.9	41.2	100.0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표 2-11〉과 같이 질적인터뷰를 통한 결과에서는 양적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고용과 관련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노인들의 정보격차 완화, 응급 알리미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사회참여 정책의 확대, 지역사회 돌봄의 필요성 및 노인욕구에 기반한 문화·여가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2-11〉 수원시에서 제안된 노인과 관련된 욕구(질적인터뷰)

구분	욕구
돌봄	실비 노인복지시설(거주시설) 확충
	아파트 내 유희 인력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정책
	사각지대 노인의 발굴 및 지원 확대
	지역기반형 돌봄정책의 확대
안전	아파트 지역주인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정책
	응급 안전벨 설치 지원대상의 확대
	지역사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건강	치매 이외에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및 노인들의 정신적 개입의 확대
교육	노인디지털 교육의 필요성
일자리	유희인력인 노인들을 활용한 일자리 정책
문화여가	지역사회 공연의 기회 제공 확대(복지관에서 배운 프로그램)
사회참여	자신의 재능(직업, 경험)을 활용한 봉사활동 참여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3) 비생애주기 복지대상자의 개념 및 욕구

생애주기는 사람의 생애를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단계로 구분한 과정이다(두산백과). 하지만 생애주기로 구분할 수 없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성, 아동·청소년, 1인 가구, 무연고 노인에 있어서 건강, 교육 등의 격차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엄주란, 문재우, 2020). 이에 이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로 구분할 수 없는 대상자(저소득, 등록장애인, 등록외국인, 여성, 노숙인, 한부모, 1인가구 등)들의 개념과 욕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며, 동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회 취약계층을 의미하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일컫고 있다(이철수, 2013). 정부에서는 수급권자 중 노동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여, 그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백학영·고미선(2007)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공공부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활사업의 목표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활근로 지원사업 제도는 지난 5년 정도의 시행과정을 통해 소극적 소득보장정책에서 적극적 탈빈곤 정책으로 패러다임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지만(권태열, 2006),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원오·김진구(2005)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근로자활사업 근로강도별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근로인센티브 도입,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가족지원체계,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소득층과 관련된 정책의 한계는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질적조사 결과, 수원시의 일자리정책은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적절하게 매칭되지 못하고 일자리에 대한 시의 방향성이 없어 보여주기식의 일자리 정책만 내놓고 있으며, 취약 계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참여자들은 지원기간 종료 후 스스로 자립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표 2-12〉 참조).

〈표 2-12〉 수원시에서 제안된 저소득층과 관련된 욕구(질적인터뷰)

구분	욕구
일자리	일자리 및 자립지원정책의 확대
주거	보증금 지원
문화·여가	소외계층의 문화여가와 관련된 차별적 인식 개선 및 문화접근성 확대
안전	응급알리미 서비스 지원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그리고 양적조사 결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수원시 평균이나 비수급가구보다 기초생활해결 유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서비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2-13〉 참조).

〈표 2-13〉 수원시민의 기초생활유지 관련 지원·서비스(양적조사)

(단위: 점)

구분	기초생활 해결					가계 재정 관리 관련 지원·서비스
	생계비 관련 지원·서비스	주거비 부족 (주택구입비 제외) 관련 지원·서비스	의료비 관련 지원·서비스	교육비 관련 지원·서비스	냉난방비 관련 지원·서비스	
수원시 평균	28.4	25.6	29.1	23.1	23.5	23.5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70.2	64.8	64.2	33.7	57.3	41.8
비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26.7	24.0	27.6	22.6	22.1	22.7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2)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인정항목의 심사를 거쳐 지자체에게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유형을 지체, 뇌병변, 시각, 언어, 청각, 정신, 심장, 신장, 지적, 자폐성, 안면, 호흡기, 간, 장루, 뇌전증과 같이 15개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역에서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정신적장애의 유형인 발달장애인(최중증 장애인 포함)과 신체적장애인의 노령화로 인한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수원시, 수

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

장애인정책에서도 돌봄과 관련된 이슈는 강조되고 있다(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장애인돌봄과 관련하여 수원시민들이 인식하는 장애아동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53.1점) 및 필요성(64.1점)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돌봄과 관련해서는 이동 및 외출과 관련된 지원·서비스의 욕구가 47.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4〉 수원시민이 인식하는 장애인돌봄 관련 어려움 및 지원·서비스(양적조사)

(단위: 점)

구분		어려움을 겪는 수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경기도 평균	수원시 평균	경기도 평균	수원시 평균
장애아동 돌봄 부담		54.9	53.1	69.3	64.1
장애인	가사활동의 어려움	39.2	39.4	46.8	45.6
	신체적·정신적 부담	38.7	38.6	45.0	45.0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39.7	38.3	47.2	47.1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38.7	36.8	46.1	43.5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34.9	33.5	43.8	40.1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36.8	35.0	45.1	42.0
	돌봄비용 부담	33.3	30.7	41.7	38.5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32.6	26.7	40.7	36.0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장애인과 관련된 수원시민의 정책적 욕구를 보면 장애아동 돌봄영역에서는 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양육 관련 정보·기술 부족’과 관련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표 2-15〉 참조). 그리고 가구 내 장애인(아동 포함)있는 가구 모두 일상생활에서는 ‘이동 및 외출’이 높았으며, 기초생활유지에서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다른 욕구보다 높았다.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 등으로 차별받지 않기를 희망하였고, 추가적으로 가족 및 사회적관계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장애인 관련 가구들은 사회적관계가 확장되어야 인식이 수원시민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로 인한 차별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에서 비롯됨을 예측해볼 수 있다.

〈표 2-15〉 수원시 장애인 관련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단위: 점)

구분		수원시 평균	장애가구 평균	장애아동가구 평균	
아동 돌봄	아동 양육 부담	양육비 부담	36.3	39.9	53.1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35.8	35.5	53.1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34.7	40.6	53.1
		양육 관련 정보·기술 부족	35.8	46.4	75.0
	아동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23.9	31.3	75.0
장애인 돌봄	일상생활의 어려움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43.5	43.5	25.0
		가사활동의 어려움	45.6	45.6	39.1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47.1	47.1	39.1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40.1	40.1	25.0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42.0	42.0	39.1
	돌봄 부담	신체적·정신적 부담	45.0	45.0	25.0
		돌봄비용 부담	38.5	38.5	64.1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36.0	36.0	53.1
		장애아동 돌봄 부담	64.1	64.1	64.1
	기초 생활 유지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생계비 부족	28.4	49.0
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			25.6	43.5	39.1
의료비 부족			29.1	50.8	39.1
교육비 부족			23.1	24.6	25.0
냉난방비 부족			23.5	40.5	25.0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23.5	29.4	25.0	
보호· 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22.0	19.8	39.1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23.4	20.6	39.1	
고용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40.2	37.0	53.1	
	취업·창업정보 부족	36.4	34.1	53.1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30.9	30.4	53.1	
	창업자금 부족	29.6	26.8	42.2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37.9	40.8	42.2	
관계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26.0	29.8	39.1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27.0	28.4	39.1	

주: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 보장 조사에서는 어려움과 필요성을 동시에 질문하고 있어 문항이 어려움으로 기술되어 있음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 보장 조사

〈표 2-16〉과 같이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질적인터뷰 결과에서는 특히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장애인과 중고령장애인에 대한 낮시간 돌봄서비스의 필요성과 더불어 개인별 지원계획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2021).

〈표 2-16〉 수원시에서 제안된 장애인과 관련된 욕구(질적인터뷰)

구분	욕구
돌봄	낮시간 돌봄서비스 확대
	최중증장애인 및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마련
	장애인 개인별계획을 통한 돌봄시설 연계시스템 마련
	장애아동의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과 관련된 개입 확대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의 확대
건강	의료접근성의 확대
	조기장애 진단 및 초기치료 지원
전달체계	일원화 된 원스톱 서비스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웃도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0%를 상회하는 초고령화(Super Aged Society)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20). 그러나 장애인구 고령화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2.2%에서 2019년 48.3%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9년 신규 등록장애인 중에서 65세 이상이 57.6%로 향후 장애인구 고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보건복지부, 2020). 이처럼 장애인의 고령화와 더불어 비장애인인구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aging with disability)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김현승, 이의정, 2021).

고령장애인은 장애의 시점이나 원인, 유형 등과 상관없이 장애를 가진 나이 많은 장애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장애인의 개념 정의는 쉽지 않고, 학자마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연령의 규정이 다르다. 그 이유는 ‘노인’과 ‘장애’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고, 단순히 연령뿐만 아니라 장애유형, 신체 및 기능적 상태, 사회참여 정도 등의 복합적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송미영, 2011).

최근에는 장애인의 조기노화(premature aging)를 고려하여 일반인구의 역연령 기준인 65세보다 낮은 50세 이상 장애인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용탁, 2007; 김용탁, 박단비, 2013; 노승현 외, 2017; 박종엽, 양희택, 2016; 서지혜, 나운환, 오소윤, 2016; 황주희 외 2014). 왜냐하면 그동안 고령장애인은 장애인문제와 노인문제를 복합된 형태로 갖고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 인식되어 복지서비스 간의 연계체계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노승현 외, 2017; 박종엽, 양희택, 2016).

노인 인구 중에서도 고령장애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개인이 심리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최성현, 허준수, 2019).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령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중시되고 있으며,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된다(정문진, 이성규, 2017). 따라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고령장애인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정책이 필요하다.

(3) 등록외국인(이주민 포함)

이주민이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결혼이주여성, 미국동포,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난민,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주민을 포함한 수원시의 외국인 주민은 33,251명으로 경기도에서 안산시,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도시이다. 외국인 주민의 경우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이주배경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표 2-17〉 참조), 외국인주민들은 한국적응의 어려움(한국어, 관공서업무, 자녀교육 등)과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을 포함한 이주민의 세부집단마다 세부적인 욕구는 조금씩 상이하였지만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 일자리 확대와 한국어교육, 인식개선, 심리적 지원, 한국적응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욕구는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수원시,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

〈표 2-17〉 수원시에서 제안된 이주민과 관련된 욕구(질적인인터뷰)

구분	욕구
일자리	차별 인식 개선 및 일자리(관공서 및 창업 등) 확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확대
돌봄	교육비 지원 및 하모니교사 사업의 개편
	고령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파악
건강	심리적 지원
	자녀의 장애인단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교육	부모교육
	자녀의 학습 지원
사회참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
전달체계	통합적 정보제공 체계 마련
	공교육과 관련된 일원화된 전달체계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양적조사에서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인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구”를 다문화가구로 정의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돌봄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돌봄에서는 이동 및 외출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관련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로 다른 집단들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기초생활과 관련해서는 생계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호·안전과 관련해서는 가족 내 안전유지 관련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그리고 장애인과 동일하게 차별인식에 대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하여 사회적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2-18〉 수원시 다문화가구 관련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단위: 점)

구분		수원시 평균	다문화가구 평균	비다문화가구 평균	
아동 돌봄	아동 양육 부담	양육비 부담	36.3	57.5	36.1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35.8	52.2	35.7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34.7	50.7	34.6
		양육 관련 정보·기술 부족	35.8	50.7	35.7
	아동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23.9	26.6	23.9
장애인 돌봄	일상생활의 어려움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43.5	50.0	43.4
		가사활동의 어려움	45.6	50.0	45.6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47.1	75.0	47.0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40.1	50.0	40.1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42.0	75.0	41.9
	돌봄 부담	신체적·정신적 부담	45.0	75.0	44.8
		돌봄비용 부담	38.5	50.0	38.4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36.0	50.0	36.0
장애아동 돌봄 부담		64.1	-	64.1	
정신 건강	정신건강증진의 어려움		26.5	29.4	26.5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19.9	22.3	19.9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19.6	20.9	19.6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17.5	18.1	17.5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18.9	25.0	18.9
신체 건강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28.2	26.4	28.2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		28.4	27.3	28.4
기초 생활 유지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생계비 부족	28.4	32.2	28.4
		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	25.6	31.1	25.6
		의료비 부족	29.1	30.4	29.1
		교육비 부족	23.1	26.6	23.0
		냉난방비 부족	23.5	27.7	23.5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23.5	26.9	23.5

구분		수원시 평균	다문화가구 평균	비다문화가구 평균
보호· 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22.0	26.5	22.0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23.4	24.3	23.4
고용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40.2	44.2	40.2
	취업·창업정보 부족	36.4	45.4	36.4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30.9	29.1	31.0
	창업자금 부족	29.6	29.4	29.6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37.9	46.2	37.9
관계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26.0	27.5	26.0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27.0	31.0	27.0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4) 여성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유형에 속하는 소수자를 장애인, 외국인(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청소년, 아동노인, 병력자, 군인, 비정규직 노동자,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탈북자))등을 포함시키고 있다(오세연, 2017). 사회적 약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의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란 사회공동체를 지배하는 법적 지위에 비해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지위에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나달숙, 2013).

수원시에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6건의 조례가 제정되었다(수원시,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 그 중 성매매피해자 지원, 성평등, 여성조동, 여성기업, 여성의 문화공간, 여성친화도시,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이 여성과 관련된 이슈에 관한 조례가 많았다. 또한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여성의 키워드 빈도를 분석해 보았을 때 도움 30건, 임신부 27건, 여성 21건, 가정폭력 17건, 교육 17건 등 다양한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표 2-19>를 통해서도 여전히 여성은 폭력이나 일자리 등에서 사회적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9〉 수원시에서 제안된 여성과 관련된 욕구(질적조사)

구분	욕구
일자리	여성의 일자리 및 폭력 등과 관련된 실태파악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형 일자리 정책 마련
	일자리와 관련된 인프라 부족
	여성일자리에 대한 개념변화의 필요성
안전	여성의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디지털 성(性) 안전과 관련된 정책 필요
건강	심리적 지원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5) 노숙인

노숙인은 주로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포괄적으로는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관계법령에서는 노숙인을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03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 4항에 의거하여,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가 명시되었고, 보건복지부령 제 307조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이 공포되었다. 일반적으로 노숙인 문제의 발생원인을 사회구조적 관점과 개인의 관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컨대 사회구조적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와 사업구조에 따른 양극화, 고용의 불안정성 등으로 노숙자가 발생하였다고 여기며, 노숙자들의 범죄, 폭력, 비위생, 공공시설의 무단점유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공공시설의 이들의 자립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의 관점은 개인이 노숙인이 된 과정이나 경로를 중시하며 개인의 알코올 의존증, 비행, 사회적 관계망 붕괴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개인의 교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 4조 제2호에 의거하여,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이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3호에 의거하여,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이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4호에 의거하여,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의 대상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아동을 (외)조부 및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외국인 한부모 가정도 한부모 가정에 포함되는데, 2018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는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정희 외, 2018). 이처럼 한부모 가족은 빈곤율과 공공부조 의존율이 높는데 돌봄 정책(일생활균형지원, 한부모 보육 서비스 등)이 부족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고(강지원, 2009), 특히 학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한부모여성 가구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장수정, 2020).

수원시정연구원 현안 TF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의 한부모가족은 총 2,671세대, 6,605명으로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지원,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심리·정서지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한부모가족 정책은 양육·교육·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부재하다(조한라, 2022). 즉,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이나 수원시 한부모가족 자체사업을 활성화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7) 1인가구

통계청은 2005년부터 1인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각종 통계조사에서도 통용되기 시작했다(이준우, 장민선, 2014). 통계청 통계표준용어에 따르면, 1인가구는 ‘혈연가구’, ‘5인 이하 비혈연가구’와 함께 ‘일반가구’로 분류되며,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보호 또는 지원의 대상으로서 1인가구를 정의할 때에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따로 주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이준우, 장민선, 2014).

1인가구의 개념은 2018년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법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하였다(김혜정, 2021).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는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1인가구에 대한 법적 정의를 추가하였다(장임숙, 2020). 신설된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호의 2에서는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따르면 수원시의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28.1%이고 남자 1인가구가 여자 1인가구보다 11.4% 많았다. 1인 가구의 연령대를 보면 2017년에는 30대가 2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대, 6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연령

대에 따른 특성과 문제 상황,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와 관련된 욕구조사 결과(〈표 2-20〉 참조), 정신건강영역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신체건강은 신체적 질환과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와 관련된 욕구가 모두 수원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1인가구는 정신·신체와 관련하여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유지와 고용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인가구도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똑같은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연령대에 따라 욕구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른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수원시는 1인가구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1인가구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원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 2-20〉 수원시 1인가구 관련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양적조사)

(단위: 점)

구분		수원시 평균	1인가구 평균	
정신 건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26.5	29.2	
	중증정신질환을 위한 지원·서비스	19.9	18.9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9.6	17.9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7.5	18.1	
	트라우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18.9	17.8	
신체 건강	신체적 질환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	28.2	33.2	
	일상적인 신체건강 관리 관련 지원·서비스	28.4	32.2	
기초 생활 유지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생계비 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28.4	37.4
		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을 위한 지원·서비스	25.6	33.8
		의료비 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29.1	35.2
		교육비 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23.1	17.9
		냉난방비 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23.5	28.5
	가계 재정 관리를 위한 지원·서비스	23.5	25.4	
보호· 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 관련 지원·서비스	22.0	20.5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관련 지원·서비스	23.4	22.1	
고용	원하는 일자리관련 지원·서비스	40.2	45.9	
	취업·창업정보관련 지원·서비스	36.4	39.3	
	(재)취업준비 비용관련 지원·서비스	30.9	29.7	
	창업자금관련 지원·서비스	29.6	30.8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지원·서비스	37.9	43.6	

자료: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2. 급여유형 및 전달체계

1) 급여유형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소비하는 클라이언트의 복지 필요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하여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관계된 것으로 정책의 최종산물(product)이 되기 때문에(이수천, 손연숙, 2011)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에 따라 급여의 내용과 형태의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이선우, 김두례, 2011).

급여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장·단점과 효과성,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대상자까지 고려하여 급여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의 형태는 현금, 현물 급여 외의 서비스와 바우처, 기회 및 권력부여와 관련된 급여형태도 존재한다. 이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대안적 형태로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차원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남찬섭·유태균 역, 2006). Gilbert와 Terrell(2002)은 사회급여의 형태를 기회, 서비스, 재화, 상품권, 상환권, 세금감면, 현금, 권력 등 여섯개로 분류하였지만(원석조, 2006), 본 연구에서는 Gilbert와 Terrell의 급여유형을 바탕으로 하되 현재 사회복지정책이 제공되는 급여유형으로 추가 분류한 김승연(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6개의 형태(현금, 현물, 바우처, 권력, 기회, 시설 및 단체지원)로 분류하였다.

(1) 현금

현금급여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사회복지급여의 한가지로, 클라이언트에게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연금, 산재보험이 장애수당,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아동수당이 해당한다(윤찬영, 2010; 김기원, 2000). 현금급여의 경우 관리 운영비용이 적게 들며 사용하기 편하고, 소비자 개인의 선택범위가 넓고 교환가치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급여를 지급할 경우 클라이언트가 유동성이 좋은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입안자의 목적에 따라 현금을 사용하는지는 보장하기 어렵고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점이 나타난다(윤찬영, 2010; 김기원,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제공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을 현금급여로 정의하였다.

(2) 현물(goods)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정책을 목표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클라이언트에게 현물을 제공하는 급여로 주택이나 음식 상품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윤찬영, 2010; 김기원, 2000). 현물급여는 사회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 특정한 목표에 맞추려는 정책적 의도에 따라 제공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량생산과 분배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현물을 지급함으로써 용도 외의 사용을 막아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원석조, 2006).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전통적인 급여형태로 사회복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할 것인가 현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으며(〈표 2-21〉 참조), 클라이언트에게 현금급여 또는 현물급여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수혜자의 선택권 혹은 전달체계상의 비용 효과성 등에 따라 급여형태를 선택하여 제공하게 된다(남찬섭, 유태균 역,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보조기기(보장구), 물품(난방용품, 유제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현물급여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표 2-2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비교

구분	현금급여	현물급여
내용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
장점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 소비자의 선택을 중시, 관리비용 절감	대량생산과 분배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용도와 사용을 막아 목표달성에 효과적
단점	목적(용도)외 사용 가능, 사회보장정책 달성의 어려움	선택의 자유 제한, 관리비용이 많이 듦
예시	아동수당, 장애수당,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	주택, 음식, 상품권,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등

자료: 남찬섭, 유태균 역 「사회복지정책론-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2006, 나눔의집

(3) 바우처(vouchers)

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증권으로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급여로서 그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일정한 구매력을 제공해주는 보조금이다(정광호, 2007). 바우처는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선우, 김두레, 2011). 이에 바우처는 재화와 서비스 선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며, 교환가치만 있는 급여로 계획된 부분 안에서만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어 사회적 통제기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활동보조제도 등을 바우처로 구분하였다.

(4) 서비스(services)

서비스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제공되는 제반 활동으로 대상자의 속성 변화를 의도하여 특정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업알선, 학습지도,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훈련 등과 같이 문제를 가진 집단에게 대면 관계를 통해서 무형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김영종 외, 2008). 서비스는 수혜자에게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 없으며, 서비스 급여는 복지 대상자의 자립과 자아를 기능하는 급여로서 심리적 사회적 속성을 드러내는 급여유형이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서비스와 정책(또는 사업을)을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서비스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도 포함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5) 기회(opportunities)

기회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유인과 제재를 말하며 사회복지정책에서 기회는 직접적인 사회적 급여의 형태와 비교하여 가장 추상적인 형태이다(김동기, 2006). 기회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어촌특별전형,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처럼 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복지대상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회로 정의하였다.

(6) 권력(powers)

권력이란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원석조, 2006). 권력을 통해 사용자는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유지하고자하는 사용자에게나 소비자 주권과 같은 논리에서 복지사용자의 권익을 강조하면서 결국 의존성을 탈피하게 하고 개인적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Lupton & Nixon, 1999), 국가가 실제로 권력급여를 실행하는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푸코는 권력은 단순히 지배와 억압의 수단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구상하고 대상들을 생산하며 주체에 관한 지식을 산출한다고 보았다(이혁구,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정책결정, 계획, 자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와 책임을 공유하는 과정을 권력으로 정의하였다.

2) 전달체계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조직과 인력들의 연결 체계를 의미하며(김영중, 2017, 2018; 민소영, 2022에서 재인용), 서비스의 공급자와 공급자간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이다(최성재·남기민, 2006: 86; 민소영, 2022에서 재인용). 전달체계는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필요한 이용자에서 배분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는 설계방식에 따라 다르게 작동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공급자 측면에서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제공의 공공성을 강조하거나 민간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는 어느 측면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르게 설계·운영되며 전달체계의 모습이 달라진다.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복지전달체계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의 지방행정조직에서 행정업무와 서비스 전달의 일선업무를 담당한다(최지민, 강영주, 2020). 중앙정부는 재정계획 수립, 서비스 개발 및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도는 서비스 수요 및 공급 자원관리, 전문 인력 양성,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한다.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을 결정한 보조사업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초기상담부터 욕구파악,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자체복지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전달체계의 구조를 감안하여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결정하여 기초지자체에게 실질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보조사업’,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시행하고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제2절 특례시의 사회복지정책

1. 특례시의 개념

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특례시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래 「지방자치법」 제2조(정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구분한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의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인구의 대도시 및 신도시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지방행정체제를 도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행정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사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도시 특례시와 같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김남욱, 2019).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 198조에 의거하여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다. 특례시란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자적인 새로운 유형으로 인구가 100만 이상의 지자체이거나 인구가 50만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가 있는 경우 중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하여 재정, 조직, 행정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아 특례시라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받은 도시를 의미한다(김남욱, 2019). 즉,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는 자치권한을 크게 부여받아 광역시급의 위상에 걸맞게 지방자치법과 개별법에서 정한 자치권을 보장받는 도시를 말하며, 기초지방단체에 속하는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한 유형이다(김남욱, 2019).

그러나 구체적으로 특례시와 관련된 명칭만 부여받고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박상우, 2022). 이에 2022년 1월 13일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는 특례시로 출범하면서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사무·조직·재정·운영특례와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과정에서 제안된 특례이양 사무의 76%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와의 갈등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경기도의회,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사회복지분야의 특례사무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지역자활센터 지정 및 취소,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사무 등으로 주로 각종 센터 및 연구원, 법인 등의 설치 및 취소와 관련된 사무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4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요구한 사무는 장애인 연금 및 수당지원 시 주거용 재산한도액 구간 변경, 사회복지 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및 기능 확대 등으로 행정안전부와는 차이

가 있다(경기도의회, 2022). 이는 아직까지 특례시에 대한 사무로 규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특례시로서 충분한 사무권한을 얻기엔 아직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표 2-22〉 행정안전부 및 4개 특례시 제안 특례사무

구분	특례사무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지역자활센터 지정 및 취소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시행 • 병원 등의 개설에 관한 사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사무 •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
4개 특례시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및 기능 확대 • 장애인 연금 및 수당지원 시 주거용 재사한도액 구간 변경 • 아이돌봄서비스 거점기관 및 서비스 제공 기관 추가 설치 • 기초 주거급여 지원 등

자료: 경기도의회(2022).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특례시 사무배분 방안 및 경기도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

2. 특례시 사회복지정책의 기능³⁾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자주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地方分權)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실질적이고도 진정한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김기표, 2003),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제도는 근본적으로 정부 간 관계에서 타협된 제도 속에서 보장받은 자율성이다(남찬섭, 2016).

기초지자체는 국가의 천편일률적인 위임사업도 담당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자체사업도 시행한다. 이와 같은 기초지자체의 이중적 지위는 정부 간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 간 관계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공적전달체계를 통하여 전달되는데 앞선 문제제기처럼 특례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는 상위정부(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전달하는 대리인의 역할만 점차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특례시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관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3) 특례시의 사무나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 행정학전공자 위주로 논의되다 보니 아직까지 사회복지의 사무와 연결된 역할 등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정부 간 관계에서 논의가 다양하지 않아 특례시로서의 기능을 논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본래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는 정부관계들 간에 설정된 법·재정·행정 등의 관계에서 권력 및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한다(김천영, 2001). 예컨대 정부 간 관계 이론에서 대표적인 Dale & Wright(1988)는 내포모형(inclusive-authority model), 협력모형(coordinate-authority model), 중첩모형(overlapping-authority model)으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박해육, 2013), Elock(1994)은 대리인 모형, 동반자 모형, 교환 모형, 우리나라와 유사한 행정체제인 일본의 무라마츠 미치오(村松岐夫)(1988)는 수직적 행정통제 모형, 수평적 정치경쟁 모형, 상호의존 모형으로 구분하였다(박정민, 2008; 박해육, 2013에서 재인용). 이처럼 해당나라의 특수성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많은 학자들은 초기의 정부 간 관계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종속된 수직적 관계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해야 하며, 정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재정관계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선희, 2008; 박정민, 2008; 손희준, 2008; 이창균, 2010; 이현정, 2019).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관계는 중앙집권적이다. 예컨대 스웨덴은 지방제 조례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나(김승연, 2019) 우리나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목과 조세 비율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세입구조 속에서 기초지자체가 세입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으로 한정되는데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감소하고 있어 세입자율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간 관계에서 상위정부인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을 결정한 복지정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자체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정부 간 관계에서 가장 하위구조에 있는 기초지자체(특례시 포함)는 재정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기초지자체가 상위정부에게 의존적인 재정관계 속에서 기초지자체는 상위정부가 시행을 결정하고 계획한 복지정책을 지역주민들(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상위정부가 계획한 지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책과 관련된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고,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자격 기준을 심사·결정하여 적격 가능한 신청자에게 급여(또는 수당)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위임사업의 전달체계에서 기초지자체는 자율성이 없는 대리인의 역할로 제한되어 있다. 즉, 지방분권을 계속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서도 상위정부의 보조금 비중은 높아지는데 반해 지방세수입과 정책에 따른 자율성은 낮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저(低)역량-고(高)감독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다(김승연, 장동열, 2017; 남찬섭, 2016).

사회복지에서의 지방분권의 의미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잘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

간 관계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입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보조사업의 재정분담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과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특례시)에서는 역량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잘 반응하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백종만, 2005).

수원시는 2022년 1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은 특례시로 출범하였다. 그럼 기초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첩된 역할 속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즉, 특례시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기초지자체와 어떠한 차별점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례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 간, 그리고 특례시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우선적으로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정의하면서 특례시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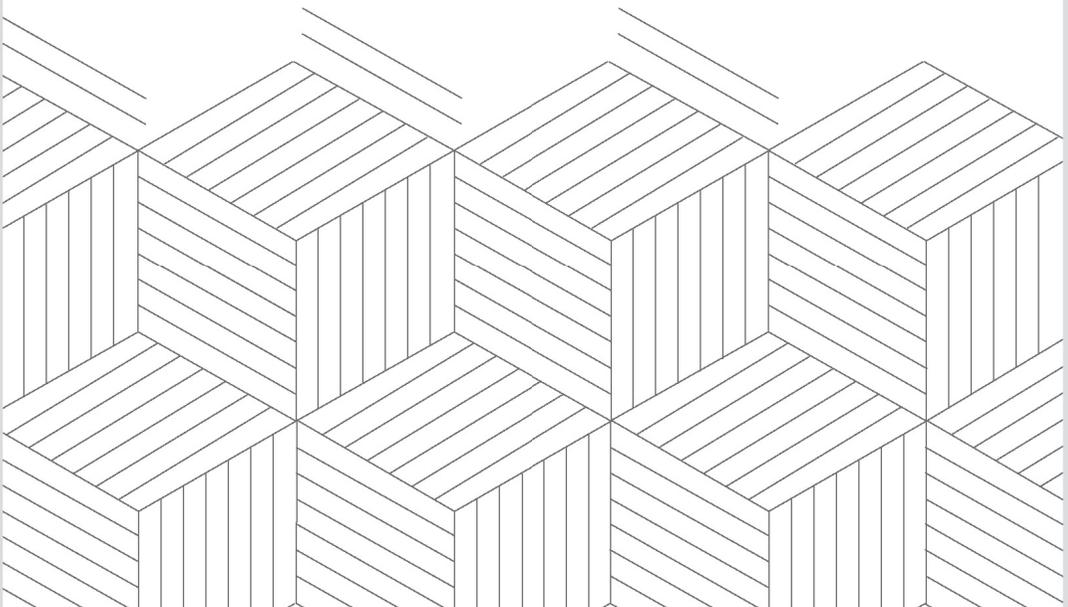
정부 간 관계에서 정부간 역할은 “국민(또는 시민)이 직면한 사회적위험(social risk)을 누가 어떻게 대응(response)”할 것인가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선화, 2021). 이 관점에 따라 정부간 역할을 정의하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국가의 역할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과 같은 전국적이며 보편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구인회 외, 2009; 지은구, 2013; 최성은, 2010, 최창수 외 2014; 홍근석, 김봉균, 2019). 그리고 광역지자체는 광역정부가 기초정부를 견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오민수 외, 2016), 기초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서비스(홍근석, 김봉균, 2019)나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지원과 관련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민효상, 박예은, 2018). 즉, 중앙정부는 사회보험과 같이 보편적·전국적인 사업이나 공공부조제도와 같은 선별적·전국적인 기능을 담당하되 재정까지 모두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돌봄서비스와 같이 선별적이며 지역적인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고 한다(김승연, 2019). 즉, 기초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서비스는 사회서비스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기초지자체의 고유사무를 사회서비스 공급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승연, 2019; 김이배, 2022). 결과적으로 기초지자체가 특례시로 전환되었을 때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은 정부간 관계에서 합의되지 않았지만 중앙정부는 보편적·전국적, 선별적·전국적인 사업을 담당해야 하고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와 동일하게 사회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간 관계에서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경기도)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첩된 역할이자 협력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례시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되 광역정부와 기초지자체의 사이에서 조절하고, 기초지자체의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3장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수원시의 여건 분석

제1절 인구
제2절 전달체계
제3절 예산



제3장 사회복지정책 관련된 수원시의 여건 분석

제1절 인구

1.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

생애주기는 구분 목적에 따라 발달단계나 수를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령에 의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생애주기를 영·유아기(만0세~만5세), 아동·청소년기(만6세~만18세), 청년기(만19세~만34세), 중·장년기(만35세~만65세), 노년기(만65세 이상)와 같이 5단계로 분류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자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가 100만 이상이면서 수원시와 같이 특례시로 출범한 고양시와 용인시를 함께 분석하였다.

1) 총 인구

수원시의 인구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지만 2017년 1,202,628명, 2019년 1,194,465명, 2020년 1,186,078명으로 5년동안 -1.6%p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고양시는 2017년 1,041,983명, 2019년 1,066,351명, 2021년 1,079,353명으로 3.6%p 증가하였고, 용인시도 1,004,081명(2017년)에서 1,077,508명(2021년)으로 7.3%p 증가하여 수원시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1〉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⁴)
수원시	1,202,628	1,201,166	1,194,465	1,186,078	1,183,714	-1.6
고양시	1,041,983	1,044,189	1,066,351	1,079,216	1,079,353	3.6
용인시	1,004,081	1,035,126	1,059,609	1,074,176	1,077,508	7.3

주: 매년 연말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 영·유아(만5세 이하)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영유아 인구를 만 5세 이하로 규정하여 살펴보면, 수원시의 영유아 인구는 2017년 67,584명, 2019년 57,817명, 2021년 47,257명으로 5년동안 20,327명이 감소하였다. 고양시와 용인시도 동일하게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증감률은 수원시(-30.1%p)가 고양시(-19.9%p)와 용인시(-21.3%p) 순으로 나타나 고양시와 용인시보다 수원시 영유아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영유아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67,584 (5.6)	62,451 (5.2)	57,817 (4.8)	52,228 (4.4)	47,257 (4.0)	-30.1
고양시	50,219 (4.8)	46,704 (4.5)	45,936 (4.3)	43,755 (4.1)	40,237 (3.7)	-19.9
용인시	59,970 (6.0)	58,221 (5.6)	56,222 (5.3)	52,454 (4.9)	47,220 (4.4)	-21.3

주: 매년 연말 기준이며, 비율(괄호)은 인구대비 영유아(만 5세 이하)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3) 아동·청소년(만6세 이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에 의거한 청소년의 연령은 만 19세 미만을 정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이하를 영유아로 구분하였기에 만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를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10.2%p 감소하여 고양시(-8.9%p)와 용인시(-1.7%p)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표 3-3〉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아동·청소년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163,512 (13.3)	159,969 (13.3)	153,970 (12.9)	149,199 (12.6)	146,822 (12.4)	-10.2
고양시	141,578 (13.6)	137,490 (13.2)	133,509 (12.5)	131,069 (12.1)	129,005 (12.0)	-8.9
용인시	158,667 (15.8)	160,024 (15.5)	157,551 (14.9)	156,422 (14.6)	155,992 (14.5)	-1.7

주: 매년 연말기준이며, 비율(괄호)은 인구대비 아동·청소년(만6세 이상~만18세 이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4) 증감률은 (b-a)/a로 동일함

4) 청년(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2021년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수원시 청년인구는 285,508명으로 수원시가 가장 많지만 수원시의 청년인구는 영유아(-30.0%p)와 아동 인구(-10.2%p)와 동일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고양시와 용인시의 청년인구는 각각 1.4%p와 9.3%p 증가하고 있어 수원시 인구만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4〉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청년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292,553 (24.3)	289,918 (24.1)	288,446 (24.1)	285,379 (24.1)	285,508 (24.1)	-2.4
고양시	223,726 (21.5)	221,794 (21.2)	228,288 (21.4)	229,487 (21.3)	226,936 (21.0)	1.4
용인시	194,481 (19.4)	200,048 (19.3)	208,319 (19.7)	212,496 (19.8)	212,508 (19.7)	9.3

주: 매년 연말기준이며, 비율(괄호)은 인구대비 청년(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5) 중·장년(만35세 이상 ~ 만64세 이하)

중·장년(만35세 ~ 만 64세 이하) 인구는 인구집단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를 제외한 용인시와 고양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수원시의 경우 중장년인구는 5년동안 3,260명이 감소하였지만, 총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였기에 총 인구대비 중·장년층 인구비율은 47.2%에서 47.7%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고양시와 용인시는 5년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중·장년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567,312 (47.2)	571,572 (47.6)	570,585 (47.8)	567,336 (47.8)	565,052 (47.7)	-0.4
고양시	506,127 (48.6)	511,629 (49.0)	523,346 (49.1)	529,195 (49.0)	529,041 (49.0)	4.5
용인시	474,081 (47.2)	491,767 (47.5)	503,700 (47.5)	509,708 (47.5)	511,525 (47.5)	7.9

주: 매년 연말기준이며, 비율(괄호)은 인구대비 중·장년(만35세 이상~만64세 이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6) 노인(만65세 이상)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한다. 이에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의 노인인구 집단을 구분하면, 3개의 지자체 모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시의 노인인구는 111,667명(2017년)에서 139,075명(2021년)으로 24.5%p 증가하였고, 고양시 28.1%p, 용인시 28.6%p가 증가하였다.

〈표 3-6〉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노인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111,667 (9.3)	117,256 (9.8)	123,647 (10.4)	131,936 (11.1)	139,075 (11.7)	24.5
고양시	120,333 (11.5)	126,572 (12.1)	135,272 (12.7)	145,710 (13.5)	154,134 (14.3)	28.1
용인시	116,882 (11.6)	125,066 (12.1)	133,817 (12.6)	143,096 (13.3)	150,263 (13.9)	28.6

주: 매년 연말기준이며, 비율(괄호)은 인구대비 노인(만 65세 이상) 비율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구집단을 세분화하여 연소노인(만 65세 이상~만 74세 이하), 중·고령노인(만 75세 이상~만 84세 이하), 초고령노인(만 8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표 3-7〉 참조). 그 결과, 3개 지자체 모두 현재는 노인인구 집단에서도 연소노인이 가장 많은 인구비중을 차지하지만, 증가률은 초고령 노인인구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노인집단별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연도	노인집단			
		계	연소노인 (만65~74세)	중고령노인 (만75~84세)	초고령노인 (만85세 이상)
수원시	2017년(a)	111,667	65,123	36,499	10,045
	2018년	117,256	68,141	38,352	10,763
	2019년	123,647	72,306	39,652	11,689
	2020년	131,936	78,470	40,674	12,792
	2021년(b)	139,075	83,640	41,939	13,496
	증감률(b-a)	24.5	28.4	14.9	34.4

구분	노인집단				
	계	연소노인 (만65~74세)	중고령노인 (만75~84세)	초고령노인 (만85세 이상)	
고양시	2017년(c)	120,333	63,817	44,774	11,742
	2018년	126,572	66,538	47,089	12,945
	2019년	135,272	71,633	49,010	14,629
	2020년	145,710	79,108	50,214	16,388
	2021년(d)	154,134	84,866	51,358	17,910
	증감률(c-d)	28.1	33.0	14.7	52.5
용인시	2017년(e)	116,882	68,150	38,889	9,843
	2018년	125,066	72,337	41,952	10,777
	2019년	133,817	76,934	44,793	12,090
	2020년	143,096	82,276	47,241	13,579
	2021년(f)	150,263	85,475	49,940	14,848
	증감률(e-f)	28.6	25.4	28.4	50.8

주: 매년 연말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 비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

생애주기로 구분할 수 없는 대상자는 비생애주기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생애주기의 대상자는 저소득, 등록장애인, 등록외국인, 여성, 노숙인, 한부모, 1인가구로 구분하였다.

1) 저소득

저소득층의 대상 집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거하여 복지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50%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으로 증가률을 살펴보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모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표 3-8〉 참조). 수원시는 2021년 26,820명으로 2017년 대비 47.9%p 증가하였고, 고양시는 2021년 33,249명으로 2017년 대비 61.1%p 증가하였다. 용인시는 2021년 17,394명으로 2017년 대비 9,500명이 증가하여 5년동안 120.3%p 증가하였다.

〈표 3-8〉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18,128 (1.5)	20,478 (1.7)	22,019 (1.8)	24,318 (2.1)	26,820 (2.3)	47.9
고양시	20,638 (2.0)	23,335 (2.2)	25,694 (2.4)	29,967 (2.8)	33,249 (3.1)	61.1
용인시	7,894 (0.8)	10,557 (1.0)	12,907 (1.2)	15,621 (1.5)	17,394 (1.6)	120.3

주 1: 중복을 제외한 수치이자 연말기준이며, 비율은 인구대비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구(중복제거)

수원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2017년 17,333명, 2018년 19,665명, 2019년 21,169명, 2020년 23,476명, 2021년 25,919명으로 5년동안 49.5%p 증가하였지만 매년 수급자보다 인구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와 동일하게 용인시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고양시, 수원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차상위계층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17,333 (1.4)	19,665 (1.6)	21,169 (1.8)	23,476 (2.0)	25,919 (2.2)	49.5
고양시	19,412 (1.9)	22,040 (2.1)	24,300 (2.3)	28,491 (2.6)	31,718 (2.9)	63.4
용인시	7,170 (0.7)	9,795 (0.9)	12,114 (1.1)	14,795 (1.4)	16,480 (1.5)	129.8

주 1: 매년 연말 사회보장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 한부모자격을 보유한 대상자 (중복허용한 데이터임)를 의미함

2: 비율(괄호)은 전체인구 차상위계층 인구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복지포 홈페이지, 차상위계층 현황

2) 등록장애인

(1) 등록장애인

2021년 기준, 수원시의 등록장애인은 43,501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등록장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41,908명에서 2018년 42,393명, 2020년 43,065명, 2021년 43,501명으로 3.8%p 증가하였다. 그리고 고양시와 용인시의 등록장애인도 수원시와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률이 수원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0〉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등록장애인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41,908 (3.5)	42,393 (3.5)	42,894 (3.6)	43,065 (3.6)	43,501 (3.7)	3.8
고양시	38,919 (3.7)	39,758 (3.8)	40,957 (3.8)	41,878 (3.9)	42,247 (3.9)	8.6
용인시	33,071 (3.3)	34,438 (3.3)	35,668 (3.4)	36,491 (3.4)	36,993 (3.4)	11.9

주: 연말자료기준이며, 비율(괄호)은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

(2) 고령장애인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았으나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⁵⁾은 고양시가 21,038명(49.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수원시(19,628명), 용인시(18,55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록장애인 대비 비율은 수원시(45.0%)가 용인시(50.1%)보다 더 많고 3개 지자체 모두 5년동안 최소 20% 이상 증가하여 향후에도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11〉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고령장애인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16,222 (38.7)	17,053 (40.2)	18,102 (42.2)	18,820 (43.7)	19,628 (45.1)	21.0
고양시	17,129 (44.0)	17,965 (45.2)	19,065 (46.5)	20,228 (48.3)	21,038 (49.8)	22.8
용인시	14,607 (44.2)	15,665 (45.5)	16,885 (47.3)	17,885 (49.0)	18,550 (50.1)	27.0

주: 연말자료기준이며, 비율(괄호)은 장애인인구대비 고령장애인(만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각 년도 장애인 등록 현황

3) 등록외국인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수원시의 등록외국인은 37,852명(2017년)에서 32,251명(2021년)으로

5)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령기준은 학자마다 상이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65세로 구분함

-12.2%p 감소하였지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그리고 고양시나 용인시도 동일하지만 그 감소율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2〉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등록외국인 인구 비중(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37,852 (3.1)	41,046 (3.4)	40,557 (3.4)	35,835 (3.0)	33,251 (2.8)	-12.2
고양시	12,253 (1.2)	12,664 (1.2)	12,508 (1.2)	11,522 (1.1)	10,986 (1.0)	-10.3
용인시	16,926 (1.7)	18,396 (1.8)	18,982 (1.8)	16,731 (1.6)	16,157 (1.5)	-4.5

주: 연말자료기준이며, 비율(괄호)은 전체인구대비 등록외국인 인구 비율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4) 여성

여성인구를 살펴보면, 수원시의 여성인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하여 5년 동안 총 -9,012명이 감소하여 -1.5%p 감소하지만 고양시와 용인시는 수원시와 다르게 각각 3.9%p, 7.5%p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절대적인 인구 수는 수원시가 587,781명으로 고양시(551,259명)와 용인시(543,049명) 보다 많은 수준이다.

〈표 3-13〉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여성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596,793 (49.6)	596,248 (49.6)	593,055 (49.7)	589,002 (49.7)	587,781 (49.7)	-1.5
고양시	530,419 (50.9)	531,830 (50.9)	543,602 (51.0)	550,736 (51.0)	551,259 (51.1)	3.9
용인시	505,158 (50.3)	520,999 (50.3)	533,663 (50.4)	541,329 (50.4)	543,049 (50.4)	7.5

주: 수치는 연말기준이며, 비율(괄호)은 전체인구대비 여성 인구 비율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5) 한부모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는 한부모 인구는 고양시가 6,853명으로 가장 많고 인구 대비 비율도 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참조). 그러나 수원시와 고양시는 5년 동안 각각 -15.8%, -7.0% 감소한데 반해 용인시는 3,388명(2017년)에서 3,724명(2021년)으로 9.9%p 증가하였다.

<표 3-14>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한부모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7,081 (0.6)	7,005 (0.6)	6,604 (0.6)	6,291 (0.5)	5,961 (0.5)	-15.8
고양시	7,368 (0.7)	7,247 (0.7)	6,927 (0.6)	6,994 (0.6)	6,853 (0.6)	-7.0
용인시	3,388 (0.3)	3,627 (0.4)	3,688 (0.3)	3,696 (0.3)	3,724 (0.3)	9.9

주: 수치는 연말기준이며, 한부모가족지원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비율(괄호)은 전체인구대비 한부모인 인구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복지통계, 한부모가족 유형별 가구 수, 수급자 수

6) 1인가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인가구의 비율은 매년 수원시가 고양시나 용인시보다는 많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수원시가 33.3%를 차지하여 용인시와 고양시와는 6.5%, 8.7%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원시가 가장 많지만 5년동안 수원시는 18.5% 증가한데 반해 고양시와 용인시는 최소 20.0%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3개 지자체 모두 매년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1인가구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15>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1인 가구 비율(2017년~2021년)

(단위: %)

구분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28.1	28.8	30.0	31.4	33.3	18.5
고양시	22.2	22.9	24.1	25.2	26.8	20.7
용인시	20.4	21.2	22.1	23.3	24.6	20.6

주: 연말기준자료이며, 1인가구 비율=1인가구÷일반가구×100

자료: e지방지표

7)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는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지만 수원시의 보훈대상자는 매년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인구대비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수원시의 보훈대상자는 15,055명으로 -2.8%p 감소하였지만 고양시와 용인시는 수원시보다 보훈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5년전에 비해 각각 14.5%p와 25.5%p 증가하였다.

〈표 3-16〉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의 보훈대상자 인구(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수원시	15,483 (1.3)	15,322 (1.3)	15,242 (1.3)	17,593 (1.5)	15,055 (1.3)	-2.8
고양시	14,771 (1.4)	14,555 (1.4)	14,734 (1.4)	14,817 (1.4)	16,913 (1.6)	14.5
용인시	14,028 (1.4)	17,029 (1.6)	17,321 (1.6)	17,635 (1.6)	17,612 (1.6)	25.5

주: 연말기준자료이며, 비율(괄호)은 전체인구 대비 보훈대상자 인구 비율을 의미함

자료 1: 경기도, 경기도 기본통계,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보훈처 내부자료(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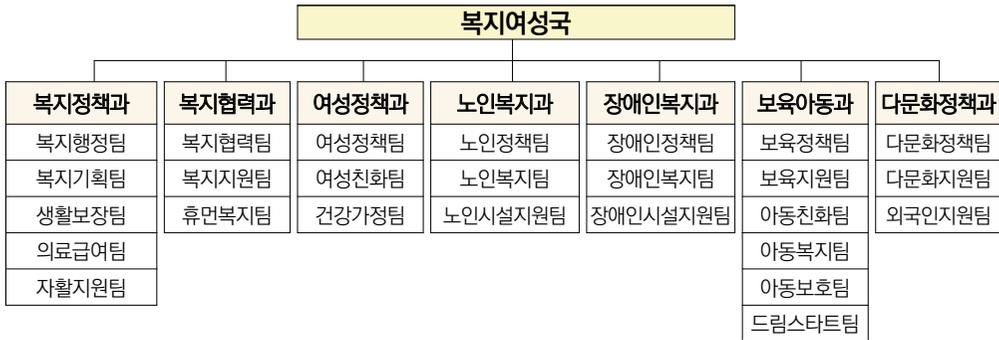
제2절 전달체계

1. 시(市)

1) 수원시

수원시의 전달체계는 크게 시-구-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수원시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복지여성국이다(〈그림 3-1〉, 〈표 3-17〉 참조). 복지여성국은 주로 해당부서가 장애인인 장애인복지과, 영유아는 보육아동과, 이주민은 다문화정책과와 같이 주로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현재 복지여성국에는 7개의 부서, 2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대상적 전달체계로 인하여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는 복지대상자는 부서간 핑퐁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조직적인 한계가 있다.

〈그림 3-1〉 수원시 복지여성국 조직도



자료: 수원시청 홈페이지

〈표 3-17〉 수원시 복지여성국 부서별 인력 현황

(단위: 명)

국	부서	팀	팀장(부팀장)	주무관
	계		26(3)	156(3)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1(1)	6
		복지기획팀	1	2
		생활보장팀	1	3
		의료급여팀	1	9
		자활지원팀	1	4
	복지협력과	복지협력팀	1(1)	5
		복지지원팀	1	2
		휴먼복지팀	1	7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1	4
		여성친화팀	1	3(1) (성평등전문관 1명)
		건강가정팀	1	5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1	3
		노인복지팀	1	5
		노인시설팀	1	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1	3
		장애인복지팀	1(1)	5(2) (직무지도원 2명)
		장애인시설팀	1	5
	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	1	4
		보육지원팀	1	5
		아동친화팀	1	2
		아동복지팀	1	36
		아동보호팀	1	9
		드림스타트팀	1	16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	1	3	
	다문화지원팀	1	4	
	외국인지원팀	1	3	

주: 2022년 9월 23일 기준임

자료: 수원시청 홈페이지

2) 용인시

수원시의 시청 공적전달체계는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용인시의 경우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와 같이 5개의 부서,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원시와 다르게 노인복지과의 장묘문화팀, 여성가족과의 출산지원팀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원시와 동일하게 명칭은 복지여성국이고, 대상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용인시의 경우, 5개 과 22개 팀에 총 119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수원시보다는 적은 규모였다. 그 중 아동보육과의 아동보호팀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의 나눔복지팀이 14명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여성가족과의 출산지원팀과 다문화지원팀, 노인복지과의 노인시설팀은 팀장을 제외한 주무관 2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3-18〉 용인시 복지여성국 부서별 인력 현황

(단위: 명)

국	부서	팀	팀장(부팀장)	주무관
계			22	119(3)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1	5
		보훈복지팀	1	3
		생활보장팀	1	7
		나눔복지팀	1	14(실무관2명 포함)
		자활지원팀	1	5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1	4
		노인돌봄팀	1	3
		노인시설팀	1	2
		장묘문화팀	1	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1	4
		장애인지원팀	1	5
		장애인시설팀	1	4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1	6(양성평등관 1명 포함)
		출산지원팀	1	2
		건강가정팀	1	3
		다문화지원팀	1	2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1	6
아동보호팀		1	15	
보육정책팀		1	6	
보육지원팀		1	5	
드림스타트팀		1	9	
아동돌봄팀		1	6	

자료: 용인시청 홈페이지

3) 고양시

고양시도 수원시와 용인시와 동일하게 시청에서 공적 복지전달체계는 복지여성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주로 대상별로 구분되어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등으로 7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시와 다른 특징은 여성가족과의 여성인력개발팀, 여성회관 운영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에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약 120여명의 주무관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의료급여 관리원, 사례관리사, 자립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다른 지자체와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표 3-19〉 고양시 복지여성국 부서별 인력 현황

(단위: 명)

국	부서	팀	팀장(부팀장)	주무관
계			28(18)	119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1	7(공무직 1명 포함)
		보훈지원	1(1)	1
		생활보장팀	1	9(의료급여관리원 7명 포함)
		복지시설팀	1(2)	2
	찾아가는복지과	찾아가는복지팀	1	4(사례관리사 1명 포함)
		희망복지정책팀	1(1)	2
		자립지원팀	1	7(자립상담사 1명 포함)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1(1)	3(전문위원 1명 포함)
		출산지원팀	1	3
		여성인력개발팀	1	6
		다문화지원팀	1(1)	2
	노인복지과	여성회관운영팀	1(1)	5
		노인정책팀	1(1)	3
		노인지원팀	1(1)	2
		노인시설팀	1	3
		노인요양팀	1	3
	장애인복지과	장묘문화팀	1(1)	1
		장애인정책팀	1	5
		장애인지원팀	1	4
		장애인시설팀	1	3
	아동청소년과	발달 및 장애인가족센터	1(1)	6
		아동정책팀	2(2)	4
		아동보호팀	1	14(사례관리사 1명포함)
드림스타트팀		1	2(주무관), 1(공무직) 11(사례관리사)	
보육정책팀		1(1)	2	
보육지원팀		1(2)	3	
	청소년팀	1(2)	2	

자료: 고양시청 홈페이지

2. 구(區)⁶⁾

수원시 4개 구(區)에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가 있는데 그 중 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를 지급하거나 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통합조사관리팀은 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같은 현금성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신규신청자와 관련된 통합조사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애인팀에서는 경로당 보조금 지급·정산하거나 장애인복지급여를 지급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로 제한되어 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팀, 보육지원팀, 보육지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복지팀은 다자녀 및 출산입양지원금 지원 관리,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보육지원팀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인가 및 지원 보조금 정산관리,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등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보육지도팀은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표 3-20〉 수원시 4개 구 사회복지업무 관련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사회복지팀		통합조사관리1팀		통합조사관리2팀		노인장애인팀	
		팀장	주무관	팀장	주무관	팀장	주무관	팀장	주무관
사회복지과	장안구	1	3	1	7	1	6	1	5
	권선구	1	3	1	6	1	7	1	6
	팔달구	1	4	1	6	1	7	1	5
	영통구	1	3	1	5	1	4	1	6
구분		가정복지팀		보육지원팀		보육지도팀			
		팀장	주무관	팀장	주무관	팀장	주무관		
가정복지과	장안구	1	3	1	4	1	2		
	권선구	1	3	1	5	1	4		
	팔달구	1	2	1	3	1	2		
	영통구	1	3	1	5	1	4		

주: 2022년 9월 23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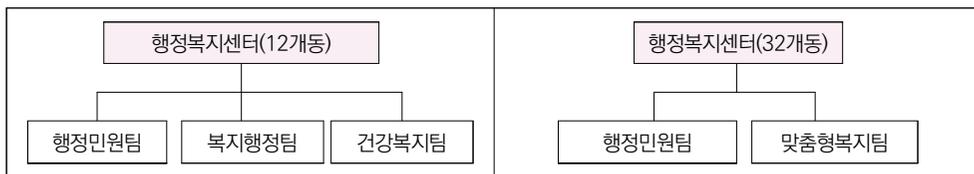
자료: 자료: 수원시 4개 구청(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홈페이지

6) 구와 행정동은 수원시만 분석함

3. 행정동(洞)

수원시 44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행정동에서의 복지업무 담당부서는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적으로 건강복지팀이 있는 12개 동(洞)은 행정민원팀, 복지행정팀, 건강복지팀, 건강복지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건강복지팀이 없는 32개의 동은 맞춤형복지팀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그림 3-2) 참조). 그리고 복지행정팀은 53명, 건강복지팀은 55명의 주무관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표 3-19〉 참조).

〈그림 3-2〉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조직도



자료: 수원시 평동 및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표 3-21〉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행정민원팀		맞춤형복지팀		복지행정팀		건강복지팀		건강복지팀	
	팀장	주무관	팀장	주무관	팀장	주무관	팀장	주무관	유무	
계	45	665	32	168	12	53	12	55	12개동	
장안구	송죽동	1	14	1	6	-	-	-	-	X
	연무동	1	16	1	7	-	-	-	-	X
	영화동	1	19	-	-	1	5	1	5	O
	울천동	1	16	1	8	-	-	-	-	X
	정자1동	1(1)	14	1	4	-	-	-	-	X
	정자2동	1	16	1	6	-	-	-	-	X
	정자3동	1	16	1	4	-	-	-	-	X
	조원1동	1	15	-	-	1	4	1	5	O
	조원2동	1	10	1	2	-	-	-	-	X
파장동	1	18	-	-	1	4	1	4	O	
권선구	곡선동	1	14	1	7	-	-	-	-	X
	구운동	1	12	1	7	-	-	-	-	X
	권선1동	1	17	1	7	-	-	-	-	X
	권선2동	1	19	1	3	-	-	-	-	X
	금곡동	1	17	1	6	-	-	-	-	X
	서둔동	1	21	-	-	1	4	1	4	O
	세류1동	1	10	1	4	-	-	-	-	X
	세류2동	1	7	-	-	1	4	1	5	O
	세류3동	1	14	1	6	-	-	-	-	X
	입북동	1	12	1	3	-	-	-	-	X
	평동	1	24	-	-	1	5	1	5	O
호매실동	1	15	1	9	-	-	-	-	X	

구분	행정민원팀		맞춤형복지팀		복지행정팀		건강복지팀		건강복지팀	
	팀장	주무관	팀장	주무관	팀장	주무관	팀장	주무관	유무	
팔달구	고등동	1	16	1	4	-	-	-	-	X
	매교동	1	10	1	4	-	-	-	-	X
	매산동	1	22	1	7	-	-	-	-	X
	우만1동	1	15	-	-	1	6	1	5	O
	우만2동	1	12	1	4	-	-	-	-	X
	인계동	1	29	-	-	1	4	1	5	O
	지동	1	14	1	6	-	-	-	-	X
	행궁동	1	20	1	6	-	-	-	-	X
	화서1동	1	15	-	-	1	4	1	5	O
	화서2동	1	12	1	5	-	-	-	-	X
영통구	광교1동	1	16	1	5	-	-	-	-	X
	광교2동	1	14	-	-	1	4	1	4	O
	망포1동	1	12	1	4	-	-	-	-	X
	망포2동	1	11	1	4	-	-	-	-	X
	매탄1동	1	11	1	6	-	-	-	-	X
	매탄2동	1	11	1	7	-	-	-	-	X
	매탄3동	1	16	-	-	1	4	1	4	O
	매탄4동	1	11	1	5	-	-	-	-	X
	영통1동	1	12	1	4	-	-	-	-	X
	영통2동	1	15	1	4	-	-	-	-	X
영통3동	1	17	1	4	-	-	-	-	X	
원천동	1	18	-	-	1	5	1	4	O	

주: 2022년 9월 23일 기준임
 자료: 수원시 행정동별 홈페이지

제3절 예산

1. 세입예산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를 분석하였다 (<표 3-22> 참조). 그 결과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50.79%, 2018년 50.62%, 2019년 49.05%, 2020년 36.52%로 4년동안 -28.1%p 감소하였다. 이는 고양시와 용인시도 동일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용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에도 수원시의 재정적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표 3-22〉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재정자립도(2017년~2020년)

(단위: %)

구분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b)	증감률(b-a)
수원시	50.79	50.62	49.05	36.52	-28.1
고양시	40.44	39.01	31.71	28.56	-29.4
용인시	54.12	53.18	53.74	41.29	-23.7

주 1: 결산기준이며,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

2: 2021년 결산자료는 아직 공표되지 않음

자료: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수원시의 재정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세입예산을 국가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보전을 받는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3-23〉 참조). 의존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205.9%p, 조정교부금은 36.6%p, 보조금은 107.3%p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자체수입은 감소하였고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이 5년동안 -34.8%p 감소하였다.

〈표 3-23〉 수원시 세입예산 현황(2017년~2021년)

(단위: 천원, %)

구분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b-a)	
계	2,145,033,394 (100.0)	2,293,291,695 (100.0)	2,592,791,133 (100.0)	3,193,859,654 (100.0)	3,163,346,366 (100.0)	47.5	
의 존 수 입	지방 교부세	21,268,100 (1.0)	24,053,281 (1.0)	29,322,760 (1.1)	56,890,000 (1.8)	65,056,557 (2.1)	205.9
	조정 교부금 등	255,333,000 (11.9)	210,090,000 (9.2)	207,019,000 (8.0)	231,621,598 (7.3)	348,911,314 (11.0)	36.6
	보조금	585,246,793 (27.3)	653,188,548 (28.5)	822,457,502 (31.7)	1,378,003,619 (43.1)	1,213,104,306 (38.3)	107.3
자 체 수 입	지방세 수입	846,120,000 (39.4)	1,000,170,000 (43.6)	1,062,961,000 (41.0)	920,006,000 (28.8)	1,097,010,673 (34.7)	29.7
	세외수입	246,119,984 (11.5)	141,641,064 (6.2)	185,816,567 (7.2)	213,978,802 (6.7)	196,797,264 (6.2)	-20.0
지방채	52,000,000 (2.4)	70,111,000 (3.1)	102,004,000 (3.9)	96,188,000 (3.0)	33,923,000 (1.1)	-34.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8,945,517 (6.5)	194,037,802 (8.5)	183,210,304 (7.1)	297,171,635 (9.3)	208,543,252 (6.6)	50.1	

주: 일반회계 기준이며, 매년 추가경정된 최종예산액임

자료: e호조

2. 세출예산

1) 수원시

수원시의 13개의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가장 많은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원시의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739,290,031천원, 2018년 828,019,534천원, 2019년 1,018,462,382천원, 2020년 1,437,031,462천원, 2021년 1,397,812,253천원까지 증가하여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4.5%에서 2021년 44.2%로 증가하였다.

〈표 3-24〉 수원시 기능별 예산 현황(2017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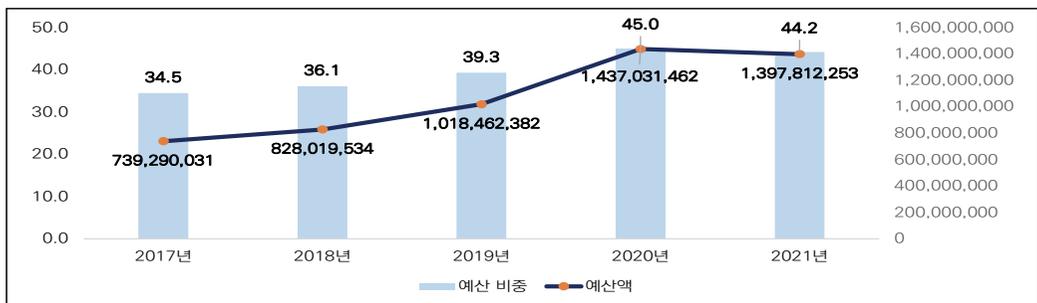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분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 (b-a)
계	2,145,033,394	2,293,291,695	2,592,791,133	3,193,859,654	3,163,346,366	47.5
일반공공행정	132,954,764	141,390,243	190,484,244	341,163,318	323,947,582	143.7
공공질서 및 안전	20,843,136	16,796,467	23,456,007	97,190,386	40,005,627	91.9
교육	34,361,391	42,910,500	83,216,538	60,715,451	57,303,864	66.8
문화 및 관광	190,087,813	206,449,877	178,159,724	162,965,053	170,265,648	-10.4
환경	119,027,679	131,492,887	179,231,181	186,140,088	213,594,059	79.4
사회복지	739,290,031	828,019,534	1,018,462,382	1,437,031,462	1,397,812,253	89.1
보건	47,827,197	46,824,495	47,673,827	53,024,698	58,644,257	22.6
농림해양수산	74,018,903	80,608,918	39,818,416	41,314,214	55,595,601	-24.9
산업·중소기업 등	41,027,798	49,789,453	28,383,018	42,634,120	52,030,512	26.8
교통 및 물류	288,417,802	237,121,429	219,095,071	227,912,046	225,611,515	-21.8
국도 및 지역개발	143,164,466	186,305,327	236,139,557	199,500,285	184,354,061	28.8
예비비	59,598,750	40,485,791	39,210,485	27,505,560	54,795,577	-8.1
기타	254,413,664	285,096,774	309,460,683	316,762,973	329,385,810	29.5

주: 추가경정된 최종예산액이며, 산업·중소기업 등의 공식명칭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임
 자료: e호조

〈그림 3-3〉 수원시 사회복지예산 및 비중 현황(2017년~2021년)

(단위: 천원, %)



자료: e호조

2) 용인시

용인시의 세출예산도 매년 증가하여 5년동안 47.3%p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원시와 동일하게 13개의 기능별 예산 중 사회복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 예산은 2017년 547,318,370천원, 2021년 991,369,035천원까지 증가하여 5년 동안 평균 세출예산보다 많은 81.1%가 증가하였다.

〈표 3-25〉 용인시 기능별 예산 현황(2017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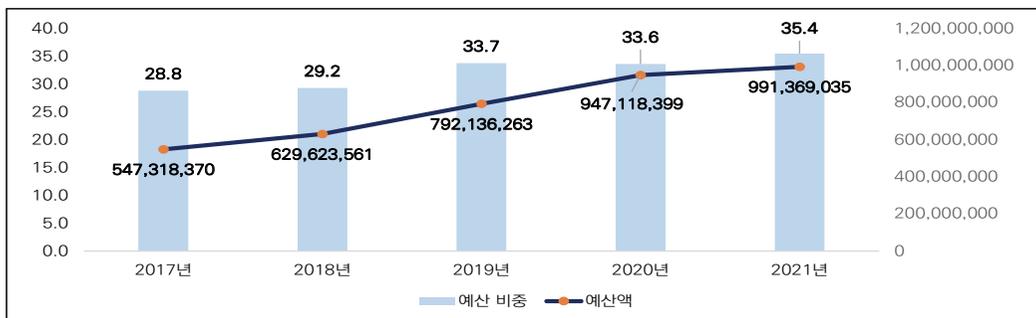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분	2017년(a)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률 (b-a)
계	1,901,356,162	2,152,566,913	2,348,217,649	2,822,564,865	2,800,181,688	47.3
일반공공행정	149,241,438	166,387,232	179,138,853	160,904,909	155,226,593	4.0
공공질서 및 안전	11,429,131	14,321,882	15,129,320	469,892,879	224,254,088	1,862.1
교육	50,052,985	77,241,636	92,499,407	65,225,006	72,765,844	45.4
문화 및 관광	129,916,746	93,653,210	81,504,680	86,426,514	103,056,996	-20.7
환경	92,774,184	113,216,987	143,246,801	159,191,398	193,290,620	108.3
사회복지	547,318,370	629,623,561	792,136,263	947,118,399	991,369,035	81.1
보건	38,498,348	35,213,699	43,184,006	51,723,901	56,440,011	46.6
농림해양수산	81,819,982	75,938,537	78,797,713	82,228,666	109,098,232	33.3
산업·중소기업 등	26,778,614	23,880,135	22,898,983	44,249,085	55,510,062	107.3
교통 및 물류	387,870,109	463,044,082	406,371,938	342,269,882	419,177,766	8.1
국토 및 지역개발	116,637,705	161,186,476	246,522,450	142,254,946	134,251,714	15.1
예비비	85,493,756	93,047,772	21,329,634	27,849,028	25,346,723	-70.4
기타	183,524,794	205,811,704	225,457,601	243,230,252	260,394,004	41.9

주: 추가경정된 최종예산액이며, 산업·중소기업 등의 공식명칭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임
자료: 용인시 연도별 예산서

〈그림 3-4〉 용인시 사회복지예산 및 비중 현황(2017년~2020년)

(단위: 천원, %)



자료: 용인시 연도별 예산서

3) 고양시

고양시의 세출예산은 용인시와 유사한 규모인 2,849,720,266천원(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5년동안 72.2%p 증가하였다. 13개 세출기능 중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사회복지의 예산액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은 고양시보다 더 많은 1,349,685,994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2021년 기준 세출예산의 4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6〉 고양시 기능별 예산 현황(2017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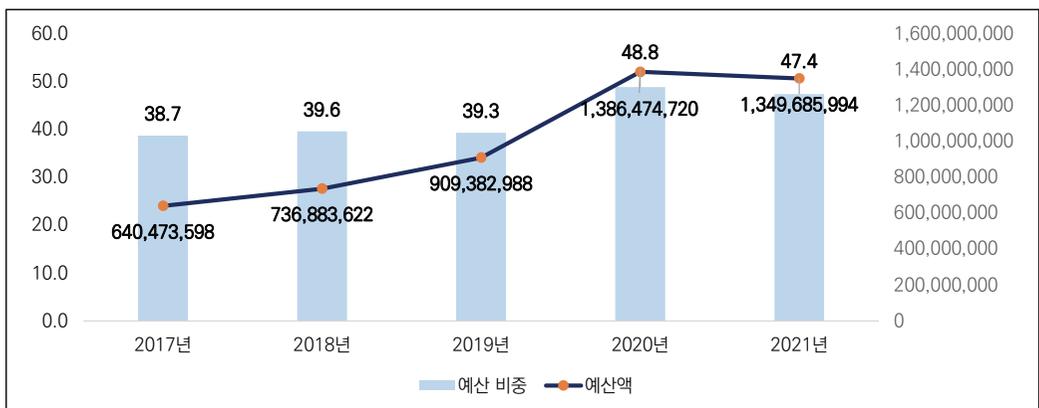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b-a)
계	1,654,690,420	1,861,534,952	2,313,801,217	2,838,486,538	2,849,720,266	72.2
일반공공행정	172,542,451	123,187,449	163,884,785	187,435,774	188,338,258	9.2
공공질서 및 안전	39,120,129	34,547,422	42,898,447	195,018,220	50,841,294	30.0
교육	48,550,573	67,799,234	69,138,683	70,438,763	67,617,016	39.3
문화 및 관광	71,624,464	81,566,228	125,517,519	114,540,989	163,858,429	128.8
환경	89,610,147	110,112,867	153,356,135	171,388,899	166,940,804	86.3
사회복지	640,473,598	736,883,622	909,382,988	1,386,474,720	1,349,685,994	110.7
보건	40,199,856	39,746,249	48,927,854	61,259,076	69,128,660	72.0
농림해양수산	27,958,929	31,047,722	76,385,589	48,965,837	57,818,886	106.8
산업·중소기업 등	43,239,018	29,693,004	24,426,198	74,544,303	59,216,908	37.0
교통 및 물류	192,080,171	189,712,626	231,501,049	147,299,296	190,729,909	-0.7
국토 및 지역개발	65,067,829	95,348,892	200,337,714	102,742,082	180,369,000	177.2
예비비	12,029,327	77,710,448	10,140,595	11,284,102	19,580,348	62.8
기타	212,193,928	244,179,189	257,903,661	267,094,477	285,594,760	34.6

주: 추가경정된 최종예산액이며, 산업·중소기업 등의 공식명칭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임
 자료: 고양시 연도별 예산서

〈그림 3-5〉 고양시 사회복지예산 및 비중 현황(2017년~2020년)

(단위: 천원, %)



자료: 고양시 연도별 예산서

2021년 기준, 수원시와 용인시는 사회복지예산의 부문별 예산(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중 보육·가족 및 여성의 예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노인·청소년, 사회복지일반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영유아 인구가 많아서 보육·가족 및 여성의 예산은 417,835,894천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양시는 노인·청소년의 예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가 사회복지기능 안에서도 예산편성액이 높은 부문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단위의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보육·가족 및 여성과 노인·청소년 부문의 예산이 많다는 것은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7〉 수원시 사회복지예산의 부문별 예산현황(2021년 최종예산)

(단위: 천원)

구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계		1,397,812,253	991,369,035	1,349,685,994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135,699,888	89,501,865	142,584,986
	취약계층지원	120,660,810	93,837,923	376,973,293
	보육·가족 및 여성	426,727,698	417,835,894	360,247,750
	노인·청소년	398,673,728	311,412,607	409,017,703
	노동	17,744,305	21,076,925	19,103,051
	보훈	8,729,308	14,983,820	9,308,800
	사회복지일반	289,576,516	42,720,001	32,402,635
	주택	-	-	47,776

주: 2021년 추가경정된 최종예산액 기준임

자료 1: e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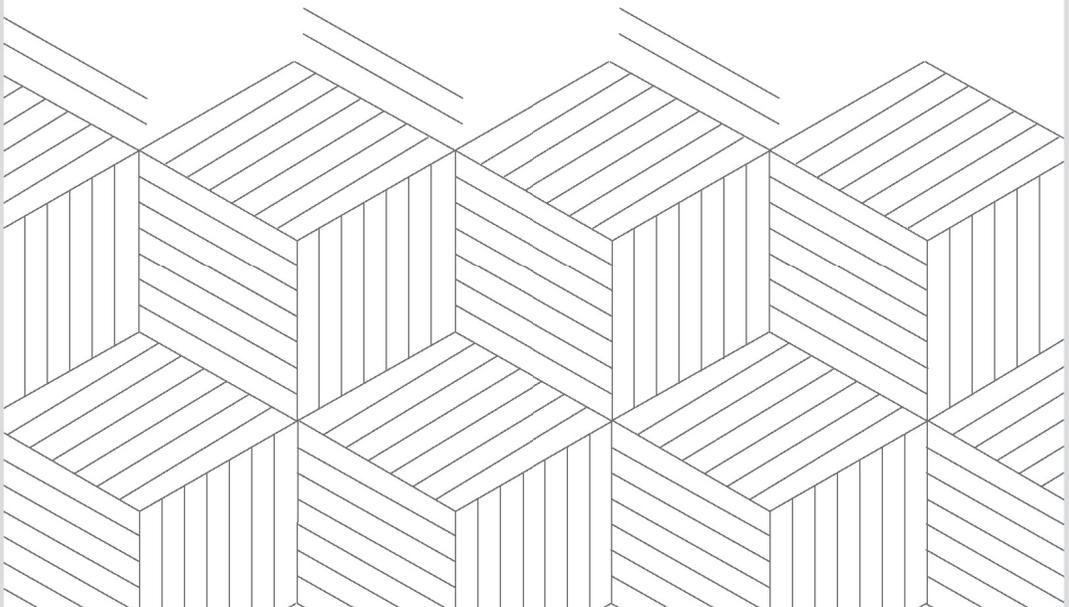
2: 고양시(2021). 고양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3: 용인시(2021). 용인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서

제4장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다차원 분석

제1절 사회복지정책 분석
제2절 매트릭스 분석



제4장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다차원 분석

제1절 사회복지정책 분석

1. 재원을 통한 분석

본 연구는 수원시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e호조에서 추출한 2022년 본예산 중 세부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사업을 분류한 결과, 총 895개사업 중 비사업 18개를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총 877개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원시로 하달한 보조사업의 수는 457개, 수원시비로만 시행하는 자체복지사업은 420개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조사업의 편성예산액은 1,075,532,847천원, 자체사업은 80,769,377천원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이 자체사업보다 994,763,470천원이 많았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수는 보조사업보다 37개 적었지만 자체사업의 예산은 총 예산의 7%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즉, 수원시 자체 복지사업은 보조사업에 비해 개수는 적지 않지만 예산액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수원시 2022년 사회복지부문의 사업 수 및 예산

(단위: 천원, 개)

구분	계 (c=a+b)	정책사업			비사업(b)
		총계(a)	보조사업	자체사업	
예산액	1,164,488,718	1,156,302,224	1,075,532,847	80,769,377	8,186,494
사업수	895	877	457	420	18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임

자료: e호조

7) 수원시 사회복지사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설명서에 명시된 세부산출근거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본 분석자료는 2022년 본예산의 일반회계 기준임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예산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표 4-2 참조〉). 우선 보조사업의 예산 1,075,532,847천원 중 예산액이 제일 큰 사업은 기초연금으로 287,490,804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체 보조사업 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 다음으로 영유아보육료(126,337,827천원), 아동수당(76,910,716천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2,548,000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 15개의 보조사업 예산을 합친 금액은 609,767,347천원으로 보조사업 예산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즉, 국가에서 시행을 결정한 현금성 급여의 정책이 수원시 사회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20개 자체사업의 예산액은 80,769,377천원인데 그 중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의 편성 예산액이 가장 크고 이는 자체사업의 18.8%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연화장 운영 관리(도시공사)' 11,842,009천원, '사회복지관 운영' 5,870,749천원으로 나타나 자체사업에서 시설과 관련된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 상위 15개의 사업 예산액을 합친 금액은 자체사업 예산의 71.4% 수준이고, 상위 15개를 제외한 405개의 사업의 예산액은 23,090,619천원인데 이는 보조사업 중 예산액이 가장 큰 기초연금의 12.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원시 자체복지사업은 사업 수에 비해 예산액이 적은 문어발식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4-2〉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예산(상위 15개)

(단위: 천원)

연번	보조사업		자체사업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1	기초연금	287,490,804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15,176,780
2	영유아보육료	126,337,827	연화장 운영 관리(도시공사)	11,842,009
3	아동수당	76,910,716	사회복지관 운영	5,870,749
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2,548,00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5,718,528
5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46,480,000	보훈명예수당	5,700,000
6	누리과정 운영	40,475,880	출생·입양 가정 지원	1,951,000
7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3,855,178	새희망일자리	1,503,344
8	가정 양육수당	19,129,388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478,824
9	장애인연금 급여	17,774,718	어린이집 운영	1,452,600
10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17,498,133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344,866
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17,116,782	가족여성회관 운영(도시공사)	1,317,975
12	청년기본소득	15,604,00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312,320
13	첫만남이용권	14,158,000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1,250,124
14	영어수당	14,090,720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도시공사)	972,299
15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4,061,000	대학생 인턴	787,340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임

자료: e호조

2. 할당을 통한 분석

1) 사업

사회복지정책에서 할당이란 복지정책의 대상을 의미한다. 즉, 누구에게 복지정책을 전달할 것인가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책대상자를 생애주기와 비생애주기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생애주기 정책대상자는 영·유아(만5세 이하), 아동·청소년(만6~18세), 청년(만19~34세), 중·장년(만35~64세), 노인(만6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비생애주기는 저소득, 등록장애인, 노숙인 및 행려자, 여성,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훈대상자, 복합적 대상자(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원시민, 기타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와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면, 만5세 이하 영·유아는 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은 학대피해 아동쉼터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대상별 사업 예시는 <표 4-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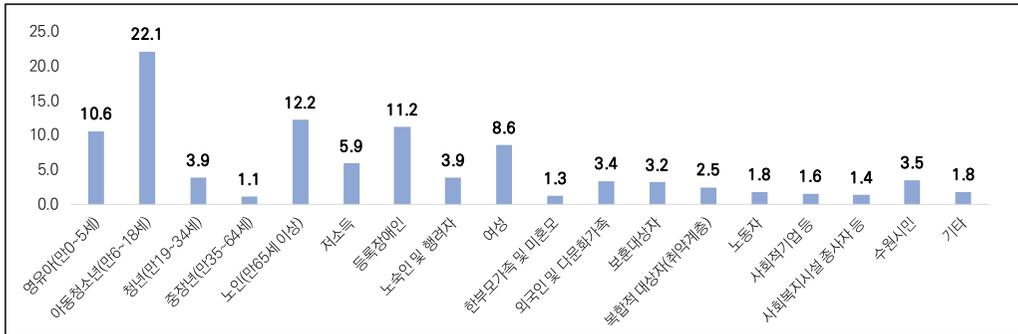
<표 4-3>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별 예시

구분	정책명
영·유아(만0~5세)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운영, 야간시간제 보육 지원
아동·청소년(만6~18세)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청년(만19~34세)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전세대출 이차지원, 청년해외취업 지원
중·장년(만35~64세)	사회공헌활동 지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노인(만65세 이상)	효사랑 지원금, 경로행사, 효도수당, 독거노인 유제품 전달, 홀몸어르신 안부 확인
저소득	새희망일자리,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명절 저소득층 위문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노숙인 및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무연고사망자 냉동실 사용료, 노숙인 자활 지원
여성	새일여성 인턴제,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영통여성새일센터)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보훈회관 운영, 사망위로금, 월남참전자회 수원시지회 운영
복합적 대상자(취약계층)	수원휴먼주택 임대료, 시설보호자 위문 격려, 저소득가구 위문 격려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노동단체 사업지원
사회적기업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 3D특화형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대응교육, 인권침해 종사자 치료지원
수원시민	사회복지관 운영(연무사회복지관 등 5개소), 지역사회보장 정책사업
기타	홍재사회복지타운 교육장 비품, 민원안내 자원봉사, 사회복지무원 보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친 877개의 사업 중 대상별 사업 수는 아동·청소년 분야 사업이 194개(22.1%)로 가장 많았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도 둘다 동일하게 아동·청소년 분야가 각각 124개(27.1%), 70개(1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별 사업 비중(보조 및 자체)

(단위: %)



주: 전체(보조+자체)에서 차지하는 대상별 비율을 의미함

자료 : e호조

〈표 4-4〉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별 사업 수

(단위: 개, %)

대상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계	877 (100.0)	457 (52.1)	420 (47.9)
영유아(만0~5세)	93 (10.6)	44 (47.3)	49 (52.7)
아동·청소년(만6~18세)	194 (22.1)	124 (63.9)	70 (36.1)
청년(만19~34세)	34 (3.9)	10 (29.4)	24 (70.6)
중장년(만35~64세)	10 (1.1)	1 (10.0)	9 (90.0)
노인(만65세 이상)	107 (12.2)	40 (37.4)	67 (62.6)
저소득	52 (5.9)	37 (71.2)	15 (28.8)
등록장애인	98 (11.2)	71 (72.4)	27 (27.6)
노숙인 및 행려자	34 (3.9)	11 (32.4)	23 (67.6)
여성	75 (8.6)	50 (66.7)	25 (33.3)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11 (1.3)	10 (90.9)	1 (9.1)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30 (3.4)	18 (60.0)	12 (40.0)
보훈대상자	28 (3.2)	4 (14.3)	24 (85.7)
복합적 대상자(취약계층)	22 (2.5)	9 (40.9)	13 (59.1)
노동자	16 (1.8)	3 (18.8)	13 (81.3)
사회적기업 등	14 (1.6)	8 (57.1)	6 (4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2 (1.4)	6 (50.0)	6 (50.0)
수원시민	31 (3.5)	9 (29.0)	22 (71.0)
기타	16 (1.8)	2 (12.5)	14 (87.5)

주 1: 본예산 기준이며, 계의 대상별 비율(괄호)은 전체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계는 대상에서 차지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e호조

대상별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대상집단은 중·장년이 90.0%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저소득(71.2%)과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90.9%), 등록장애인(72.4%), 여성(66.7%) 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대상집단에 비해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제시된 대상별 복지욕구에서는 중복위험을 겪는 대상자(고령장애인, 장애가 의심되는 중도입국 청소년(또는 이주민 자녀) 등)에 대한 정책적 욕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자체사업에서는 고령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 어르신 고희연’이 유일한 정책이었고, 이주민 또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장애조기 발견 등과 관련된 정책도 전무하였다. 따라서 향후 수원시에서는 중복위험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소정 외(2021)에 연구에서는 65세 노인도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과 관련된 정책적 욕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노인정책도 세부집단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수원시의 초고령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노인정책의 연령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만65세 이상을 정책적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물론 일부 정책은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또한 경로행사와 같은 일회성 행사가 유일하였다. 그리고 특정계층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와 같은 ‘효도수당’이나 ‘효사랑 지원금’도 실질적으로 노인당사자가 아닌 만80세나 만85세를 봉양하는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노인의 연령에 따른 특성화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림 4-2〉 수원시의 노인정책별 노인의 세부집단 연령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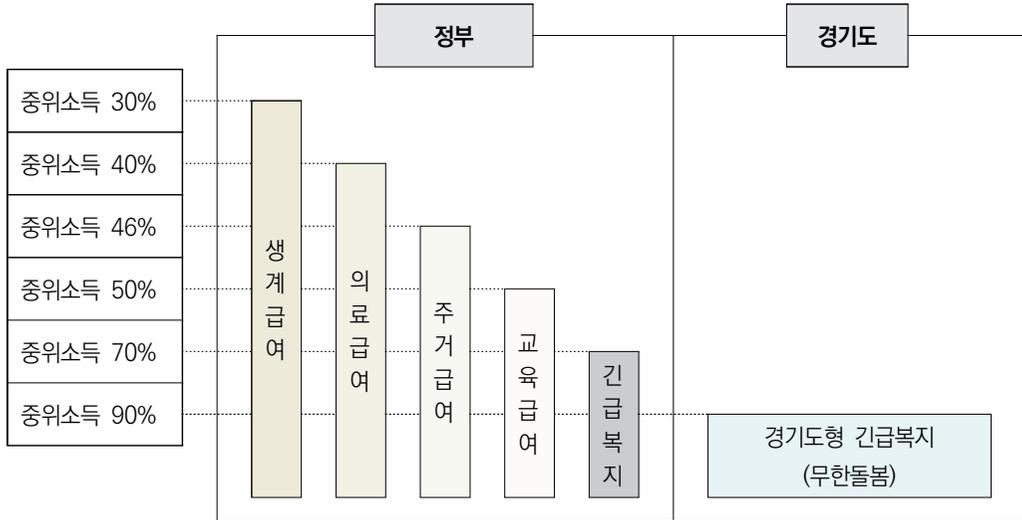


자료: 수원시 복지여성국 사업설명서

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기준이 지침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호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경기도의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의 사업

은 <그림 4-3>과 같이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에게만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대상은 공적 전달체계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4-3> 수원시 소득기준별 사회복지정책(보조사업)



자료: 수원시 복지여성국 사업설명서

2) 예산

2022년 수원시 총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을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표 4-5> 참조), 사업 수는 아동·청소년 분야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65세 이상의 노인 분야가 369,477,015천원(3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유아 311,928,224천원(27.0%), 아동·청소년 134,465,320천원(11.6%), 저소득 130,669,979천원(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칭비가 투입되는 보조사업도 전체 사업예산액과 동일하게 노인과 영유아 부문의 예산액이 가장 많았고, 자체사업은 아동·청소년(만6~18세)을 위한 정책이 17,460,128천원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영·유아가 11,826,853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별로는 한부모가족 미혼모의 보조사업 비중이 99.6%로 가장 높았고 이 밖에도 중·장년(74.5%), 보훈대상자(79.0%), 노동자(61.2%) 등의 보조사업 예산비중은 자체사업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수원시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의 대부분은 대상에 상관없이 보조사업의 예산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별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계	1,156,302,224 (100.0)	1,075,532,847 (93.0)	80,769,377 (7.0)
영유아(만0~5세)	311,928,224 (27.0)	300,101,371 (96.2)	11,826,853 (3.8)
아동청소년(만6~18세)	134,465,320 (11.6)	117,005,192 (87.0)	17,460,128 (13.0)
청년(만19~34세)	20,489,938 (1.8)	17,784,138 (86.8)	2,705,800 (13.2)
중장년(만35~64세)	1,436,940 (0.1)	366,192 (25.5)	1,070,748 (74.5)
노인(만65세 이상)	369,477,015 (32.0)	363,240,063 (98.3)	6,236,952 (1.7)
저소득	130,669,979 (11.3)	128,572,951 (98.4)	2,097,028 (1.6)
등록장애인	118,658,890 (10.3)	111,875,667 (94.3)	6,783,223 (5.7)
노숙인 및 행려자	3,960,859 (0.3)	3,910,419 (98.7)	50,440 (1.3)
여성	7,102,547 (0.6)	4,093,600 (57.6)	3,008,947 (42.4)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8,115,248 (0.7)	8,082,848 (99.6)	32,400 (0.4)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2,005,616 (0.2)	1,273,439 (63.5)	732,177 (36.5)
보훈대상자	8,642,503 (0.7)	1,816,050 (21.0)	6,826,453 (79.0)
복합적 대상자(취약계층)	1,437,418 (0.1)	1,204,018 (83.8)	233,400 (16.2)
노동자	1,390,064 (0.1)	539,660 (38.8)	850,404 (61.2)
사회적기업 등	1,531,600 (0.1)	1,343,291 (87.7)	188,309 (12.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599,754 (0.1)	415,252 (69.2)	184,502 (30.8)
수원시민	16,228,871 (1.4)	8,230,581 (50.7)	7,998,290 (49.3)
기타	18,161,438 (1.6)	5,678,115 (31.3)	12,483,323 (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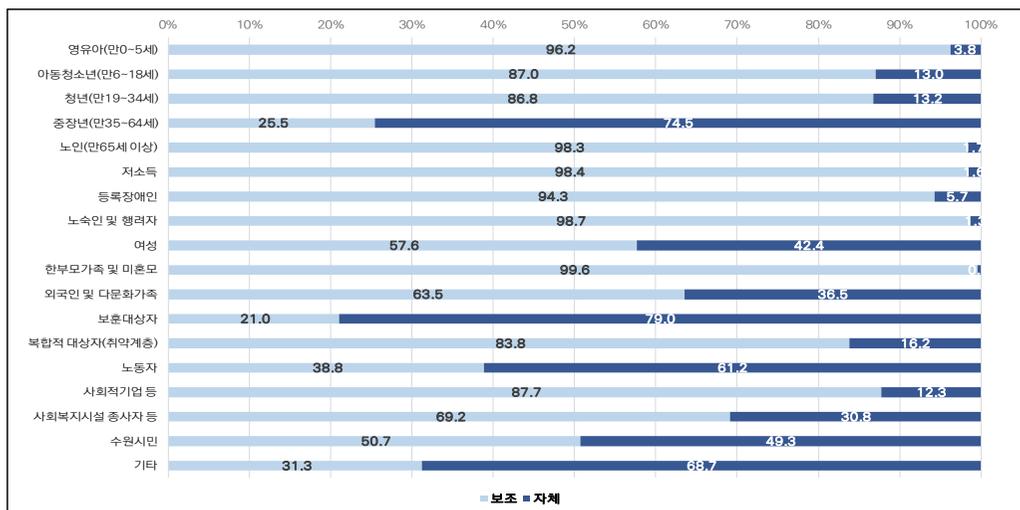
주 1: 본예산 기준이며, 계의 대상별 비율(괄호)은 전체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계는 대상에서 차지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e호조

〈그림 4-4〉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별 예산액의 보조 및 자체사업 비중

(단위: %)



주: 본예산 기준이며, 비율은 대상에서 차지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e호조

3. 욕구를 통한 분석

1) 사업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사업설명서에 기술된 정책의 목적 및 내용을 바탕으로 욕구를 구분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노동), 돌봄(지역사회), 출산 및 돌봄(가족 및 가정), 환경조성, 문화 및 여가, 자립 및 자활, 건강(정신·신체), 안전, 주거, 사회참여 등과 같이 28개로 분류하였고 욕구별 정책명은 다음의 <표 4-6>과 같다.

<표 4-6>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욕구별 예시

욕구	정책명
건강(신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
건강(정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
교육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돌봄(생활)_노인	노인요양시설 운영, 양로시설 운영,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돌봄(이용)_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주·야간 아동돌봄, 학교돌봄터 운영비
돌봄(생활)_아동청소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아동양육시설 운영
돌봄(이용)_영유아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운영,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영
돌봄(이용)_외국인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돌봄(이용)_장애인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장애인주간보호시설(위탁) 운영
돌봄(생활)_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돌봄(생활)_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돌봄(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문화 및 여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운영,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발달(성장) 및 재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
보훈	보훈명예수당, 보훈회관 운영,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국가유공자 표창
사회참여	민원안내 자원봉사, 지역자원 개발 지원, 나눔이웃 명판 증정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안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이동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일자리(노동)	새희망일자리,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자립 및 자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노숙인 자활 지원
장례	행려사망자 장제비, 무연고사망자 냉동실 사용료, 행려사망자 공고료
정보제공 및 홍보	출생 장려사업 홍보물,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노인복지신문 보급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대응교육,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주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수원휴먼주택 지원 사업

육구	정책명
출산 및 돌봄(가정 등)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효사랑 지원금
환경조성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고령친화도시 이해 및 모니터단 역량교육
기타	사회복무요원 배치, 사회복무요원 보수

주: 돌봄(생활) 및 돌봄(이용)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의미함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육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7〉 참조). 우선적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친 사업의 수는 일자리(노동)와 관련된 정책이 123개(1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안전 106개(12.1%)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면, 보조사업에서는 일자리(노동)가 72개(15.8%)로 가장 많았다.

자체사업에서는 문화 및 여가가 70개(16.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자체사업의 경우,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지만 대다수가 ‘경로행사’, ‘저소득층아동 문화체험’,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운영’, ‘노인문화교실 운영’,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청소년 어울림마당’, ‘장애인의 날 어울림 한마당’,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과 같이 특정집단(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축제나 시설(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경로당, 노인문화교실, 노인복지관,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을 통한 서비스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7〉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육구별 사업 수

(단위: 개, %)

구분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계	877 (100.0)	457 (52.1)	420 (47.9)
건강(신체)	31 (3.5)	25 (80.6)	6 (19.4)
건강(정신)	12 (1.4)	5 (41.7)	7 (58.3)
교육	20 (2.3)	10 (50.0)	10 (50.0)
돌봄(생활)_노인	9 (1.0)	7 (77.8)	2 (22.2)
돌봄(이용)_아동청소년	26 (3)	22 (84.6)	4 (15.4)
돌봄(생활)_아동청소년	5 (0.6)	5 (100.0)	0 (0.0)
돌봄(이용)_영유아	54 (6.2)	28 (51.9)	26 (48.1)
돌봄(이용)_외국인	5 (0.6)	3 (60.0)	2 (40.0)
돌봄(이용)_장애인	8 (0.9)	2 (25.0)	6 (75.0)
돌봄(생활)_장애인	10 (1.1)	10 (100.0)	0 (0.0)
돌봄(생활)_한부모가족	6 (0.7)	6 (100.0)	0 (0.0)
돌봄(지역사회)	28 (3.2)	20 (71.4)	8 (28.6)
문화 및 여가	86 (9.8)	16 (18.6)	70 (81.4)
발달(성장) 및 재활	26 (3)	21 (80.8)	5 (19.2)
보훈	25 (2.9)	3 (12.0)	22 (88.0)

구분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사회참여	6 (0.7)	0 (0.0)	6 (100.0)
소득보장	14 (1.6)	11 (78.6)	3 (21.4)
안전	106 (12.1)	50 (47.2)	56 (52.8)
이동	8 (0.9)	2 (25.0)	6 (75.0)
일자리(노동)	123 (14)	72 (58.5)	51 (41.5)
자립 및 자활	37 (4.2)	34 (91.9)	3 (8.1)
장례	22 (2.5)	2 (9.1)	20 (90.9)
정보제공 및 홍보	17 (1.9)	2 (11.8)	15 (88.2)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88 (10)	63 (71.6)	25 (28.4)
주거	14 (1.6)	4 (28.6)	10 (71.4)
출산 및 돌봄(가정 등)	30 (3.4)	22 (73.3)	8 (26.7)
환경조성	58 (6.6)	10 (17.2)	48 (82.8)
기타	3 (0.3)	2 (66.7)	1 (33.3)

주 1: 본예산 기준이며, 계의 대상별 비율(괄호)은 전체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계는 대상에서 차지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의미함

3: '생활'은 생활시설, '이용'은 이용시설을 의미함

자료 : e호조

2) 예산

사회복지 관련 욕구를 편성 예산액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표 4-8〉 참조). 전체(보조 및 자체) 사업의 수는 일자리(노동)와 관련된 욕구가 가장 많았으나 예산액은 소득보장이 402,306,610천원(34.8%)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사업 수는 일자리(노동)가 가장 많았으나 예산액은 소득보장이 402,286,260천원(보조사업의 37.4%)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자체사업과 관련된 욕구는 환경조성 16,987,738천원(21.0%), 장례 12,509,664천원(15.5%), 돌봄(지역사회) 12,072,587천원(14.9%), 돌봄(이용시설)_영유아 7,468,672천원(9.2%), 보훈 6,760,053천원(8.4%), 일자리(노동) 6,604,575천원(8.2%), 문화 및 여가 6,474,642천원(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례분야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연화장 운영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12,358,514천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원시의 보훈대상자는 15,055명(2021년 기준)으로 인구대비 1.3%밖에 되지 않고 수원시가 용인시가 고양시보다 집단인구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표 3-16〉 참조) 보훈대상자의 자체사업 비중은 높은 편에 속하였다. 또한 앞서 문화 및 여가는 사업 수가 가장 많았으나 예산액은 상대적으로 다른 욕구에 비해 적어 앞서 분석한 것처럼 일회성 행사나 시설을 통한 서비스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표 4-8〉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욕구별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계	1,156,302,224 (100.0)	1,075,532,847 (93.0)	80,769,377 (7.0)
건강(신체)	31,118,085 (2.7)	31,015,055 (99.7)	103,030 (0.3)
건강(정신)	721,238 (0.1)	345,238 (47.9)	376,000 (52.1)
교육	671,243 (0.1)	549,793 (81.9)	121,450 (18.1)
돌봄(생활)_노인	15,853,178 (1.4)	15,836,378 (99.9)	16,800 (0.1)
돌봄(이용)_아동청소년	11,019,579 (1.0)	10,276,301 (93.3)	743,278 (6.7)
돌봄(생활)_아동청소년	10,290,026 (0.9)	10,290,026 (100.0)	0 (0.0)
돌봄(이용)_영유아	244,414,948 (21.1)	236,946,276 (96.9)	7,468,672 (3.1)
돌봄(이용)_외국인	737,921 (0.1)	160,180 (21.7)	577,741 (78.3)
돌봄(이용)_장애인	7,580,389 (0.7)	7,071,314 (93.3)	509,075 (6.7)
돌봄(생활)_장애인	5,290,936 (0.5)	5,290,936 (100.0)	0 (0.0)
돌봄(생활)_한부모가족	1,087,250 (0.1)	1,087,250 (100.0)	0 (0.0)
돌봄(지역사회)	81,819,985 (7.1)	69,747,398 (85.2)	12,072,587 (14.8)
문화 및 여가	17,949,577 (1.6)	11,474,935 (63.9)	6,474,642 (36.1)
발달(성장) 및 재활	13,833,900 (1.2)	13,772,844 (99.6)	61,056 (0.4)
보훈	8,438,853 (0.7)	1,678,800 (19.9)	6,760,053 (80.1)
사회참여	12,809 (0.0)	0 (0.0)	12,809 (100.0)
소득보장	402,306,610 (34.8)	402,286,260 (100.0)	20,350 (0.0)
안전	10,632,600 (0.9)	9,622,186 (90.5)	1,010,414 (9.5)
이동	826,660 (0.1)	626,660 (75.8)	200,000 (24.2)
일자리(노동)	43,834,579 (3.8)	37,230,004 (84.9)	6,604,575 (15.1)
자립 및 자활	16,274,315 (1.4)	15,608,915 (95.9)	665,400 (4.1)
장례	12,825,664 (1.1)	316,000 (2.5)	12,509,664 (97.5)
정보제공 및 홍보	193,378 (0.0)	62,634 (32.4)	130,744 (67.6)
중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21,817,880 (1.9)	19,185,777 (87.9)	2,632,103 (12.1)
주거	34,885,674 (3.0)	34,562,178 (99.1)	323,496 (0.9)
출산 및 돌봄(가정 등)	138,878,122 (12.0)	134,530,422 (96.9)	4,347,700 (3.1)
환경조성	17,480,438 (1.5)	492,700 (2.8)	16,987,738 (97.2)
기타	5,506,387 (0.5)	5,466,387 (99.3)	40,000 (0.7)

주 1: 본예산 기준이며, 계의 대상별 비율(괄호)은 전체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계는 대상에서 차지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e호조

4. 급여유형을 통한 분석

1) 사업

복지대상자에게 급여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급여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시설 및 단체지원이 441개(50.3%)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금 179개(20.4%), 사업 129개(14.7%), 현물 51개(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면, 전체 사업 개수와 동일하게 시설 및 단체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보조사업은 시설 및 단체지원 다음으로 현금이 많은 반면 자체사업은 현금과 사업이 동일하게 많다는 것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4-9〉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유형에 따른 사업 수

(단위: 개, %)

구분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계	877 (100.0)	457 (52.1)	420 (47.9)
현금	179 (20.4)	129 (72.1)	50 (27.9)
현물	51 (5.8)	11 (21.6)	40 (78.4)
권력	31 (3.5)	1 (3.2)	30 (96.8)
기회	19 (2.2)	6 (31.6)	13 (68.4)
사업	129 (14.7)	79 (61.2)	50 (38.8)
바우처	27 (3.1)	13 (48.1)	14 (51.9)
시설 및 단체지원	441 (50.3)	218 (49.4)	223 (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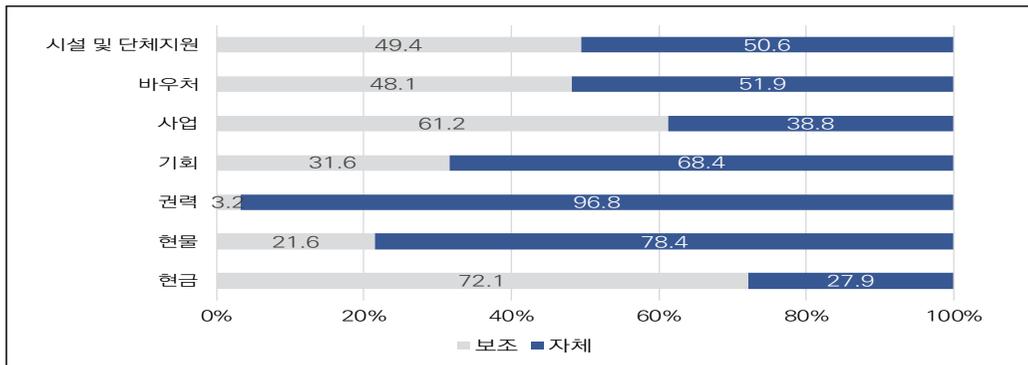
주 1: 본예산 기준이며, 계의 대상별 비율(괄호)은 전체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주 2: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계는 대상에서 차지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e호조

〈그림 4-5〉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유형에 따른 보조 및 자체사업 수 비중

(단위: %)



주: 본예산 기준이며, 비율은 대상에서 차지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e호조

2) 예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친 급여유형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현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설 및 단체지원, 바우처,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사업도 전체사업 예산과 현금성급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시설 및 단체지원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자체사업은 시설 및 단체지원, 현금, 바우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금급여는 보조사업의 97.5%를 차지하고 권력 및 기회는 타 급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즉, 보조사업은 현금성 급여에 집중되어 있고 수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권력이나 기회와 관련된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유형별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계	1,156,302,224 (100.0)	1,075,532,847 (93.0)	80,769,377 (7.0)
현금	761,101,566 (54.9)	745,242,256 (97.5)	15,859,310 (2.5)
현물	2,180,667 (0.2)	1,479,790 (67.9)	700,877 (32.1)
권력	285,359 (0.0)	159,339 (55.8)	126,020 (44.2)
기회	138,662 (0.0)	89,752 (64.7)	48,910 (35.3)
사업	38,830,998 (3.4)	37,160,803 (95.7)	1,670,195 (4.3)
바우처	81,742,887 (7.1)	75,553,503 (92.4)	6,189,384 (7.6)
시설 및 단체지원	272,022,085 (34.5)	215,847,404 (85.9)	56,174,681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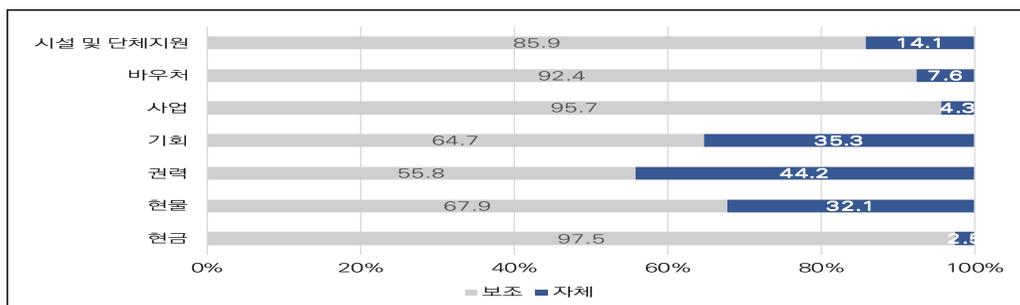
주 1: 본예산 기준이며, 계의 대상별 비율(괄호)은 전체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계는 대상에서 차지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e호조

〈그림 4-6〉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유형에 따른 보조 및 자체사업 비중

(단위: %)



주: 본예산 기준이며, 비율은 대상에서 차지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e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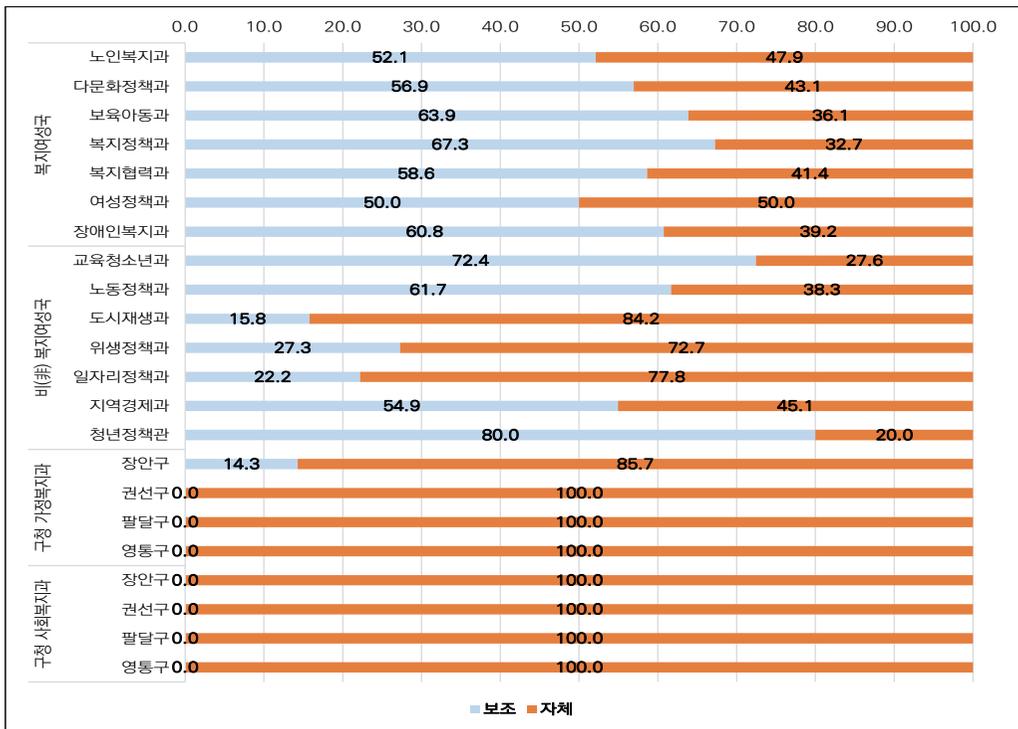
5. 전달체계를 통한 분석

1) 사업

수원시의 복지정책은 수원시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의 복지관련 업무 부서는 구청의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포함하여 총 22개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다(〈표 4-11〉 참조). 이 중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복지여성국에서는 570개(65.0%)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청에서 복지여성국을 제외한 교육청소년과, 노동정책과, 도시재생과, 위생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청년정책관에서는 201개의 사업(22.9%)을 담당하고 있다. 과별로는 보육아동과가 16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98개), 복지정책과(87개), 여성정책과(79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모두 보육아동과가 가장 많았고, 복지여성국 내에서는 장애인복지과가 보조사업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4%로 가장 높았다. 비(非) 복지여성국에서는 교육청소년과, 일자리정책과가 다른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7〉 수원시 사회복지예산의 전달체계 현황

(단위: %)



자료: e호조

〈표 4-11〉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사업 수

(단위: 개, %)

구분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계	877 (100.0)	457 (52.1)	420 (47.9)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72 (8.2)	41 (56.9)	31 (43.1)
	다문화정책과	36 (4.1)	23 (63.9)	13 (36.1)
	보육아동과	168 (19.2)	113 (67.3)	55 (32.7)
	복지정책과	87 (9.9)	51 (58.6)	36 (41.4)
	복지협력과	30 (3.4)	15 (50.0)	15 (50.0)
	여성정책과	79 (9.0)	48 (60.8)	31 (39.2)
	장애인복지과	98 (11.2)	71 (72.4)	27 (27.6)
비(非) 복지여성국	교육청소년과	60 (6.8)	37 (61.7)	23 (38.3)
	노동정책과	19 (2.2)	3 (15.8)	16 (84.2)
	도시재생과	11 (1.3)	3 (27.3)	8 (72.7)
	위생정책과	9 (1.0)	2 (22.2)	7 (77.8)
	일자리정책과	71 (8.1)	39 (54.9)	32 (45.1)
	지역경제과	10 (1.1)	8 (80.0)	2 (20.0)
	청년정책관	21 (2.4)	3 (14.3)	18 (85.7)
구청 가정복지과	장안구	12 (1.4)	0 (0.0)	12 (100.0)
	권선구	11 (1.3)	0 (0.0)	11 (100.0)
	팔달구	9 (1.0)	0 (0.0)	9 (100.0)
	영통구	9 (1.0)	0 (0.0)	9 (100.0)
구청 사회복지과	장안구	13 (1.5)	0 (0.0)	13 (100.0)
	권선구	16 (1.8)	0 (0.0)	16 (100.0)
	팔달구	17 (1.9)	0 (0.0)	17 (100.0)
	영통구	19 (2.2)	0 (0.0)	19 (100.0)

주: 계의 비율은 총 단계에서의 비율이며, 보조와 자체의 비율은 각 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e호조

복지정책 대상자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市)에서 편성된 금액이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표 4-12〉 참조). 그 결과,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수원시에서 다른 주체를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2단계를 통해 당사자에게 정책이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예시

구분	전달체계의 예시	
1단계	· 수원시→당사자	
2단계	· 수원시→팔달여성새일센터→당사자(대상자) · 수원시→수원시청소년재단→당사자(대상자) · 수원시→사회복지관→당사자(대상자)	· 수원시→구→당사자(대상자) · 수원시→수원시 청년지원센터→당사자(대상자)
3단계	· 수원시→사회보장정보원(예약금)→기관(파견업체)→당사자(대상자) · 수원시→구→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당사자(대상자)	

자료 : e호조 및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한 사항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모두 동일하게 대부분 2단계를 통해 전달되었고, 그 다음으로 1단계(시 → 당사자), 3단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계별로는 1단계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모두 보육아동과가 가장 많았으며, 2단계는 보육아동과 장애인복지과, 일자리정책과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그리고 3단계는 복지정책과와 권선구 가정복지과가 가장 많았다.

〈표 4-13〉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별 사업 수

(단위: 개, %)

구분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계		877 (100.0)	457 (52.1)	420 (47.9)	
1단계	소계	148 (16.9)	43 (29.1)	105 (70.9)	
	교육청소년과	5 (0.6)	4 (80.0)	1 (20.0)	
	노동정책과	6 (0.7)	1 (16.7)	5 (83.3)	
	보육아동과	27 (3.1)	11 (40.7)	16 (59.3)	
	복지정책과	20 (2.3)	7 (35)	13 (65)	
	복지협력과	7 (0.8)	4 (57.1)	3 (42.9)	
	일자리정책과	9 (1.0)	1 (11.1)	8 (88.9)	
	장애인복지과	20 (2.3)	13 (65.0)	7 (35.0)	
	청년정책관	5 (0.6)	2 (40.0)	3 (60.0)	
	노인복지과	6 (0.7)	0 (0.0)	6 (100.0)	
	다문화정책과	4 (0.5)	0 (0.0)	4 (100.0)	
	도시재생과	2 (0.2)	0 (0.0)	2 (100.0)	
	여성정책과	7 (0.8)	0 (0.0)	7 (100.0)	
	지역경제과	1 (0.1)	0 (0.0)	1 (100.0)	
	가정 복지과	장안구	3 (0.3)	0 (0.0)	3 (100.0)
		권선구	3 (0.3)	0 (0.0)	3 (100.0)
		팔달구	3 (0.3)	0 (0.0)	3 (100.0)
		영통구	1 (0.1)	0 (0.0)	1 (100.0)
	사회 복지과	장안구	4 (0.5)	0 (0.0)	4 (100.0)
		권선구	6 (0.7)	0 (0.0)	6 (100.0)
팔달구		4 (0.5)	0 (0.0)	4 (100.0)	
영통구		5 (0.6)	0 (0.0)	5 (100.0)	
2단계	소계	720 (82.1)	411 (57.1)	309 (42.9)	
	교육청소년과	55 (6.3)	33 (60.0)	22 (40.0)	
	노동정책과	13 (1.5)	2 (15.4)	11 (84.6)	
	노인복지과	66 (7.5)	41 (62.1)	25 (37.9)	
	다문화정책과	32 (3.6)	23 (71.9)	9 (28.1)	
	도시재생과	9 (1.0)	3 (33.3)	6 (66.7)	
	보육아동과	141 (16.1)	102 (72.3)	39 (27.7)	
	복지정책과	65 (7.4)	42 (64.6)	23 (35.4)	
	복지협력과	23 (2.6)	11 (47.8)	12 (52.2)	
	여성정책과	71 (8.1)	47 (66.2)	24 (33.8)	
	위생정책과	9 (1.0)	2 (22.2)	7 (77.8)	
	일자리정책과	62 (7.1)	38 (61.3)	24 (38.7)	
	장애인복지과	77 (8.8)	58 (75.3)	19 (24.7)	
	지역경제과	9 (1.0)	8 (88.9)	1 (11.1)	
	청년정책관	16 (1.8)	1 (6.3)	15 (93.8)	

구분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가정 복지과	장안구	8 (0.9)	0 (0.0)	8 (100.0)	
	권선구	6 (0.7)	0 (0.0)	6 (100.0)	
	팔달구	5 (0.6)	0 (0.0)	5 (100.0)	
	영동구	8 (0.9)	0 (0.0)	8 (100.0)	
	사회 복지과	장안구	9 (1.0)	0 (0.0)	9 (100.0)
		권선구	10 (1.1)	0 (0.0)	10 (100.0)
		팔달구	13 (1.5)	0 (0.0)	13 (100.0)
		영동구	13 (1.5)	0 (0.0)	13 (100.0)
3단계	소계	9 (1.0)	3 (33.3)	6 (66.7)	
	여성정책과	1 (0.1)	1 (100.0)	0 (0.0)	
	복지정책과	2 (0.2)	2 (100.0)	0 (0.0)	
	장애인복지과	1 (0.1)	0 (0.0)	1 (100.0)	
	가정 복지과	장안구	1 (0.1)	0 (0.0)	1 (100.0)
		권선구	2 (0.2)	0 (0.0)	2 (100.0)
		팔달구	1 (0.1)	0 (0.0)	1 (100.0)
		영동구	1 (0.1)	0 (0.0)	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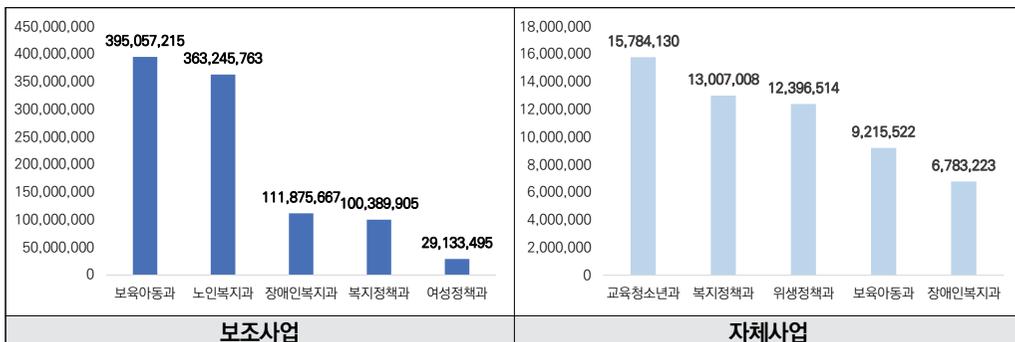
주: 계의 비율은 총 단계에서의 비율이며, 보조와 자체의 비율은 각 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e호조

2) 예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모두 합친 예산을 기준으로 가장 예산액이 많이 편성된 부서는 보육아동과가 404,272,73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표 4-14〉 참조). 그리고 이를 보조사업으로 구분하면 보육아동과의 예산이 395,057,21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사업에서는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이 15,784,130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서별로는 노인복지과의 예산 중 99.2%가 보조사업이었고, 보육아동과의 97.7%, 장애인복지과의 94.3%는 보조사업을 차지하고 있다. 즉,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복지예산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수원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담당부서 예산(상위 5개 부서)

(단위: 천원)



〈표 4-14〉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부서별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계	1,156,302,224 (100.0)	1,075,532,847 (93.0)	80,769,377 (7.0)	
복지 여성국	노인복지과	366,151,271 (31.7)	363,245,763 (99.2)	2,905,508 (0.8)
	다문화정책과	2,751,114 (0.2)	1,440,859 (52.4)	1,310,255 (47.6)
	보육아동과	404,272,737 (35)	395,057,215 (97.7)	9,215,522 (2.3)
	복지정책과	113,396,913 (9.8)	100,389,905 (88.5)	13,007,008 (11.5)
	복지협력과	13,476,015 (1.2)	12,567,120 (93.3)	908,895 (6.7)
	여성정책과	34,176,142 (3)	29,133,495 (85.2)	5,042,647 (14.8)
	장애인복지과	118,658,890 (10.3)	111,875,667 (94.3)	6,783,223 (5.7)
비(非) 복지 여성국	교육청소년과	19,419,814 (1.7)	3,635,684 (18.7)	15,784,130 (81.3)
	노동정책과	1,397,305 (0.1)	539,660 (38.6)	857,645 (61.4)
	도시재생과	34,758,874 (3)	4,510,178 (99.3)	248,696 (0.7)
	위생정책과	12,712,514 (1.1)	316,000 (2.5)	12,396,514 (97.5)
	일자리정책과	11,515,940 (1)	5,834,010 (50.7)	5,681,930 (49.3)
	지역경제과	1,360,291 (0.1)	1,343,291 (98.8)	17,000 (1.2)
	청년정책관	17,262,460 (1.5)	15,644,000 (90.6)	1,618,460 (9.4)
가정 복지과 (구청)	장안구	316,475 (0.0)	0 (0.0)	316,475 (100.0)
	권선구	528,767 (0.0)	0 (0.0)	528,767 (100.0)
	팔달구	206,118 (0.0)	0 (0.0)	206,118 (100.0)
	영통구	474,180 (0.0)	0 (0.0)	474,180 (100.0)
사회 복지과 (구청)	장안구	591,560 (0.1)	0 (0.0)	591,560 (100.0)
	권선구	810,726 (0.1)	0 (0.0)	810,726 (100.0)
	팔달구	1,040,368 (0.1)	0 (0.0)	1,040,368 (100.0)
	영통구	1,023,750 (0.1)	0 (0.0)	1,023,750 (100.0)

주 1: 계의 비율은 총 단계에서의 비율을 의미함

2: 보조와 자체의 비율은 각 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e호조

전달체계에 따른 편성 예산액도 사업 수와 동일하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모두 2단계가 가장 많았다(〈표 4-15〉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조사업의 경우 2단계(64,005,881천원), 1단계(11,000,768), 3단계(5,762,728천원)의 순으로 편성 예산액이 많았고, 자체사업도 보조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1,037,866,244천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단계(19,354,317천원), 3단계(18,312,286천원)의 순이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모두 수원시에 당사자(복지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지급되기 보다는 시설 및 단체 등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었다. 이는 전달체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위탁기관(시설)에 따라 서비스가 전달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현재처럼 민간위탁시설에서 위탁하기 보다는 위탁기관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9〉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보조)



〈표 4-15〉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따른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계	1,156,302,224 (100.0)	1,075,532,847 (93.0)	80,769,377 (7.0)		
1단계	소계	30,355,085 (2.6)	19,354,317 (63.8)	11,000,768 (36.2)	
	교육청소년과	145,888 (0.0)	138,888 (95.2)	7,000 (4.8)	
	노동정책과	395,250 (0.0)	220,000 (55.7)	175,250 (44.3)	
	보육아동과	2,129,254 (0.2)	1,670,514 (78.5)	458,740 (21.5)	
	복지정책과	13,690,297 (1.2)	7,475,138 (54.6)	6,215,159 (45.4)	
	복지협력과	5,999,836 (0.5)	5,952,436 (99.2)	47,400 (0.8)	
	일자리정책과	2,441,338 (0.2)	366,192 (15.0)	2,075,146 (85.0)	
	장애인복지과	3,722,514 (0.3)	3,491,149 (93.8)	231,365 (6.2)	
	청년정책관	222,000 (0.0)	40,000 (18.0)	182,000 (82.0)	
	노인복지과	65,124 (0.0)	0 (0.0)	65,124 (100.0)	
	다문화정책과	26,250 (0.0)	0 (0.0)	26,250 (100.0)	
	도시재생과	103,000 (0.0)	0 (0.0)	103,000 (100.0)	
	여성정책과	681,350 (0.1)	0 (0.0)	681,350 (100.0)	
	지역경제과	15,000 (0.0)	0 (0.0)	15,000 (100.0)	
	가정 복지과	장안구	17,000 (0.0)	0 (0.0)	17,000 (100.0)
		권선구	10,837 (0.0)	0 (0.0)	10,837 (100.0)
		팔달구	5,677 (0.0)	0 (0.0)	5,677 (100.0)
영통구		9,600 (0.0)	0 (0.0)	9,600 (100.0)	
사회 복지과	장안구	306,720 (0.0)	0 (0.0)	306,720 (100.0)	
	권선구	344,680 (0.0)	0 (0.0)	344,680 (100.0)	
	팔달구	9,230 (0.0)	0 (0.0)	9,230 (100.0)	
	영통구	14,240 (0.0)	0 (0.0)	14,240 (100.0)	
2단계	소계	1,101,872,125 (95.3)	1,037,866,244 (94.2)	64,005,881 (5.8)	
	교육청소년과	19,273,926 (1.7)	3,496,796 (18.1)	15,777,130 (81.9)	
	노동정책과	1,002,055 (0.1)	319,660 (31.9)	682,395 (68.1)	

구분		계(c=a+b)	보조사업(a)	자체사업(b)	
	노인복지과	366,086,147 (31.7)	363,245,763 (99.2)	2,840,384 (0.8)	
	다문화정책과	2,724,864 (0.2)	1,440,859 (52.9)	1,284,005 (47.1)	
	도시재생과	34,655,874 (3.0)	34,510,178 (99.6)	145,696 (0.4)	
	보육아동과	402,143,483 (34.8)	393,386,701 (97.8)	8,756,782 (2.2)	
	복지정책과	95,552,330 (8.3)	88,760,481 (92.9)	6,791,849 (7.1)	
	복지협력과	7,476,179 (0.6)	6,614,684 (88.5)	861,495 (11.5)	
	여성정책과	19,336,792 (1.7)	14,975,495 (77.4)	4,361,297 (22.6)	
	위생정책과	12,712,514 (1.1)	316,000 (2.5)	12,396,514 (97.5)	
	일자리정책과	9,074,602 (0.8)	5,467,818 (60.3)	3,606,784 (39.7)	
	장애인복지과	109,217,848 (9.4)	108,384,518 (99.2)	833,330 (0.8)	
	지역경제과	1,345,291 (0.1)	1,343,291 (99.9)	2,000 (0.1)	
	청년정책관	17,040,460 (1.5)	15,604,000 (91.6)	1,436,460 (8.4)	
	가정 복지과	장안구	289,475 (0.0)	0 (0.0)	289,475 (100.0)
권선구		502,930 (0.0)	0 (0.0)	502,930 (100.0)	
팔달구		190,441 (0.0)	0 (0.0)	190,441 (100.0)	
영통구		464,580 (0.0)	0 (0.0)	464,580 (100.0)	
사회 복지과	장안구	284,840 (0.0)	0 (0.0)	284,840 (100.0)	
	권선구	466,046 (0.0)	0 (0.0)	466,046 (100.0)	
	팔달구	1,031,138 (0.1)	0 (0.0)	1,031,138 (100.0)	
	영통구	1,000,310 (0.1)	0 (0.0)	1,000,310 (100.0)	
3단계	소계	24,075,014 (2.1)	18,312,286 (76.1)	5,762,728 (23.9)	
	여성정책과	14,158,000 (1.2)	14,158,000 (100.0)	0 (0.0)	
	복지정책과	4,154,286 (0.4)	4,154,286 (100.0)	0 (0.0)	
	장애인복지과	5,718,528 (0.5)	0 (0.0)	5,718,528 (100.0)	
	가정 복지과	장안구	10,000 (0.0)	0 (0.0)	10,000 (100.0)
		권선구	15,000 (0.0)	0 (0.0)	15,000 (100.0)
		팔달구	10,000 (0.0)	0 (0.0)	10,000 (100.0)
		영통구	9,200 (0.0)	0 (0.0)	9,200 (100.0)

주 1: 본예산 기준이며, 계의 대상별 비율(괄호)은 전체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계는 대상에서 차지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e호조

제2절 매트리스 분석

1. 대상 및 급여유형의 매트리스 분석

1) 사업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에 따른 급여유형을 매트리스 분석한 결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친 사업 개수에서는 급여유형마다 상이하였다.(<표 4-16> 참조). 예컨대 아동·청소년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과 '수원시 청소년의회 운영', '아동모니터링단'과 같은 기회의 사업이 가장 많았다. 현물은 노인, 바우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은 아동·청소년에서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는 현금급여, 외국인 및 다문화는 사업의 수가 가장 많았다. 그 외 대상은 모두 시설 및 단체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6〉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급여유형 분석(전체)_사업 수

(단위: 개, %)

구분		급여유형							
		계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
계		877 (100.0)	179 (20.4)	51 (5.8)	31 (3.5)	19 (2.2)	129 (14.7)	27 (3.1)	441 (50.3)
대상	영유아(만0~5세)	93 (10.6)	17 (18.3)	1 (1.1)	2 (2.2)	1 (1.1)	7 (7.5)	1 (1.1)	64 (68.8)
	아동청소년(만6~18세)	194 (22.1)	40 (20.6)	6 (3.1)	10 (5.2)	8 (4.1)	37 (19.1)	4 (2.1)	89 (45.9)
	청년(만19~34세)	34 (3.9)	10 (29.4)	3 (8.8)	0 (0.0)	2 (5.9)	7 (20.6)	1 (2.9)	11 (32.4)
	중장년(만35~64세)	10 (1.1)	1 (10.0)	1 (10.0)	1 (10.0)	0 (0.0)	0 (0.0)	0 (0.0)	7 (70.0)
	노인(만65세 이상)	107 (12.2)	14 (13.1)	10 (9.3)	4 (3.7)	2 (1.9)	14 (13.1)	1 (0.9)	62 (57.9)
	저소득	52 (5.9)	19 (36.5)	6 (11.5)	3 (5.8)	0 (0.0)	3 (5.8)	4 (7.7)	17 (32.7)
	등록장애인	98 (11.2)	26 (26.5)	5 (5.1)	2 (2.0)	0 (0.0)	9 (9.2)	11 (11.2)	45 (45.9)
	노숙인 및 행려자	34 (3.9)	11 (32.4)	3 (8.8)	0 (0.0)	0 (0.0)	1 (2.9)	0 (0.0)	19 (55.9)
	여성	75 (8.6)	5 (6.7)	2 (2.7)	5 (6.7)	2 (2.7)	17 (22.7)	0 (0.0)	44 (58.7)

구분	급여유형							
	계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11 (1.3)	6 (54.5)	0 (0.0)	0 (0.0)	0 (0.0)	0 (0.0)	0 (0.0)	5 (45.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30 (3.4)	3 (10.0)	3 (10.0)	2 (6.7)	3 (10.0)	11 (36.7)	0 (0.0)	8 (26.7)
보훈대상자	28 (3.2)	10 (35.7)	0 (0.0)	1 (3.6)	0 (0.0)	0 (0.0)	0 (0.0)	17 (60.7)
복합적대상자 (취약계층)	22 (2.5)	5 (22.7)	2 (9.1)	0 (0.0)	0 (0.0)	3 (13.6)	5 (22.7)	7 (31.8)
노동자	16 (1.8)	1 (6.3)	1 (6.3)	1 (6.3)	0 (0.0)	3 (18.8)	0 (0.0)	10 (62.5)
사회적기업 등	14 (1.6)	0 (0.0)	0 (0.0)	0 (0.0)	0 (0.0)	7 (50.0)	0 (0.0)	7 (5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2 (1.4)	4 (33.3)	0 (0.0)	0 (0.0)	1 (8.3)	5 (41.7)	0 (0.0)	2 (16.7)
수원시민	31 (3.5)	4 (12.9)	8 (25.8)	0 (0.0)	0 (0.0)	3 (9.7)	0 (0.0)	16 (51.6)
기타	16 (1.8)	3 (18.8)	0 (0.0)	0 (0.0)	0 (0.0)	2 (12.5)	0 (0.0)	11 (68.8)

주 1: 계의 비율은 총 단계에서의 비율을 의미하고, 보조와 자체의 비율은 각 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2: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친 예산액임

자료: e호조

보조사업을 기준으로 급여와 대상자에 따른 매트릭스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7>과 같다. 먼저 급여유형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수당’과 같은 현금성 급여와 기회, 시설 및 단체지원은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현물은 신문이나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상자 집단에서는 노인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바우처는 등록장애인이 분야가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급여유형을 보면 청년과 저소득, 보훈대상자는 현금성 급여가 많다(<표 4-17> 참조).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훈대상자는 대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등의 현금성 급여가 많은 편에 속하고, 청년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등이 있다. 그리고 저소득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등이 있다. 그 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사업이 많고 다른 집단에서는 시설 및 단체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하고 있다.

〈표 4-17〉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급여유형 분석(보조)_사업 수

(단위: 개, 천원)

구분	급여유형								
	계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	
계	457 (100.0)	129 (28.2)	11 (2.4)	1 (0.2)	6 (1.3)	79 (17.3)	13 (2.8)	218 (47.7)	
대상	영유아 (만0~5세)	44 (9.6)	10 (22.7)	0 (0.0)	0 (0.0)	1 (2.3)	3 (6.8)	1 (2.3)	29 (65.9)
	아동청소년 (만6~18세)	124 (27.1)	34 (27.4)	0 (0.0)	0 (0.0)	3 (2.4)	23 (18.5)	1 (0.8)	63 (50.8)
	청년 (만19~34세)	10 (2.2)	5 (50.0)	0 (0.0)	0 (0.0)	0 (0.0)	2 (20.0)	0 (0.0)	3 (30.0)
	중장년 (만35~64세)	1 (0.2)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인 (만65세 이상)	40 (8.8)	12 (30.0)	4 (10.0)	0 (0.0)	0 (0.0)	4 (10.0)	0 (0.0)	20 (50.0)
	저소득	37 (8.1)	17 (45.9)	3 (8.1)	1 (2.7)	0 (0.0)	3 (8.1)	2 (5.4)	11 (29.7)
	등록장애인	71 (15.5)	23 (32.4)	3 (4.2)	0 (0.0)	0 (0.0)	7 (9.9)	9 (12.7)	29 (40.8)
	노숙인 및 행려자	11 (2.4)	3 (27.3)	0 (0.0)	0 (0.0)	0 (0.0)	1 (9.1)	0 (0.0)	7 (63.6)
	여성	50 (10.9)	2 (4.0)	0 (0.0)	0 (0.0)	1 (2.0)	15 (30.0)	0 (0.0)	32 (64.0)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10 (2.2)	5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50.0)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18 (3.9)	3 (16.7)	1 (5.6)	0 (0.0)	1 (5.6)	10 (55.6)	0 (0.0)	3 (16.7)
	보훈대상자	4 (0.9)	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적 대상자 (취약계층)	9 (2.0)	3 (33.3)	0 (0.0)	0 (0.0)	0 (0.0)	1 (11.1)	0 (0.0)	5 (55.6)
	노동자	3 (0.7)	0 (0.0)	0 (0.0)	0 (0.0)	0 (0.0)	2 (66.7)	0 (0.0)	1 (33.3)
	사회적기업 등	8 (1.8)	0 (0.0)	0 (0.0)	0 (0.0)	0 (0.0)	5 (62.5)	0 (0.0)	3 (37.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6 (1.3)	4 (66.7)	0 (0.0)	0 (0.0)	0 (0.0)	2 (33.3)	0 (0.0)	0 (0.0)
	수원시민	9 (2.0)	3 (33.3)	0 (0.0)	0 (0.0)	0 (0.0)	1 (11.1)	0 (0.0)	5 (55.6)
	기타	2 (0.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주: 계의 비율은 총 단계에서의 비율을 의미하고, 보조와 자체의 비율은 각 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e호조

반면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분야를 제외한 대다수의 정책대상자(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등록장애인, 여성,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훈대상자, 노동자 등)의 급여유형은 시설 및 단체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즉, 수원시의 자체사업은 대부분 시설 및 단체지원을 통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8>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급여유형 분석(자체)_사업 수

구분	급여유형								
	계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	
계	420 (100.0)	50 (11.9)	40 (9.5)	30 (7.1)	13 (3.1)	50 (11.9)	14 (3.3)	223 (53.1)	
대상	영유아 (만0~5세)	49 (11.7)	7 (14.3)	1 (2.0)	2 (4.1)	0 (0.0)	4 (8.2)	0 (0.0)	35 (71.4)
	아동청소년 (만6~18세)	70 (16.7)	6 (8.6)	6 (8.6)	10 (14.3)	5 (7.1)	14 (20.0)	3 (4.3)	26 (37.1)
	청년 (만19~34세)	24 (5.7)	5 (20.8)	3 (12.5)	0 (0.0)	2 (8.3)	5 (20.8)	1 (4.2)	8 (33.3)
	중장년 (만35~64세)	9 (2.1)	0 (0.0)	1 (11.1)	1 (11.1)	0 (0.0)	0 (0.0)	0 (0.0)	7 (77.8)
	노인 (만65세 이상)	67 (16.0)	2 (3.0)	6 (9.0)	4 (6.0)	2 (3.0)	10 (14.9)	1 (1.5)	42 (62.7)
	저소득	15 (3.6)	2 (13.3)	3 (20.0)	2 (13.3)	0 (0.0)	0 (0.0)	2 (13.3)	6 (40.0)
	등록장애인	27 (6.4)	3 (11.1)	2 (7.4)	2 (7.4)	0 (0.0)	2 (7.4)	2 (7.4)	16 (59.3)
	노숙인 및 행려자	23 (5.5)	8 (34.8)	3 (13.0)	0 (0.0)	0 (0.0)	0 (0.0)	0 (0.0)	12 (52.2)
	여성	25 (6.0)	3 (12.0)	2 (8.0)	5 (20.0)	1 (4.0)	2 (8.0)	0 (0.0)	12 (48.0)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1 (0.2)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12 (2.9)	0 (0.0)	2 (16.7)	2 (16.7)	2 (16.7)	1 (8.3)	0 (0.0)	5 (41.7)
	보훈대상자	24 (5.7)	6 (25.0)	0 (0.0)	1 (4.2)	0 (0.0)	0 (0.0)	0 (0.0)	17 (70.8)
	복합적 대상자 (취약계층)	13 (3.1)	2 (15.4)	2 (15.4)	0 (0.0)	0 (0.0)	2 (15.4)	5 (38.5)	2 (15.4)
	노동자	13 (3.1)	1 (7.7)	1 (7.7)	1 (7.7)	0 (0.0)	1 (7.7)	0 (0.0)	9 (69.2)
	사회적기업 등	6 (1.4)	0 (0.0)	0 (0.0)	0 (0.0)	0 (0.0)	2 (33.3)	0 (0.0)	4 (66.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6 (1.4)	0 (0.0)	0 (0.0)	0 (0.0)	1 (16.7)	3 (50.0)	0 (0.0)	2 (33.3)

구분	급여유형							
	계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
수원시민	22 (5.2)	1 (4.5)	8 (36.4)	0 (0.0)	0 (0.0)	2 (9.1)	0 (0.0)	11 (50.0)
기타	14 (3.3)	3 (21.4)	0 (0.0)	0 (0.0)	0 (0.0)	2 (14.3)	0 (0.0)	9 (64.3)

주: 계의 비율은 총 단계에서의 비율을 의미하고, 보조와 자체의 비율은 각 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e호조

2) 예산

사회복지정책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급여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과 급여유형을 매트릭스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업 수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의 생애주기와 등록장애인, 노숙인 및 행려자, 여성, 노동자,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시설 및 단체지원의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4-16〉 참조). 그러나 예산액은 생애주기에서 중장년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현금성 급여가 많았고, 저소득층도 현금성 급여에 집중되어 있었다(〈표 4-19〉 참조).

보조사업의 경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현금성급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노숙인 및 행려자, 여성은 시설 및 단체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표 4-20〉 참조).

이에 반해 자체사업은 보조사업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4-21〉 참조). 예컨대 보조사업의 경우 현금성 급여가 많았는데 반해 자체사업의 경우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여성,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노동자,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원시민에게는 시설 및 단체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저소득은 자체사업도 여전히 현금성급여에 집중되어 있다.

〈표 4-19〉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급여유형 분석(전체)_예산

(단위: 천원, %)

구분	급여유형									
	계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		
계	1,156,302,224 (100.0)	761,101,566 (65.8)	2,180,667 (0.2)	285,359 (0.0)	138,662 (0.0)	38,830,998 (3.4)	81,742,887 (7.1)	272,022,085 (23.5)		
영유아(만0~5세)	311,928,224 (100.0)	185,961,858 (59.6)	5,000 (0.0)	25,600 (0.0)	68,412 (0.0)	266,980 (0.1)	14,158,000 (4.5)	111,442,374 (35.7)		
아동청소년(만6~18세)	134,465,320 (100.0)	87,089,819 (64.8)	120,820 (0.1)	41,720 (0.0)	25,140 (0.0)	5,623,514 (4.2)	258,950 (0.2)	41,305,357 (30.7)		
청년(만19~34세)	20,489,938 (100.0)	17,953,178 (87.6)	103,000 (0.5)	0 (0.0)	22,000 (0.1)	446,300 (2.2)	2,000 (0.0)	1,963,460 (9.6)		
중장년(만35~64세)	1,436,940 (100.0)	366,192 (25.5)	1,500 (0.1)	1,500 (0.1)	0 (0.0)	0 (0.0)	0 (0.0)	1,067,748 (74.3)		
노인(만65세 이상)	369,477,015 (100.0)	304,213,677 (82.3)	1,601,923 (0.4)	11,600 (0.0)	1,720 (0.0)	27,432,916 (7.4)	69,900 (0.0)	36,145,279 (9.8)		
저소득	130,669,979 (100.0)	115,971,779 (88.8)	78,800 (0.1)	165,739 (0.1)	0 (0.0)	290,442 (0.2)	4,356,092 (3.3)	9,807,127 (7.5)		
등록장애인	118,658,890 (100.0)	25,908,646 (21.8)	178,364 (0.2)	13,000 (0.0)	0 (0.0)	1,175,873 (1.0)	62,837,045 (53.0)	28,545,962 (24.1)		
노숙인 및 행려자	3,960,859 (100.0)	176,380 (4.5)	310 (0.0)	0 (0.0)	0 (0.0)	215,580 (5.4)	0 (0.0)	3,568,589 (90.1)		
여성	7,102,547 (100.0)	690,000 (9.7)	2,700 (0.0)	16,800 (0.2)	4,500 (0.1)	1,132,640 (15.9)	0 (0.0)	5,255,907 (74.0)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8,115,248 (100.0)	7,077,798 (87.2)	0 (0.0)	0 (0.0)	0 (0.0)	0 (0.0)	0 (0.0)	1,037,450 (12.8)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2,005,616 (100.0)	51,600 (2.6)	45,000 (2.2)	5,400 (0.3)	13,890 (0.7)	859,568 (42.9)	0 (0.0)	1,030,158 (51.4)		
보훈대상자	8,642,503 (100.0)	7,927,950 (91.7)	0 (0.0)	1,600 (0.0)	0 (0.0)	0 (0.0)	0 (0.0)	712,953 (8.2)		

대 상

구분	급여유형									
	계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비우체	시설 및 단체지원		
복합적 대상자 (취약계층)	1,437,418 (100.0)	133,500 (9.3)	8,900 (0.6)	0 (0.0)	0 (0.0)	506,893 (35.3)	60,900 (4.2)	727,225 (50.6)		
노동자	1,390,064 (100.0)	30,000 (2.2)	5,000 (0.4)	2,400 (0.2)	0 (0.0)	364,360 (26.2)	0 (0.0)	988,304 (71.1)		
사회적기업 등	1,531,600 (100.0)	0 (0.0)	0 (0.0)	0 (0.0)	0 (0.0)	343,290 (22.4)	0 (0.0)	1,188,310 (77.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599,754 (100.0)	330,020 (55.0)	0 (0.0)	0 (0.0)	3,000 (0.5)	110,232 (18.4)	0 (0.0)	156,502 (26.1)		
수원시민	16,228,871 (100.0)	7,212,360 (44.4)	29,350 (0.2)	0 (0.0)	0 (0.0)	37,410 (0.2)	0 (0.0)	8,949,751 (55.1)		
기타	18,161,438 (100.0)	6,809 (0)	0 (0.0)	0 (0.0)	0 (0.0)	25,000 (0.1)	0 (0.0)	18,129,629 (99.8)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임

자료: e호조

〈표 4-20〉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급여유형 분석(보조)_예산

(단위: 천원, %)

구분	급여유형									
	계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		
계	1,075,532,847 (100.0)	745,242,256 (69.3)	1,479,790 (0.1)	159,339 (0.0)	89,752 (0.0)	37,160,803 (3.6)	75,553,503 (7.0)	215,847,404 (20.0)		
영유아(만0~5세)	300,101,371 (100.0)	181,773,338 (60.6)	0 (0.0)	0 (0.0)	68,412 (0.0)	256,980 (0.1)	14,158,000 (4.7)	103,844,641 (34.6)		
아동청소년(만6~18세)	117,005,192 (100.0)	87,010,199 (74.4)	0 (0.0)	0 (0.0)	9,200 (0.0)	5,153,914 (4.4)	197,700 (0.1)	24,634,179 (21.1)		
청년(만19~34세)	17,784,138 (100.0)	16,835,838 (94.7)	0 (0.0)	0 (0.0)	0 (0.0)	246,300 (1.4)	0 (0.0)	702,000 (3.9)		
중장년(만35~64세)	366,192 (100.0)	366,19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인(만65세 이상)	363,240,063 (100.0)	303,554,604 (83.6)	1,244,926 (0.3)	0 (0.0)	0 (0.0)	26,680,222 (7.3)	0 (0.0)	31,760,311 (8.8)		
저소득	128,572,951 (100.0)	114,460,435 (89.0)	63,800 (0.1)	159,339 (0.1)	0 (0.0)	290,442 (0.2)	4,154,286 (3.2)	9,444,649 (7.3)		
등록장애인	111,875,667 (100.0)	25,799,646 (23.1)	141,064 (0.1)	0 (0.0)	0 (0.0)	1,141,673 (1.0)	57,043,517 (51.0)	27,749,767 (24.8)		
노숙인 및 행려자	3,910,419 (100.0)	174,600 (4.5)	0 (0.0)	0 (0.0)	0 (0.0)	215,58 (5.5)	0 (0.0)	3,520,239 (99.0)		
여성	4,093,600 (100.0)	48,600 (1.2)	0 (0.0)	0 (0.0)	500 (0.0)	1,106,640 (27.0)	0 (0.0)	2,937,860 (71.8)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8,082,848 (100.0)	7,045,398 (87.2)	0 (0.0)	0 (0.0)	0 (0.0)	0 (0.0)	0 (0.0)	1,037,450 (12.8)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1,273,439 (100.0)	51,600 (4.1)	30,000 (2.4)	0 (0.0)	11,640 (0.9)	824,568 (64.6)	0 (0.0)	355,631 (28.0)		
보훈대상자	1,816,050 (100.0)	1,816,050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대 상

구분	급여유형									
	계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		
복합적 대상자 (취약계층)	1,204,018 (100.0)	13,500 (0.1)	0 (0.0)	0 (0.0)	0 (0.0)	491,943 (41.0)	0 (0.0)	698,575 (58.0)		
노동자	539,660 (100.0)	0 (0.0)	0 (0.0)	0 (0.0)	0 (0.0)	319,660 (59.2)	0 (0.0)	220,000 (40.8)		
사회적기업 등	1,343,291 (100.0)	0 (0.0)	0 (0.0)	0 (0.0)	0 (0.0)	337,649 (25.1)	0 (0.0)	1,005,642 (74.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415,252 (100.0)	330,020 (79.5)	0 (0.0)	0 (0.0)	0 (0.0)	85,232 (20.5)	0 (0.0)	0 (0.0)		
수원시민	8,230,581 (100.0)	5,962,236 (72.5)	0 (0.0)	0 (0.0)	0 (0.0)	10,000 (0.1)	0 (0.0)	2,258,345 (27.4)		
기타	5,678,115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678,115 (100.0)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임

자료: e호조

〈표 4-21〉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급여유형 분석(자체)_예산

(단위: 천원, %)

구분	급여유형							
	계	한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비우체	시설 및 단체지원
계	80,769,377 (100.0)	15,859,310 (19.6)	700,877 (0.9)	126,020 (0.1)	48,910 (0.0)	1,670,195 (2.1)	6,189,384 (7.7)	56,174,681 (69.6)
영유아(민0~5세)	11,826,853 (100.0)	4,188,520 (35.5)	5,000 (0.0)	25,600 (0.2)	0 (0.0)	10,000 (0.1)	0 (0.0)	7,597,733 (64.2)
아동청소년(민6~18세)	17,460,128 (100.0)	79,620 (0.5)	120,820 (0.7)	41,720 (0.2)	15,940 (0.1)	469,600 (2.7)	61,250 (0.3)	16,671,178 (95.5)
청년(민19~34세)	2,705,800 (100.0)	1,117,340 (41.3)	103,000 (3.8)	0 (0.0)	22,000 (0.8)	200,000 (7.4)	2,000 (0.1)	1,261,460 (46.6)
중장년(민35~64세)	1,070,748 (100.0)	0 (0.0)	1,500 (0.1)	1,500 (0.1)	0 (0.0)	0 (0.0)	0 (0.0)	1,067,748 (99.8)
노인(민65세 이상)	6,236,952 (100.0)	659,073 (10.6)	356,997 (5.7)	11,600 (0.2)	1,720 (0.0)	752,694 (12.1)	69,900 (1.1)	4,384,968 (70.3)
저소득	2,097,028 (100.0)	1,511,344 (72.1)	15,000 (0.7)	6,400 (0.3)	0 (0.0)	0 (0.0)	201,806 (9.6)	362,478 (17.3)
등록장애인	6,783,223 (100.0)	109,000 (1.6)	37,300 (0.6)	13,000 (0.2)	0 (0.0)	34,200 (0.5)	5,793,528 (85.4)	796,195 (11.7)
노숙인 및 행려자	50,440 (100.0)	1,780 (4.0)	310 (0.1)	0 (0.0)	0 (0.0)	0 (0.0)	0 (0.0)	48,350 (95.9)
여성	3,008,947 (100.0)	641,400 (21.3)	2,700 (0.1)	16,800 (0.6)	4,000 (0.1)	26,000 (0.9)	0 (0.0)	2,318,047 (77.0)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32,400 (100.0)	32,400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732,177 (100.0)	0 (0.0)	15,000 (2.1)	5,400 (0.7)	2,250 (0.3)	35,000 (4.8)	0 (0.0)	674,527 (92.1)
보훈대상자	6,826,453 (100.0)	6,111,900 (89.5)	0 (0.0)	1,600 (0.1)	0 (0.0)	0 (0.0)	0 (0.0)	712,953 (10.4)

대 상

구분	급여유형									
	계	헌금	헌물	권력	기회	사업	비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		
복합적 대상자 (취약계층)	233,400 (100.0)	120,000 (51.4)	8,900 (3.8)	0 (0.0)	0 (0.0)	14,950 (6.4)	60,900 (26.1)	28,650 (12.3)		
노동자	850,404 (100.0)	30,000 (3.5)	5,000 (0.6)	2,400 (0.3)	0 (0.0)	44,700 (5.3)	0 (0.0)	768,304 (90.3)		
사회적기업 등	188,309 (100.0)	0 (0.0)	0 (0.0)	0 (0.0)	0 (0.0)	5,641 (3.0)	0 (0.0)	182,668 (97.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84,502 (100.0)	0 (0.0)	0 (0.0)	0 (0.0)	3,000 (1.6)	25,000 (13.6)	0 (0.0)	156,502 (84.8)		
수원시민	7,998,290 (100.0)	1,250,124 (15.6)	29,350 (0.4)	0 (0.0)	0 (0.0)	27,410 (0.3)	0 (0.0)	6,691,406 (83.7)		
기타	12,483,323 (100.0)	6,809 (0.1)	0 (0.0)	0 (0.0)	0 (0.0)	25,000 (0.2)	0 (0.0)	12,451,514 (99.7)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임

자료: e호조

2. 대상 및 욕구의 매트릭스 분석

1) 사업

사회복지정책 대상과 욕구의 집중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과 욕구를 매트릭스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친 사업에서는 영유아는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은 안전, 청년과 중장년은 일자리(노동), 노인은 노인복지관과 같은 문화여가시설, 저소득은 자립 및 자활, 종사자는 처우개선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4-24〉 참조). 그리고 보조사업도 전체사업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영유아는 이용시설, 아동청소년은 안전, 청년은 자립 및 자활에 집중되어 있다(〈표 4-25〉 참조).

〈표 4-22〉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사업 예시(보조)

구분	사업(예시)
영·유아×돌봄(이용)_영유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안전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 수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
청년×자립 및 자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장애인×일자리(노동)	장애인 복지일자리(연계형), 장애인 복지일자리(참여형),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여성×일자리(노동)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팔달여성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영통여성새일센터),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영통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반면에 수원시 자체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은 안전, 청년 및 노인은 문화 및 여가, 중장년은 일자리(노동), 저소득은 일자리 및 주거, 노숙인 및 행려자는 장애, 여성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환경조성에 집중되어 있다(〈표 4-26〉 참조). 대상과 욕구를 매칭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4-23〉 참조), 앞서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안전으로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된 정책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자체사업에서는 학부모폴리스나 청소년의 유해업소를 지도·점검하거나 우범지역 순찰, 아동학대 피해를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새롭게 등장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과 노인은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자체사업의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경우 행사나 청년바람지대와 같은 문화여가와 관련된 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노인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문화교실, 경로당, 노인대학에 집중되어 있다(〈표 4-23〉, (〈표 4-26〉 참조).

중장년은 일자리(노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이고, 저소득과 관련된 일자리(노동)는 주로 새희망일자리나 지역방역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 저소득과 관련된 주거는 수원휴먼주택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노숙인 및 행려자는 무연고 사망자 냉동실 사용료 및 장제비, 신문 광고료와 같은 장례비용에 집중되어 있다(〈표 4-23〉, (〈표 4-26〉 참조).

여성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은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성은 주로 여성친화도시 및 양성평등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 활동이나 시민모니터단 활동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도 외국인단체나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환경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표 4-23〉, (〈표 4-26〉 참조).

〈표 4-23〉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사업 예시(자체)

구분	사업(예시)
아동·청소년×안전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운영,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운영, 청소년 범죄예방,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학대피해아동 조사 지원, 제1차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 정책 연구
청년×문화 및 여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수원청년바람지대 입차, 청년과의 소통 프로그램 운영(청소통, 청년UP 클라우드), 제3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
노인×문화 및 여가	경로행사, 노인문화교실 운영,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운영, 노인대학 운영,
중장년×일자리(노동)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사회공헌활동 지원, 신중년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홍보
저소득×일자리(노동)	새희망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저소득×주거	수원휴먼주택 지원 사업, 수원휴먼주택 유지관리, 주거복지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노숙인 및 행려자×장례	무연고사망자 냉동실 사용료, 행려사망자 장제비, 행려사망자 신문 광고료
여성×환경조성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모니터단 등 운영,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환경조성	외국인·다문화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외국인주민지원단체 활동, 외국인 다(多) 누리꾼 정례미팅,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연회비

〈표 4-24〉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 분석(전체)_사업 수

(단위: 개)

구분	대상																		
	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등록 장애인	노숙인 및 행차	여성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보훈 대상자	특별적 대상자 (취약 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 복지 시설 종사 등	수원 시민	기타
계	877	93	194	34	10	107	52	98	34	75	11	30	28	22	16	14	12	31	16
건강(신체)	31	0	9	0	0	9	5	2	0	3	0	0	1	0	0	0	0	2	0
건강(정신)	12	1	2	0	0	1	1	1	0	1	0	1	0	4	0	0	0	0	0
교육	20	1	12	1	0	1	1	0	0	0	0	2	0	0	0	0	0	0	2
돌봄(생활) 노인	9	0	0	0	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이용) 아동청소년	26	0	2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생활) 아동청소년	5	0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이용) 영유아	54	5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이용) 외국인	5	0	1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돌봄(이용) 장애인	8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생활) 장애인	1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0	0	0

욕 구

구분	대상																			
	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자산특	등록 장애인	노숙인 및 행방자	여성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보훈 대상자	복합적 대상자 (취약 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등	수원 시민	기타	
장래	22	0	0	0	0	0	0	0	13	0	0	0	1	0	0	0	0	0	0	8
정보제공 및 홍보	17	3	1	0	0	2	1	2	0	0	0	3	0	1	0	0	0	0	4	0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88	19	19	0	0	10	3	9	2	3	2	2	0	5	0	0	12	2	0	
주거	14	0	0	2	0	0	7	1	1	0	0	0	0	3	0	0	0	0	0	
출산 및 돌봄 (가정 등)	30	6	8	0	0	2	0	3	0	3	2	3	0	0	0	0	0	3	0	
환경조성	58	1	15	4	0	8	0	2	0	9	0	9	1	5	0	0	0	4	0	
기타	3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2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이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친 예산액임
자료: e호조

〈표 4-25〉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 분석(보조) 사업 수

(단위: 개)

구분	대상																		
	계	영유아	이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등록 장애인	노수인 및 행위자	여성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보훈 대상자	복합적 대상자 (취약 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 복지 시설 증가 등	수원 시민	기타
계	457	44	124	10	1	40	37	71	11	50	10	18	4	9	3	8	6	9	2
건강(신체)	25	0	7	0	0	6	4	2	0	3	0	0	1	0	0	0	0	2	0
건강(정신)	5	0	1	0	0	1	0	1	0	1	0	1	0	0	0	0	0	0	0
교육	10	0	7	0	0	0	1	0	0	0	0	2	0	0	0	0	0	0	0
돌봄(생활 노인)	7	0	0	0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이동 노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이동 아동청소년)	22	0	2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생활 아동청소년)	5	0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이동 영유아)	28	2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이동 외국인)	3	0	1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돌봄(이동 장애인)	2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생활 장애인)	1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생활 한부모가족)	6	0	0	0	0	0	1	0	0	0	5	0	0	0	0	0	0	0	0

욕 구

구분	대상																		
	계	영양아	이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등록 장애인	노숙인 및 행방자	여성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보훈 대상자	복합적 대상자 (취약 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등	수원 시민	기타
출산 및 돌봄 (가정 등)	22	5	8	0	0	0	0	2	0	0	2	2	0	0	0	0	0	3	0
환경조성	10	0	1	0	0	0	0	2	0	0	0	4	0	3	0	0	0	0	0
기타	2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임

자료: e호조

〈표 4-26〉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 분석(자체)_사업 수

(단위: 개)

구분	대상														기타					
	계	영양아	이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등록 장애인	노숙인 및 행방자	여성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보훈 대상자	부활적 대상자 (취약 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등	수원 시민	
계	420	49	70	24	9	67	15	27	23	25	1	12	24	13	13	6	6	22	14	
건강(신체)	6	0	2	0	0	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건강(정신)	7	1	1	0	0	0	1	0	0	0	0	0	0	4	0	0	0	0	0	0
교육	10	1	5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돌봄(생활) 노인	2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이동) 아동청소년	4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생활) 아동청소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이동) 영유아	26	2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이동) 외국인	2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돌봄(이동) 장애인	6	0	0	0	0	0	0	6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생활) 장애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생활) 한부모가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욕 구

구분	대상																		
	계	영양아	이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등록 장애인	노숙인 및 행방자	여성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와류인 및 대문화 가족	보훈 대상자	특별적 대상자 (취약 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 복지 시설 취약자 등	수원 시민	기타
돌봄(지역사회)	8	0	0	0	0	0	1	4	0	0	0	1	0	0	0	0	0	2	0
문화 및 여가	70	3	7	8	0	41	0	6	0	3	0	1	0	0	0	0	0	1	0
법률(성장) 및 제할	5	0	2	0	0	0	1	2	0	0	0	0	0	0	0	0	0	0	0
보훈	22	0	0	0	0	0	0	0	0	0	0	22	0	0	0	0	0	0	0
사회참여	6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1	3
소득보장	3	0	0	0	0	1	2	0	0	0	0	0	0	0	0	0	0	0	0
안전	56	1	31	0	0	6	0	0	11	4	0	0	0	0	1	0	0	2	0
이동	6	0	0	2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일자리(노동)	51	0	1	7	9	1	4	0	0	2	0	0	0	0	12	6	0	8	1
자립 및 자활	3	0	0	0	0	0	0	0	0	2	1	0	0	0	0	0	0	0	0
장려	20	0	0	0	0	0	0	0	12	0	0	0	1	0	0	0	0	0	7
정보제공 및 홍보	15	3	1	0	0	1	1	2	0	0	0	2	0	1	0	0	0	4	0
중시자 치유개선 및 역량강화	25	12	2	0	0	1	0	1	0	1	0	0	0	2	0	0	6	0	0
주거	10	0	0	2	0	0	4	1	0	0	0	0	0	3	0	0	0	0	0

구분	대상																		
	계	영양아	이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등록 장애인	노숙인 및 행방자	여성	한부모 가족 및 미혼모	와대인 및 다문화 가족	보훈 대상자	복합적 대상자 (취약 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등	수원 시민	기타
출산 및 돌봄 (기정 등)	8	1	0	0	0	2	0	1	0	3	0	1	0	0	0	0	0	0	0
환경조성	48	1	14	4	0	8	0	0	0	9	0	5	1	2	0	0	0	4	0
기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임

자료 : e호조

2) 예산

(1) 전체

편성예산액을 기준으로 대상과 욕구를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27〉 참조). 그 결과, 전체사업(보조사업+자체사업) 예산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영유아와 관련된 예산은 311,928,22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7%의 비중을 차지한다. 영유아는 사업 수와 동일하게 어린이집과 같은 해당 돌봄(이용시설)의 예산액이 244,414,948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돌봄 예산의 약 78% 수준이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예산액은 134,465,320천원으로 출산 및 돌봄(가정 등) 예산이 78,248,727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환경조성이 15,264,704원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관련된 편성예산액은 20,489,938천원으로 소득보장이 15,644,000천원(76%), 중장년은 일자리, 노인은 소득보장에 가장 많은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었다.

〈표 4-28〉과 같이 비생애주기 대상의 욕구별 사업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관련 예산액은 130,669,979천원이고 그 중 ‘소득보장’ 78,091,431천원, ‘주거’ 34,535,874천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관련 예산액은 118,658,890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 관련 예산액 중 돌봄(지역사회) 관련 예산액이 60,872,574천원으로 장애인관련 예산액의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7〉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욕구 분석(전체)_예산(생애주기)

(단위: 천원)

구분	생애주기					
	영유아 (만0~5세)	아동청소년 (만6~18세)	청년 (만19~34세)	중장년 (만35~64세)	노인 (만65세 이상)	
계	311,928,224	134,465,320	20,489,938	1,436,940	369,477,015	
욕 구	건강(신체)	0	6,008,242	0	0	16,814,608
	건강(정신)	24,000	75,400	0	0	256,993
	교육	30,000	368,607	50,000	0	9,450
	돌봄(생활)_노인	0	0	0	0	15,853,178
	돌봄(이용)_아동청소년	0	11,019,579	0	0	0
	돌봄(생활)_아동청소년	0	10,290,026	0	0	0
	돌봄(이용)_영유아	244,414,948	0	0	0	0
	돌봄(이용)_외국인	0	23,520	0	0	0
	돌봄(지역사회)	0	3,415,759	0	0	9,973,070
	문화 및 여가	240,500	945,410	1,187,460	0	14,838,427
	발달(성장) 및 재활	100,000	1,548,521	0	0	0
	소득보장	0	0	15,644,000	0	287,507,554
	안전	3,000	4,051,622	0	0	2,809,835
	이동	0	0	132,000	0	0
	일자리(노동)	268,868	284,080	1,972,640	1,436,940	18,634,700
	자립 및 자활	0	1,634,447	1,231,838	0	0
	정보제공 및 홍보	9,120	7,000	0	0	57,108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17,397,251	1,279,640	0	0	1,016,700
	주거	0	0	150,000	0	0
	출산 및 돌봄(가정 등)	49,424,037	78,248,727	0	0	659,073
환경조성	16,500	15,264,740	122,000	0	1,046,319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이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친 예산액임
 자료: e호조

〈표 4-28〉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욕구 분석(전체)_예산(비생애주기)

(단위: 천원)

구분	대상											수원 시민	기타
	저소득	등록 장애인	노숙인 및 행려자	여성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보훈 대상자	복합적 대상자 (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계	130,669,979	118,668,880	3,960,859	7,102,547	8,115,248	2,005,616	8,642,503	1,437,418	1,390,064	1,531,600	599,754	16,228,871	18,161,438
건강(신체)	1,136,296	817,791	0	242,262	0	0	137,250	0	0	0	0	5,961,636	0
건강(정신)	200,000	35,005	0	11,340	0	37,500	0	81,000	0	0	0	0	0
교육	109,943	0	0	0	0	78,243	0	0	0	0	0	0	25,000
돌봄(이용) 외국인	0	0	0	0	0	714,401	0	0	0	0	0	0	0
돌봄(이용) 장애인	0	7,580,389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생활) 장애인	0	5,290,936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생활) 한부모가족	49,800	0	0	0	1,037,450	0	0	0	0	0	0	0	0
돌봄(지역사회)	865,278	60,872,574	0	0	0	36,450	0	516,105	0	0	0	6,140,749	0
문화 및 여가	0	52,460	0	619,370	0	45,950	0	0	0	0	0	20,000	0
발달(성장) 및 재활	3,716,092	8,469,287	0	0	0	0	0	0	0	0	0	0	0
보훈	0	0	0	0	0	0	8,438,853	0	0	0	0	0	0
사회참여	0	0	0	1,500	0	0	0	3,500	0	0	0	1,000	6,809
소득 보장	78,091,431	21,063,625	0	0	0	0	0	0	0	0	0	0	0

욕 구

구분	대상												
	저소득	등록 장애인	노숙인 및 행려자	여성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대상자 및 다문화 가족	보훈 대상자	복합적 대상자 (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수원 시민	기타
인천	0	565,400	1,435,939	1,390,934	0	0	0	88,470	220,400	0	0	67,000	0
이동	0	694,660	0	0	0	0	0	0	0	0	0	0	0
일자리 (노동)	2,296,706	10,633,033	0	2,029,838	0	11,880	0	491,943	1,169,664	1,531,600	0	3,057,687	15,000
자립 및 자활	9,584,456	420,978	2,249,970	1,100,226	52,400	0	0	0	0	0	0	0	0
장래	0	0	144,350	0	0	0	64,800	0	0	0	0	0	12,616,514
정보제공 및 홍보	3,000	46,300		0	0	45,000	0	5,400	0	0	0	20,450	0
중·장년여성 및 역량강화	81,103	1,202,632	78,600	54,200	35,400	21,600	0	20,400	0	0	599,754	30,600	0
주거	34,535,874	25,000	52,000	0	0	0	0	122,800	0	0	0	0	0
출산 및 돌봄 (가정 등)	0	550,000	0	1,592,091	6,989,998	936,790	0	0	0	0	0	477,406	0
환경조성	0	338,820	0	60,786	0	69,530	1,600	107,800	0	0	0	452,343	0
기타	0	0	0	0	0	8,272	0	0	0	0	0	0	5,498,115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이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친 예산액임

자료: e호조

(2) 보조사업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은 다음의 <표 4-29>와 같다. 영유아의 돌봄과 관련된 사업을 편성예산액이 높은 5개 사업으로 추출한 결과, 대부분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료 및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영유아보육료 예산의 편성예산액은 126,337,827천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영유아 예산의 42.1%, 돌봄(이용)_영유아의 5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돌봄(이용)_영유아에서 예산액이 많은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담임교사 지원비) 편성예산액의 총 금액은 208,805,696천원으로 해당분야의 88.1%를 차지하고 있다. 즉, 영유아와 관련된 보조사업은 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중장년과 관련된 보조사업의 예산액 366,192천원은 모두 일자리(노동)에 해당되는데 이는 만 50~70세 이하 퇴직전문인력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유일하였다(<표 4-29> 참조). 노인관련 예산 363,240,063천원 중 소득보장과 관련된 욕구예산은 287,490,804천원으로 79.1%를 차지하고 있다(<표 4-30> 참조). 그리고 소득보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선정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예산액으로 노인 분야에서 예산액이 가장 크다(<표 4-29> 참조). 저소득 대상의 사업도 소득보장과 관련된 예산액은 78,087,831천원으로 가장 많은데 사업은 3개가 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72,548,000천원, '긴급복지' 4,739,831천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에 80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다(<표 4-29> 참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예산 111,875,667천원 중 돌봄(지역사회)과 관련된 욕구 예산은 54,980,186천원(49.1%)으로 나타났다(<표 4-31> 참조). 그 중 돌봄(지역사회)과 관련된 사업은 6개(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가 있는데 그 중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예산액이 46,480,000천원으로 장애인분야 예산의 41.5%를 차지한다(<표 4-32> 참조).

〈표 4-29〉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욕구 분석 예시(보조)

(단위: 천원)

대상×욕구	사업명	예산액	기타
영유아×돌봄(이용)_영유아	영유아보육료	126,337,827	예산액이 많은 상위 5개만 제시
	누리과정 운영	40,475,880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17,498,133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2,894,650	
	담임교사 지원비	11,599,206	
중장년×일자리(노동)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366,192	1개만 존재
노인×소득보장	기초연금	287,490,804	1개만 존재
저소득×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2,548,000	3개만 존재
	긴급복지	4,739,831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800,000	
등록장애인×돌봄(지역사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46,480,000	6개만 존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4,614,997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319,2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682,400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962,33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921,256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이며, "X"는 대상과 욕구를 함께 분석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e호조

상위정부에 의한 보조사업 중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를 분석한 결과(〈표 4-30〉 참조),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이용시설, 아동청소년은 입양가정아동 등과 관련된 출산 및 돌봄(가정 등), 청년은 소득보장, 중장년과 노인은 소득보장, 중장년은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30〉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욕구 분석(보조)_예산(생애주기)

(단위: 천원)

구분	생애주기					
	영유아 (만0~5세)	아동청소년 (만6~18세)	청년 (만19~34세)	중장년 (만35~64세)	노인 (만65세 이상)	
계	300,101,371	117,005,192	17,784,138	366,192	363,240,063	
욕구	건강(신체)	0	6,001,192	0	0	16,720,128
	건강(정신)	0	4,400	0	0	256,993

구분	생애주기				
	영유아 (만0~5세)	아동청소년 (만6~18세)	청년 (만19~34세)	중장년 (만35~64세)	노인 (만65세 이상)
돌봄(생활)_노인	· 0	0	· 0	· 0	15,836,378
돌봄(이용)_아동청소년	· 0	10,276,301	· 0	· 0	· 0
돌봄(생활)_아동청소년	· 0	10,290,026	· 0	· 0	· 0
돌봄(이용)_영유아	236,946,276	0	· 0	· 0	· 0
돌봄(이용)_외국인	· 0	23,520	· 0	· 0	· 0
돌봄(이용)_장애인	· 0	0	· 0	· 0	· 0
돌봄(생활)_장애인	· 0	0	· 0	· 0	· 0
돌봄(생활)_한부모가족	· 0	0	· 0	· 0	· 0
돌봄(지역사회)	· 0	3,415,759	· 0	· 0	9,973,070
문화 및 여가	80,000	474,810	· 0	· 0	10,909,175
발달(성장) 및 재활	100,000	1,544,271	· 0	· 0	· 0
보훈	· 0	0	· 0	· 0	· 0
사회참여	· 0	0	· 0	· 0	· 0
소득보장	· 0	0	15,644,000	· 0	287,490,804
안전	· 0	3,551,752	· 0	· 0	2,451,381
이동	· 0	0	· 0	· 0	· 0
일자리(노동)	268,868	22,080	908,300	366,192	18,622,700
자립 및 자활	· 0	1,634,447	1,231,838	· 0	· 0
장례	· 0	0	· 0	· 0	· 0
정보제공 및 홍보	· 0	0	· 0	· 0	32,634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15,233,190	1,153,500	· 0	· 0	946,800
주거	· 0	0	· 0	· 0	· 0
출산 및 돌봄(가정 등)	47,473,037	78,248,727	· 0	· 0	· 0
환경조성	0	2,800	· 0	0	· 0

자료: e호조

반면에 비생애주기 대상의 욕구와 관련된 사업은 저소득은 소득보장, 등록장애인은 지역사회 돌봄 이용시설, 여성은 일자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출산 및 돌봄, 종사자는 처우개선과 관련된 편성예산액이 타 욕구에 비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31〉 참조).

〈표 4-31〉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욕구 분석(보조)_예산(비생애주기)

(단위: 천원)

구분	저소득	등록 장애인	노숙인 및 행려자	여성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보훈 대상자	복합적 대상자 (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	수원 시민	기타
건강(신체)	128,529,951	111,875,667	3,910,419	4,093,600	8,082,848	1,273,439	1,816,050	1,204,018	539,660	1,343,291	415,252	8,230,581	5,678,115
건강(정신)	1,134,796	817,791	0	242,262	0	0	137,250	0	0	0	0	5,961,636	0
교육	0	35,005	0	11,340	0	37,500	0	0	0	0	0	0	0
돌봄(이용)_외국인	109,943	0	0	0	0	78,243	0	0	0	0	0	0	0
돌봄(이용)_장애인	0	0	0	0	0	136,660	0	0	0	0	0	0	0
돌봄(생활)_장애인	0	7,071,314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생활)_한부모가족	0	5,290,936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지역사회)	49,800	0	0	0	1,037,450	0	0	0	0	0	0	0	0
문화 및 여가	832,278	54,980,186	0	0	0	30,000	0	516,105	0	0	0	0	0
발달(성장) 및 재활	0	0	0	0	0	10,950	0	0	0	0	0	0	0
보훈	3,714,286	8,414,287	0	0	0	0	0	0	0	0	0	0	0
사회참여	0	0	0	0	0	0	1,678,800	0	0	0	0	0	0
합계	134,468,770	126,381,769	3,910,419	4,335,862	9,120,298	1,429,182	3,434,100	2,408,033	539,660	2,686,582	415,252	14,192,217	5,678,115

속 구

구분	저소득	등록 장애인	노숙인 및 행려자	여성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보훈 대상자	복합적 대상자 (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	수원 시민	기타
소득보장	78,087,831	21,063,625	0	0	0	0	0	0	0	0	0	0	0
안전	0	565,400	1,433,849	1,300,934	0	0	0	88,470	190,400	0	0	40,000	0
이동	0	626,660	0	0	0	0	0	0	0	0	0	0	0
일자리(노동)	468,280	10,633,033	0	2,023,238	0	11,880	0	491,943	349,260	1,343,291	0	1,720,939	0
자립 및 자활	9,584,456	420,978	2,249,970	467,226	20,000	0	0	0	0	0	0	0	0
장래	0	0	96,000	0	0	0	0	0	0	0	0	0	220,000
정보제공 및 홍보	0	0	0	0	0	30,000	0	0	0	0	0	0	0
중사차 차우개신 및 역량강화	81,103	1,127,632	78,600	48,600	35,400	21,600	0	13,500	0	0	415,252	30,600	0
주거	34,510,178	0	52,000	0	0	0	0	0	0	0	0	0	0
출산 및 돌봄 (가정 등)	0	490,000	0	0	6,989,998	851,254	0	0	0	0	0	477,406	0
환경조성	0	338,820	0	0	0	57,080	0	94,000	0	0	0	0	0
기타	0	0	0	0	0	8,272	0	0	0	0	0	0	5,458,115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임

자료: e호조

(3) 자체사업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중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영유아와 육구를 매트릭스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체사업 중 영유아와 육구의 매트릭스 분석에서도 보조사업과 동일하게 돌봄(이용시설) 영유아 관련된 예산이 7,468,672천원으로 가장 많았다(〈표 4-33〉 참조). 구체적으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478,824천원, ‘어린이집 운영’ 1,452,600천원,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344,866천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운영’ 564,350천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516,000천원으로 시 자체사업에서도 여전히 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4-32〉 참조).

〈표 4-32〉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육구 분석 예시(자체)

(단위: 천원)

대상×육구	사업명	예산액	기타
영유아×돌봄(이용)_영유아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478,824	예산액이 많은 상위 5개만 제시
	어린이집 운영	1,452,600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344,866	
	정부지원어린이집 운영	564,350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516,000	
아동청소년×환경조성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15,176,780	예산액이 많은 상위 5개만 제시
	청소년증 발급	36,000	
	아동관련위원회 운영	10,600	
	아동정책 토론회	8,320	
	수원시 청소년의회 운영	8,000	
청년×문화여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653,000	예산액이 많은 상위 5개만 제시
	청년활동공간 리모델링	184,000	
	청년활동공간 임차	120,000	
	청년활동공간 보증금	100,000	
	수원청년바람지대 임차	50,460	
중장년×일자리(노동)	사회공헌활동 지원	680,334	예산액이 많은 상위 5개만 제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254,414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임차	52,800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50,000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리모델링 안전진단	20,000	
노인×문화 및 여가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	574,144	예산액이 많은 상위 5개만 제시
	경로당건물 임차보증금	500,000	
	경로당 건물 임차보증금	352,375	
	경로행사	335,500	
	경로행사	300,000	

대상×욕구	사업명	예산액	기타
저소득×소득보장	새희망일자리	1,503,344	4개 사업만 존재
	지역방역일자리	302,000	
	새희망일자리	15,000	
	새희망일자리 운영	8,082	
등록장애인×돌봄(지역사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5,718,528	4개 사업만 존재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136,460	
	장애인복지단체 사업	27,400	
	장애인활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10,000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임

자료: e호조

자체사업 중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자체사업 예산 17,460,128천원 중에는 환경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15,261,940천원으로 가장 많았다(〈표 4-33〉 참조). 구체적으로는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이 15,176,780천원으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에서는 86.9%, 환경조성과 관련해서는 99.4%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수원시청소년재단)과 관련된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32〉 참조).

청년은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욕구의 자체사업 예산액이 1,187,460천원으로 가장 많다(〈표 4-33〉 참조). 그 중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653,000천원, 청년활동공간 리모델링 및 임차, 보증금과 관련된 예산이 404,000천원으로 다른 대상집단과 동일하게 시설 비용과 관련된 예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4-32〉 참조). 중장년과 일자리(노동)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만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680334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4-32〉 참조). 노인영역에서는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예산이 많았는데 앞선 다른 대상들과 동일하게 단체나 시설, 그리고 행사와 관련된 예산액의 비중이 컸다(〈표 4-32〉 참조).

비생애주기와 관련된 대상별 욕구의 경우, 저소득은 일자리(노동), 등록장애인은 돌봄과 관련된 지역사회, 여성은 출산 및 돌봄(가정 등),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출산 및 돌봄과 관련된 편성예산액이 타 영역보다 많았다(〈표 4-34〉 참조).

〈표 4-33〉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욕구 분석(자체)_예산(생애주기)

(단위: 천원)

구분	생애주기					
	영유아 (만0~5세)	아동청소년 (만6~18세)	청년 (만19~34세)	중장년 (만35~64세)	노인 (만65세 이상)	
계	11,826,853	17,460,128	2,705,800	1,070,748	6,236,952	
구 목	건강(신체)	0	7,050	0	0	94,480
	건강(정신)	24,000	71,000	0	0	0
	교육	30,000	7,000	50,000	0	9,450
	돌봄(생활)_노인	0	0	0	0	21,600
	돌봄(이용)_아동청소년	0	743,278	0	0	0
	돌봄(이용)_영유아	7,468,672	0	0	0	0
	문화 및 여가	160,500	470,600	1,187,460	0	3,929,252
	발달(성장) 및 재활	0	4,250	0	0	0
	소득보장	0	0	0	0	16,750
	안전	3,000	499,870	0	0	358,454
	이동	0	0	132,000	0	0
	일자리(노동)	0	262,000	1,064,340	1,070,748	12,000
	정보제공 및 홍보	9,120	7,000	0	0	24,474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2,164,061	126,140	0	0	69,900
	주거	0	0	150,000	0	0
	출산 및 돌봄 (가정 등)	1,951,000	0	0	0	659,073
	환경조성	16,500	15,261,940	122,000	0	1,046,319

주: 2022년 본예산 기준임

자료: e호조

〈표 4-34〉 2022년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욕구 분석(자체)_예산(비생애주기)

(단위: 천원)

구분	대상												
	저소득	등록 장애인	노숙인 및 행려자	여성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보호 대상자	복합적 대상자 (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	수원 시민	기타
계	2,097,028	6,783,223	50,440	3,008,947	32,400	732,177	6,826,453	233,400	850,404	188,309	184,502	7,998,290	12,483,323
건강(신체)	1,500	0	0	0	0	0	0	0	0	0	0	0	0
건강(정신)	200,000	0	0	0	0	0	0	81,000	0	0	0	0	0
교육	0	0	0	0	0	0	0	0	0	0	0	0	25,000
돌봄(이동)_외국인	0	0	0	0	0	577,741	0	0	0	0	0	0	0
돌봄(이동)_장애인	0	509,075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지역사회)	33,000	5,892,388	0	0	0	6,450	0	0	0	0	0	6,140,749	0
문화 및 여가	0	52,460	0	619,370	0	35,000	0	0	0	0	0	20,000	0
발달(성장) 및 재활	1,806	55,000	0	0	0	0	0	0	0	0	0	0	0
보훈	0	0	0	0	0	0	6,760,053	0	0	0	0	0	0
사회참여	0	0	0	1,500	0	0	0	3,500	0	0	0	1,000	6,809
소득보장	3,600	0	0	0	0	0	0	0	0	0	0	0	0
안전	0	0	2,090	90,000	0	0	0	0	30,000	0	0	27,000	0

욕 구

구분	대상												
	저소득	등록 장애인	노숙인 및 행려자	여성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보호 대상자	복합적 대상자 (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적 기업 등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	수원 시민	기타
이동	0	68,000	0	0	0	0	0	0	0	0	0	0	0
일자리(노동)	1,828,426	0	0	6,600	0	0	0	820,404	188,309	0	1,336,748	15,000	
저렴 및 자활	0	0	0	633,000	32,400	0	0	0	0	0	0	0	
장래	0	0	48,350	0	0	0	64,800	0	0	0	0	12,396,514	
정보제공 및 홍보	3,000	46,300	0	0	0	15,000	0	5,400	0	0	20,450	0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0	75,000	0	5,600	0	0	0	6,900	0	184,502	0	0	
주거	25,696	25,000	0	0	0	0	0	122,800	0	0	0	0	
출산 및 돌봄 (가정 등)	0	60,000	0	1,592,091	0	85,536	0	0	0	0	0	0	
환경조성	0	0	0	60,786	0	12,450	1,600	13,800	0	0	452,343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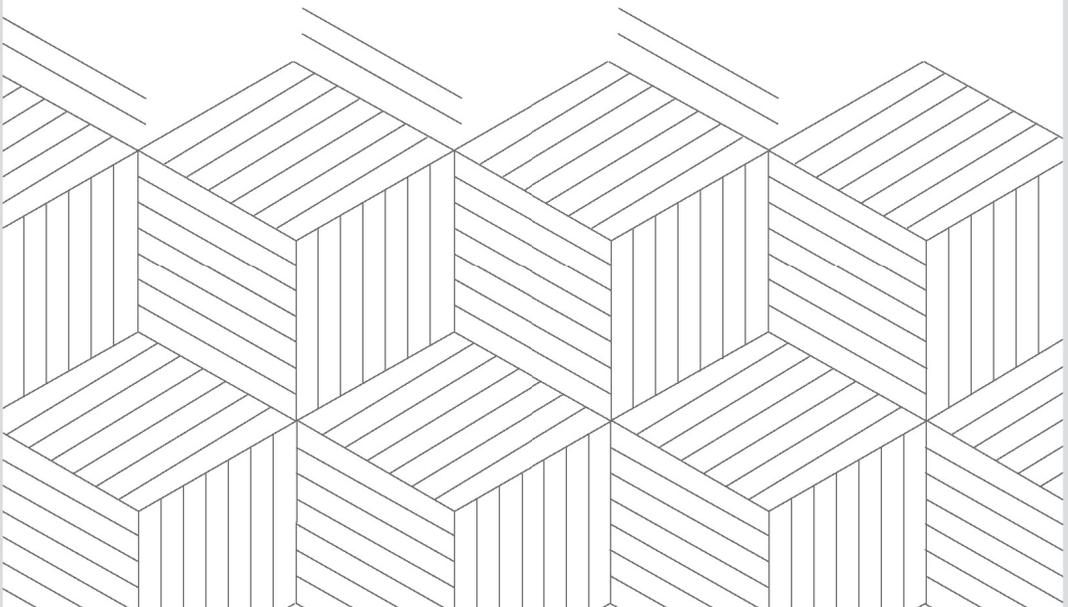
주: 2022년 예산 기준임

자료: e호조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1. 연구결과

수원시는 2022년 1월 고양시와 용인시, 창원시와 함께 복지특례시로 출범하였다. 이에 수원시민들은 행정, 재정,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특례시로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율성과 관련된 권한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보조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원시에서는 특례시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하는 수원시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다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수원시의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을 선행연구를 통한 정책 틀(대상(할당), 욕구, 급여유형, 전달체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원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예산 중 국가와 경기도에 의한 의무사업은 전체 예산의 93%(1,075,532,847천원)를 차지하는데 반해 자체사업은 7%(80,769,377천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자체사업(420개)과 보조사업(457개)의 사업 수는 37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수원시 자체 복지사업은 예산은 적는데 사업 수만 많아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자체복지사업은 주로 사회복지 관련 시설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구조이었다.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이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대상자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대상자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수가 가장 많았으나 예산액은 보조사업의 경우, 노인분야가 363,240,063천원, 보조사업은 아동청소년이 17,460,12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수원시의 복지대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보조사업의 예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예외적으로 중장년(만35~64세)과 보훈대상자(79.0%), 노숙인 및 행려자(42.4%)는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예산 비중이 높았다.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이 제공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복지욕구를 크게 일자리(노동), 돌봄(지역사회), 출산 및 돌봄(가족 및 가정), 환경조성, 문화 및 여가, 자립 및 자활, 건강(정신·신체), 안전, 주거 등과 같이 28개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의 경우 일자리(노동),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안전이 타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수가 많았고, 자체사업에서는 문화 및 여가, 안전, 환경조성, 일자리(노동)와 관련된 사업이 많았다. 그러나 예산액은 보조사업의 경우 소득보장, 영유아와 관련된 돌봄시설(예: 어린이집 등), 출산 및 가정돌봄과 관련된 예산이 많았고, 자체사업에서는 돌봄(지역사회), 환경조성, 장례, 돌봄(이용)_영유아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복지대상자(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급여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금, 현물, 권력, 기회, 사업, 바우처, 시설 및 단체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모두 시설 및 단체지원의 사업 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액은 현금급여가 가장 많았고, 자체사업은 시설 및 단체지원의 예산액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현금급여는 보조사업에서 97.5%를 차지하고 권력 및 기회는 타 급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았다. 즉, 보조사업은 현금성 급여에 집중되어 있고 지자체는 권력이나 기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정책이 대상자(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은 구청의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포함한 22개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사업 수와 예산액 모두 수원시(담당부서)에서 다른 주체(시설 및 단체 등)를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2단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중간 전달 체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당부서가 현재처럼 민간위탁시설로 위탁만 하기보다는 위탁기관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부서에서도 위탁시설의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수원시 복지정책과 대상에게 제공되는 급여유형을 비교한 결과, 자체사업은 사업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분야를 제외한 대다수의 정책대상자(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등록장애인, 여성,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훈대상자, 노동자 등)의 급여유형은 시설 및 단체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원시의 자체사업은 대부분 시설 및 단체지원을 통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조사업의 경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현금성 급여에 집중되어 있고, 등록장애인, 노숙인 및 행려자, 여성은 시설 및 단체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자체사업에서는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여성,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노동자,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시설 및 단체지원의 예산액이 많았고,

저소득층은 보조사업과 동일하게 현금성급여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회복지정책 대상자와 욕구의 집중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과 욕구를 매트릭스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의 수는 영유아는 이용시설, 아동·청소년은 안전, 청년은 자립 및 자활에 집중되어 있고, 수원시 자체사업은 아동·청소년은 안전, 청년 및 노인은 문화 및 여가, 중장년은 일자리(노동), 저소득은 일자리 및 주거, 노숙인 및 행려자는 장례, 여성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환경조성에 집중되어 있다. 예산액은 정부의 주된 현금성 급여(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기초연금, 생계급여)와 관련된 예산액이 대상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시 자체사업에서는 대상별로 시설(어린이집,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등)과 관련된 시설의 운영비 예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연구자는 수원시의 예산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매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들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감소되는데 특히 인건비보다는 사업비가 감소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 및 단체지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분석자료인 부서별 사업설명서에는 대부분이 운영비와 사업비가 합쳐서 제시되어 있고 일부 사업은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비라고 별도 기술된 사업은 급여유형을 ‘사업’으로 분류하였지만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기술된 사업은 ‘시설 및 단체지원’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주로 시설 및 단체지원에는 사업비의 예산이 극히 일부⁸⁾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분석자료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유형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2절 정책제언

1. 외부적 정책제언

본 연구는 수원특례시로서 복지정책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원시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와 경기도에 의한 보조사업의 예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율성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세입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은 시행하기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특례시가 되어도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을

8) 통상적으로 수원시에서 시설운영비와 관련된 사업비는 10%가 되지 않는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특례시로서 복지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관계에서 재정관계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간 관계에서 예산규모가 큰 현금성 급여에 대한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수원시의 복지예산에서 기초연금,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와 같은 주요 현금성 급여는 정부에서 복지대상자를 설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정해진 지침에 의해 복지대상자에게 현금성 급여를 전달하는 대리자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을 정부에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재정분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어 향후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고, 부모급여와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추가적으로 신설되어 앞으로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예산비중이 큰 기초연금, 생계급여, 보육료와 같은 현금성급여는 시행을 결정한 주체에서 재정을 부담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특례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세입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례시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정된다. 그러나 특례시가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되어서 수원시의 복지대상자가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 재정과 관련된 사무는 정해진바가 없다. 즉, 아직까지 특례시로의 권한이 무엇인지 정해진 바가 없어 특례시로서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례시로 출범한 지자체와 함께 세입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내부적 정책제언

1) 복지대상자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

복지정책의 대상자는 정책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복지대상자와 관련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고령장애인과 같이 중복위험을 겪는 사각지대의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은 '장애 어르신 고희연'과 같이 일회성 사업 1개밖에 없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노인정책도 연소노인, 중고령노인, 초고령노인에 따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세밀화된 특성화정책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70대 이상은 경로행사, 만80세나 만85세 이상은 해당 노인을 봉양하는 가구단위로 지급하는 정책이 유일하여 실질적으로 노인의 연령에 따른 특성화된 정책은 부재하다. 또한 대다수의 복지정책이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집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신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호하기에는 어렵고 복지체감도 또한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2) 욕구분석을 통한 정책제언

복지욕구는 점점 다변화되고 중복적인 욕구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의 복지정책을 분석한 결과, 수원시에서는 새롭게 제안된 복지욕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안전으로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된 정책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자체사업에서는 학부모폴리스나 청소년의 유해업소를 지도·점검하거나 우범지역 순찰, 아동학대 피해를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새롭게 등장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이나 단체를 통해 욕구에 대응할 수도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는 수원시의 예산지원이 없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수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 따라서 자체사업을 분석하여 일몰할 사업은 일몰시키고 새롭게 등장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예산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지역사회 기반형의 돌봄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사회복지정책의 대부분 예산은 시설을 통한 돌봄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체험홈’이 유일한 정책이라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의 자립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3) 급여유형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

수원시 복지정책의 급여유형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한 결과, 보조사업은 현금성 급여에 집중되어 있고 지자체는 권력이나 기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력이나 기회는 각종 위원회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지원해주는 정책(예: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수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권력이나 기회와 관련된 정책들이 당사자(복지대상자)들의 삶을 질을 변화시키는지, 단순히 위원회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및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정책 및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홍보정책은 현물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로 리플렛이나 책자 등을 통한 홍보에 머물러 있었다. 복지대상자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플렛이나 홍보책자도 필요하지만 가족들이 서비스를 신청해주거나 젊은 층도 대상자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홍보방법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홍보방법도 확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달체계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

수원시의 공적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복위험을 표출하는 복지대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수원시의 복지전달체계인 복지여성국의 담당부서는 주로 대상(영유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고령인 장애인, 이주민 자녀의 장애아동과 같이 중복적 욕구가 있는 대상집단은 부서에서 평평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변화되는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여성국의 담당부서를 대상으로는 돌봄, 일자리 등처럼 목적이나 기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시의 자체사업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이는 중간 전달체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정책은 주로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과 관련된 현금성 급여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주된 정책은 대상과 상관없이 보수교육 외 특별한 정책은 부재하다. 그리고 시설 보조금의 경우, 매년 운영예산이 삭감되는데 반해 경력인정에 따라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어 경력직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도 아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노인복지관만 해도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해주지 않아서 자체적인 수입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시로서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예산투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고유의 목적사업과 새롭게 발생하는 지역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영주, 최지민(2019). 자치분권시대에 대비한 광역지자체 사회복지기능 개편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강지원(2009).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보건사회연구, 29권, 2호, pp.30-54.
- 경기도의회(2022).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특례시 사무배분 방안 및 경기도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 고지희, 김귀환, 김혜영, 류정옥, 문혜숙, 박정은, 오정옥, 이시진, 이은경, 임원선, 전영록, 최용 (201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교육센터 편저. 나눔의집.
- 곽금주(2010). 「흔들리는 20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구인회, 양난주, 이원진(2009). 기초보장제도 등 국고보조사업을 통하여 본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재원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 국가인권위원회(2015).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 보장 실태조사」.
- 권태열(2006).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방안 연구. "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남욱(2019).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로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19권, 2호, pp.81-113.
- 김동기(2006). 장애인복지자원의 총량, 배분주체별 할당규모 및 영역별 집중정도에 관한 연구 : 2004년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호, pp.143-176.
- 김승연(2019).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71호
- 김승연, 이혜림(2016). 서울시 사회복지사업의 구조와 배분실태. 서울연구원.
- 김승연, 장동열(2017).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서울연구원.
- 김영미(2021).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 김영종(2017).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담론적 적용: 역사적 형성과 경로, 쟁점". 한국사회복지학, 69권, 1호, pp.175-197.
- 김영종(2018).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 김영종, 홍현미라, 이현주, 이해원, 이민영(2008).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 김용탁(2007). 장애인 고용촉진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김용탁, 박단비(2013). “고령장애인의 빈곤결정요인: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을 구분하여”. 장애인고용패널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 김우림(2021).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김이배(2022). 복지분권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기초지방정부 정책리포트, 3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김종인, 우주형, 이준우(2007). 「장애인 복지론」, 서현사
- 김천영(2001). 정부간 관계의 접근논리와 모형 탐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권, 3호, pp.97-120.
- 김현승, 이의정(2021).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대응과제 : 서울시 고령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pp.215-244.
- 나달숙(20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인권교육 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 6권, 3호, pp.23-55.
- 남찬섭(2016).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정책, 23권, 4호, pp.3-33
- 남찬섭, 유태균 역(2006). 「사회복지정책론-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나눔의집.
- 노승현, 김정성, 신유리(2017). 고령장애인의 건강증진 장벽요인 및 촉진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43권, 3호, pp.67-79.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2018).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9년 17호, pp.1-585.
- 민소영(2022). 공공전달체계 개편 실험과 대안 모색: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정책, 29권, 2호, pp.43-77.
- 민효상, 박예은(2018). 광역-기초정부간 복지사무 배분 기준 및 보조율 체계 개편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박상우(2022). "특례시 제도"의 현황과 과제. SRI 정책 Brief No.9. 수원시정연구원.
- 박선희(2008). 지방교부세의 재정지출효과에 관한 연구 : 재정자율성에 따른 비대칭 Flypaper Effect 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호(2012).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의 탐색.”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시내, 박준오, 류광현(2013). 인구센서스 생애주기분석(1) 가족 및 개인의 생애주기 특성 분석. 통계청.
- 박정민(2008). 정부간 관계 모형에 관한 고찰. NGO연구, 6권, 1호, pp.165-190.
- 박종엽, 양희택(2016). 고령화된 장애인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권, 3호, pp.211-237.
- 박진경(2010). 제3회의 : 다문화사회 또는 지역 불균등 ; 한국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발전방향 -다문화 정책 모형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호, pp.171-195.
- 박해욱(20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백종만(2005).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보건복지포럼, 109호, pp.7-22.
- 백학영, 고미선(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관한 연구: 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30권, pp83-114.
- 서지혜, 나운환, 오소윤(2016). 고령장애인의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권, 4호, pp.249-276.
- 손희준(2008). 재정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2호, pp.157-185.
- 송미영(2010).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1).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
- 신진욱, 서준상(2016). 복지국가, 지방분권, 지방정치 역사·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 분권화의 특성. 한국사회정책, 23권, 4호, pp.61-89.
- 안상훈, 김영미, 최영준(2010).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보건복지부.
- 양희택, 박종엽, 임아리(2012). 경기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복지욕구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서, 2012년 17호, pp.1-136.
- 엄주란, 문재우(20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결정)에 관한 비교: 사회학적 해석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권, 7호, pp.297-308.
- 오민수, 황상미, 이영주(2016).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 오세연(2017).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여성대상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6권, 3호, pp225-250.
- 오소윤·서지혜·정지은·정다찬(2017).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윤소영(2010). “여가에 대한 생애주기 관점과 여가생활주기 단계별 모형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권, 4호.
-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 윤혜경(2007).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진로탐색 경험 분석: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중장년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우, 김두례(2011). 사회복지서비스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 사회서비스연구, 2권, 2호, pp.5-30.
- 이선화(2021).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 이소정, 이승민(2021). 한국 노인의 연령 세분화에 따른 식사의 질과 주관적 건강 관련 인식 및 만성질환의 연관성.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6권, 5호, pp.363-381.
- 이수천, 손연숙(2011).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 이윤경(2021).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포럼, 293호, pp.39-54.

- 이준우, 장민선(2014). 1인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변화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년 09호, pp.1-166.
- 이창균(2010). 정부간 재정관계 속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강화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5권, 2호, pp.109-134.
- 이철수(2013). 「사회복지학사전」. 헤민북스
- 이태수, 남기철, 김형용(2019).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권, 6호, pp.63-92.
- 이혁구(2003). 푸코의 권력학으로 본 사회복지학의 새로운 지평 모색. 비판사회정책, 15호, pp.81-110.
- 이현정(2019).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 : 중앙정부 재정정책이 지방정부 재정건전성과 세출자율성에 미친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대홍(2015). 갈등을 불러오는 복지확대. KERI 칼럼, 2호, 한국경제연구원.
- 장수정(2020). “자본주의, 복지, 그리고 돌봄: 한부모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 사회복지학회 주최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
- 장임숙(2020). 1인가구의 젠더 특성과 정책방안. 지방정부연구, 24권, 1호, pp.373-397.
- 정광호(2007).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권, 1호, pp.61-109.
- 정문진, 이성규(2017).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및 건강 특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권, 6호, pp.551-560.
- 정원오, 김진구(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권, pp.35-67.
- 정준수, 이혜경(2017). 생애주기별 우울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년, 중년, 노년층의 3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9권, 2호, pp.117-141.
- 조한라(2022). 수원특례시 한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정책제안. 수원시정연구원 정책현안 TF 정책보고서, pp. 105-112
- 지은구(2013). 복지재정분권의 현실과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32권, 1호, pp.83-128.
- 지종화, 정명주, 김도경(2009). 한국의 다문화 국가 현상과 새로운 정책모형. 지방정부연구, 13권, 2호, pp.109-136.
- 최성은(2010).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재, 남기민(2006).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 최성현, 허준수(2019). 경제활동 참여 고령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연구: 장애수용 및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9권, 4호, pp.69-95.
- 최지민, 강영주(2020). 지역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기능 수행실태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pp.1-275.

- 최창수, 하동현, 박관규, 안영훈, 배사라(2014). 중앙-지방 합리적 역할 배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사무구분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최해경(2020). 노인복지론. 학지사
- 하능식, 구찬동. (2012).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지방재정 영향분석: 복지재정압박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7권, 3호, pp.1-34.
- 한승희(2019).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과 집행실적 분석. 한국재정정보원
- 홍근석, 김봉균(2019).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주희, 김성희, 노승현, 강민희, 정희경, 이주연, 이민경(2014). 장애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문 자료〉

- Carol Lupton. and Paul Nixon, (1999). Empowering Practice?: A Critical Appraisal of the Family Group Conference Approach. Policy.
- Castles, S. and Mark J. M. (2013) 『이주의 시대』 4판, 한국이민학회 역, 서울: 일조각.
- Gilbert Neil and Paul Terrell,(200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Boston: Allyn and Bacon.
- Krane, Dale. and Deil S. Wright, (2000).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Shafritz, Jay(des), Defining Public Administration: Sele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pp.83-101. CO: Westview Pres.

〈기타자료〉

- 고양시(2017). 고양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 _____ (2018). 고양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 _____ (2019). 고양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 _____ (2020). 고양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 _____ (2021). 고양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
- 보건복지부(2010). 2010년 보건복지백서
- _____ (2020). 장애인실태조사
- _____ (2018). 장애인 등록 현황(2017년)
- _____ (2019). 장애인 등록 현황(2018년)
- _____ (2020). 장애인 등록 현황(2019년)
- _____ (2021). 장애인 등록 현황(2020년)
- _____ (2022). 장애인 등록 현황(2021년)

용인시(2017). 용인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_____(2018). 용인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_____(2019). 용인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_____(2020). 용인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_____(2021). 용인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서
수원시 복지여성국 사업설명서

〈법률〉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보호법
청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기타자료〉

경기도 기본통계 <https://stat.gg.go.kr/statgg/main.html>
고양시청 홈페이지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 복지통계
수원시 권선구청 홈페이지
수원시 영통구청 홈페이지
수원시 장안구청 홈페이지
수원시 팔달구청 홈페이지
수원시 평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수원시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수원시청 홈페이지
여성신문(2011.06.29.)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방안필요”,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41>
용인시청 홈페이지
e호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

지방재정 365 <https://lofin.mois.go.kr>

통계청 2020년 고령자통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A Direction of Social Welfare Policies in the Suwon Special Case Cit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continue to expand social welfare policies to make rapid responses to the diversified needs of welfare among people. Social welfare policies by an upper-level government, however, ask a lower-level local government to match the subsidies as it is at the bottom of the vertical multi-layered structure of government relations. The expansion of welfare policies by an upper-level government means an increase in welfare finance for Suwon City. While Suwon City carries out its projects reflect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needs simultaneously along with the projects partially funded by an upper-level government, the number of its projects drops due to the restricted structure of tax revenue autonomy. Despite its financial limitations, Suwon City still needs to increase the level of welfare felt by citizens and develop effective welfare policies for the growth and change of a new municipal government. It is time to analyze its social welfare policies from multiple angles.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its social welfare policies in terms of objects, needs, benefit types, and delivery system and make proposals to address them for its growth and change into a special Case city.

The study analyzed the welfare policies and budgets of Suwon City for 2022 and found that 93% of its social welfare budgets were for obligatory assistance projects partially funded by the centr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oncentrated on cash benefits provided to low-income classes including infants

funded by the city budgets are large in numbers for the budget size and thus lack efficiency. They are mainly concentrated o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operating expenses for organizations. It is thus natural that citizens hardly feel the impacts of such projects and that the competencies of practitioners and facilities may determine the quality of service. In Suwon City, the welfare delivery systems are organized according to the objects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disabled, the elderly, etc.). As the overlapping beneficiaries (the disabled+the elderly, the multicultural citizens+the disabled, etc.) are increasing in recent years, there are structural blind spo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first, the systems should be reorganized to improve the financial burden structure of cash benefits and guarantee tax revenue autonomy; second, policies should be expanded to address a blind spot and meet the diversifying needs; and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delivery systems and reinforce their capabiliti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responsiveness of policies.

Keyword : Social Welfare Policy, Subsidiary Business, In-house Business, Target, Need, Salary Type, Delivery System, Special Case, Multidimensional Analysis

| 저자 약력 |

한연주

사회복지학 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mail : joanna1118@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지역기반형 돌봄정책 사례분석 연구: 노인케어를 중심으로 」(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의 지역불균형 해소방안 연구」(2020,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노인복지정책 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 연구」(2020, 수원시의회)

「제2차 수원시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수립 연구」(2021, 수원시)

「수원시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2021,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사회복지 민간위탁시설 성과평가 지표 개발(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2021, 수원시정연구원)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조사」(2021,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2022, 수원시·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보라

사회복지학 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 bora1102026@suwon.re.kr

